



Hungary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헝가리

2018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Hungary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헝가리

2018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본 안내서는 헝가리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헝가리세법 등을 2018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헝가리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세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I. 헝가리를 선택한 이유 3
 - 1. 헝가리 진출전망 4
 - 2. 진출가능한 헝가리 시장정보 11
- II. 헝가리 국가 개황 13
 - 1. 국가 개황 14
 - 2. 최근 정치 동향에 따른 경제적 전망 15
- III. 주요 개정세법 19
 - 1. '19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20
 - 2. '18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28
 - 3. '17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36
 - 4. 헝가리 최근 세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38
- IV. 헝가리 조세제도 41
 - 1. 헝가리의 기본 과세체계 42
 - 2. 참고해야할 헝가리 세정시스템 43
 - 3. 헝가리 주요 세법 47
- V. 세무조사 및 불복제도 67
 - 1. 세무조사(Tax audit) 68
 - 2. Self-Revision(불복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69
 - 3. 구제수단(불복제도) 71



VI.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75
1. 헝가리 이전가격 세제 개요-요약(2018. 02. 기준)	76
2.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최근 국제 동향	79
3. 헝가리 이전가격세제 주요 개정 사항(이전가격 문서화)	80
4. 이전가격세제 적용대상	83
5. 적용되는 규정	84
6. 정상가격 산출방법(Transfer Pricing Methods)	85
7. 이전가격문서 제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89
8. 이전가격분쟁해결과 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제도	92
9. 향후 대비 사항 및 시사점	94
VII. 사회적 이슈로 본 헝가리 세금	95
1. 기본소득제도와 로봇세	96
2. 브렉시트가 헝가리 세법에 미치는 영향	99
3. 광고세	102
4.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인터넷세	104
5. 난민유입에 따른 헝가리 특별세 부과	107
VIII. 헝가리 기타세법	111
1. 소비세	112
2. 환경제품 수수료(Environmental Product Fee)	115
3. 관세	118
4. 고용관련 공적회비	121
5. 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노동시장 기여금	122
6.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	123



7. 지방세(Municipal taxes)	126
8. 에너지공급자의 소득세(로빈후드세)	133
9. 금융 기관 및 신용 기관의 특별세, 신용 기관의 기여	136
10. 기타 세법(Other taxes and duties)	140

붙임

1. 참고 문헌 목록	149
2. 현지 체류정보	152
3. 헝가리 투자진출 가이드	160
4. 한·헝가리 조세조약	174



해외세정(헝가리) 연구결과 보고서

순번	연구 분야	연구 목적	연구 항목
1	헝가리를 선정한 이유	현재 헝가리 진출기업 및 시장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유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세제 규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선정한 이유 · 진출기업 전망 · 진출가능한 시장전망
2	헝가리 개황 및 국가정보	헝가리 국가개황 및 세부적인 국가정보 및 투자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개황 · 정치동향 및 경제적 전망 · 환율, 이자율 등
3	주요 개정세법	최근 개정반영된 헝가리 조세 정책 을 연구함으로써 정책 방향성 및 진출기업 미치는 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개정세법 · '18년 개정세법 · '17년 개정세법 · 개정세법 시사점
4	헝가리 조세제도	현지진출기업 위해 주요사항 정리하여 세정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과세체계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 부가가치세
5	헝가리 세무조사, 불복 및 관련제도	현지진출시 세무조사 받을 것을 대비하여 조사 및 불복제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연구 · 특수한 제도(자체수정) · 불복시스템
6	헝가리 이전가격세제 규정	BEPS프로젝트 OECD규정에 맞게 개정된 지침에 따라 납세자 준비 및 이전가격 분쟁 발생시 대응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가격 개요 · 이전가격세제 개정사항, 규정 · 정상가격 산출법 · 이전가격문서 제출
7	사회적 이슈로 본 헝가리세금	사회적인 이슈 가 되었던 헝가리 조세제도에 대해 분석 (쉬어가기 코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소득제/로봇세 · 블랙시트 · 광고세 · 인터넷세 · 난민유입 특별세
8	기타 그 외 세법	그 외 헝가리 조세제도 총 정리함으로써 국가세정에 관한 정보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 · 환경제품수수료 · 지방세 등 · 그 외 기타세법

헝가리를 선정한 이유

I

- 1. 헝가리 진출전망 / 4
- 2. 진출가능한 헝가리 시장정보 / 11





1 - 헝가리 진출전망1

□ 최근 환율 약세로 인한 수출여건 전망 좋음

- 유로화 및 포린트화 약세로 수출하기에 좋은 환경, 지난 3년 헝가리는 대외수출 14.4%, 무역수지 51.5% 증가하였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GDP	헝가리	1.5	3.6	3.1	2.0	3.6	3.5
성장률	EU	0.2	1.4	2.0	1.8	1.9	-

(자료 : EU집행위 / e : 2017년은 추정치, 2018년은 전망치)

- 헝가리 신용평가도 5년간 3~7 계단 상향 조정

* S&P : BB(안정적) → BBB - (긍정적), Moody's : Ba1(부정적) → Baa3(안정적) Fitch : BB + (안정적) → BBB - (안정적)

□ 경제전망 : 2018년 헝가리 경제성장률 3.8% 기대

- 유로존 경기회복세 힘입어 대외무역 흑자 확대, 외국인 투자 증가
 - 유럽중앙은행, 양적완화 및 사상 최저금리로 대외수출 여건 개선
- 실질임금 상승, 실업률 감소로 내수시장 활성화
 - 최저임금 상승, 고용주세 · 법인세 감면 효과로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 시장 활성화 기여
 - * 헝가리 정부는 2017년 고용주세 22%(종전 27%), 법인세 9%(종전 19%) 감면

1) 2018 헝가리 진출전략(kotra)



○ 최근 헝가리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은

- ① 소비 활성화 ② 수출 확대 ③ EU기금 확대 ④ 외국인 투자증가

□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구	백만 명	10.0	9.9	9.8	9.8	9.7	9.7
명목 GDP	십억 달러	135.2	140.1	122.8	125.8	163.5	-
1인당 명목GDP	달러	13,667.4	14,206.4	12,482.9	12,823.9	16,722.0	-
실질성장률	%	1.5	3.6	3.1	2.0	3.6	3.5
실업률	%	10.2	7.7	6.8	5.1	4.2	3.9
소비자물가상승률	%	1.7	0.0	0.1	0.4	2.37	2.72
재정수지(GDP대비)	%	-2.6	-2.1	-1.6	-1.8	-2.6	-2.4
총수출	백만 달러	89,911	93,464	100,136	102,909	106,273	105,546
(對韓 수출)	"	2,337	1,638	1,124	1,054	1,206	684
총수입	"	82,661	86,525	91,158	91,921	86,909	95,148
(對韓 수입)	"	516	569	813	720	706	274
무역수지	백만 달러	7,250	6,939	8,979	10,988	19,364	10,398
경상수지	%	3.8	2.0	3.2	6,753	4,903	-
환율(연평균)	현지국/US\$	223.70	232.52	279.46	281.44	253.58	278.11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871.2	2,229.7	1,086.1	2,257.9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4,116.8	4,555.8	4,079.3	4,091.6	-	-

주 : 2018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 IMF, EU집행위, Eurostat, 헝가리통계청(KSH), 헝가리중앙은행(MNB), WTA

□ 2014~2020 EU기금, 헝가리 등 동유럽 주요국에 38.5% 할당

○ EU는 역내 개발·결속을 위해 2014년~2020년(7개년) 기간 중 3,493.5억 유로를 지원하며, 동유럽 국가들에 EU기금 집중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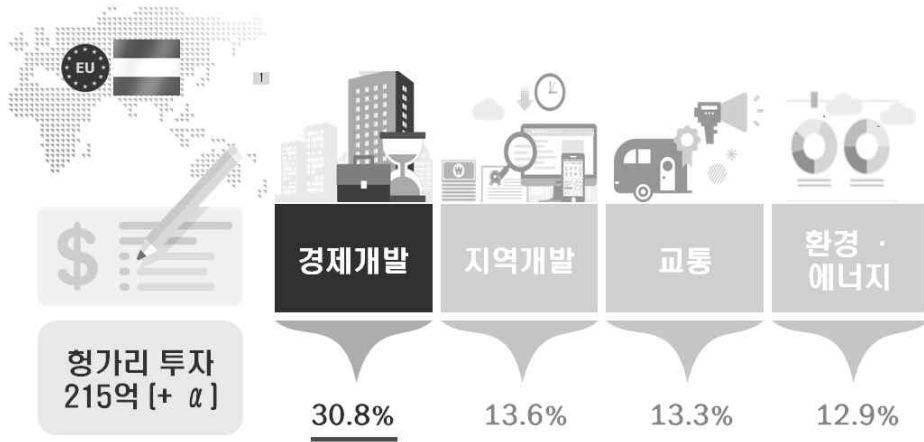
* 국별 할당률 : 폴란드(22.0%, 776억 유로), 헝가리(6.1%, 215억 유로), 체코(6.2%), 슬로바키아(3.9%)

○ 2014~2020년 헝가리에 EU기금 총 215억 유로 배정

- EU기금 215억 배정, 헝가리 정부의 추가 매칭예산은 38억

- 헝가리는 EU기금을 경제개발(30.8%), 지역개발(13.6%), 교통(13.3%), 환경·에너지(12.9%)에 집중 투자예정

○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는 ICT, 교통, 인프라, 환경·에너지(태양광 등) 분야 프로젝트 수요 확대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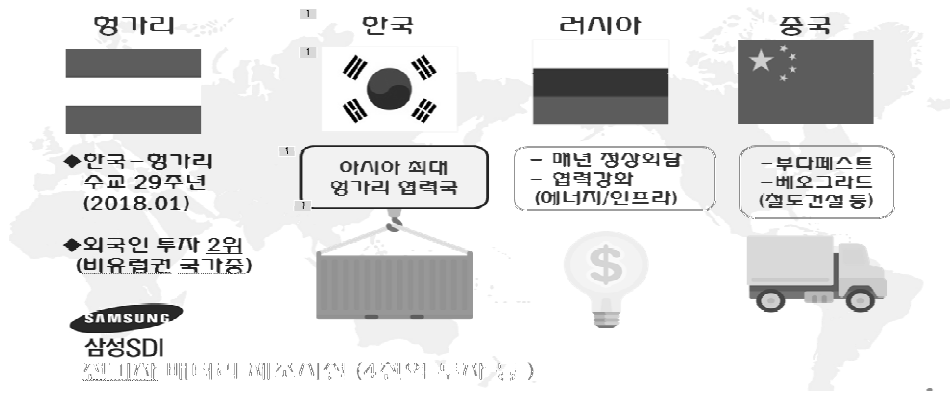
□ EU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해 동방국가와 협력 발표

○ 외국인 투자의 74.8%, 대외수출 79.4%, 수입 78.0% 의존

- 높은 EU 역내 FDI 및 교역 의존도 개선 노력, 2008년 유럽경제 위기 당시 서유럽의 대규모 자본 회수로 IMF 등 구제금융을 경험하였음



- 헝가리 정부는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등과의 협력 강화에 주력
 - 리, 푸틴 대통령과는 매년 정상회담,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 중, 일대일 사업 참여,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간 철도건설
 - 한, 아시아 최대 **헝가리 협력국**으로 양국간 1·2차 경제공동위 개최



○ 한-헝가리 관계

체 결 정	체결일	체결내용
	1988. 10.	체육협력에 관한 의정서
	1988. 12.	투자보장협정
	1989. 2.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2004.5.1 헝가리의EU 가입에 따라 종료)
	1989. 2.	문화협정
	1989. 2.	외교관·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1991.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의 관계조항으로 흡수
	1989. 3.	이중과세방지협정
	1989. 3.	과학기술협력협정
	1989. 11.	항공협정
	1991. 3.	사증면제협정
	2005. 4.	경제협력 협정(헝가리의EU 가입 계기 새로운 협정 체결)
	2006. 5.	사회보장협정
	2011. 7.	한-EU FTA발효

체 결 정	체결일	체결내용		
	2013. 4.	워킹홀리데이 협정		
	2013. 10	원자력 협정		
	2014. 11	한-헝가리 개정 항공운송협정		
	2014. 11	한-헝가리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2015. 12	한-헝가리 군사비밀보호협정		
교 역 모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8년	1,512 백만불	361 백만불	1,151 백만불
	2009년	1,704 백만불	304 백만불	1,400 백만불
	2010년	2,385 백만불	400 백만불	1,985 백만불
	2011년	1,475 백만불	471 백만불	1,004 백만불
	2012년	1,157 백만불	474 백만불	683 백만불
	2013년	2,113 백만불	467 백만불	1,646 백만불
	2014년	1,481 백만불	515 백만불	966 백만불
	2015년	1,016 백만불	735 백만불	281 백만불
	2016년	953 백만불	651 백만불	99 백만불
2017년	1,206 백만불	706 백만불	500 백만불	
교역품	수 출	농약 및 의약품, 컴퓨터,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등		
	수 입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계측제어분석기, 기구부품 등		
투 자 교 류	우리나라의 대형가리투자 : 16억 5830만 유로(2017년, 헝가리 중앙은행 기준) 헝가리의 대한투자 : 4억 834만 유로 (2017년, 헝가리 중앙은행 기준)			
교 민	총 교민 수 : 1,437(2017)			

자료 : 헝가리 통계청, KITA, 한국수출입은행, 헝가리 중앙은행, 외교부

□ 헝가리 조세수입은?

○ 주로 소비세&사회보험 기여금에 의존함

- 현재 헝가리 정부는 조세 및 사회보험 기여금 감축 추진 중임
(19년까지 GDP의 36% 이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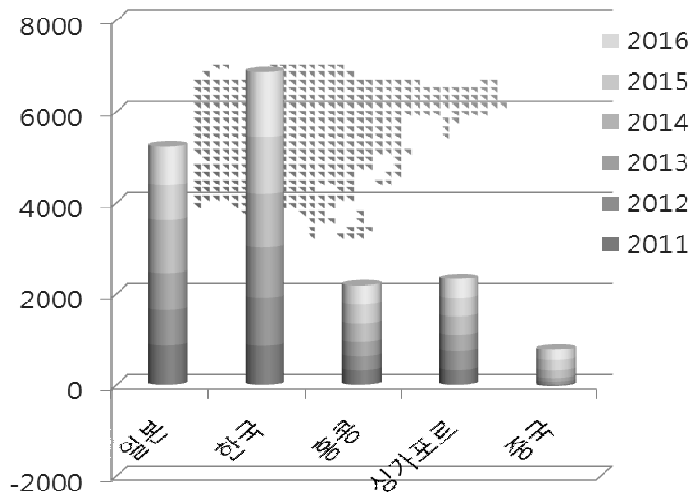
- 또한, 16%의 비례소득세를 하향 조정하고 두 자녀 가족세액공제를 2019년까지 두 배로 확대할 계획
- 헝가리 부가가치세는 27% OECD 최고수준인데 조세징수는 낮은편 (즉. 탈세율↑)

□ 현재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등

○ 헝가리와의 교역 규모는 아시아 국가 중 1위

- 헝가리 중앙은행 기준, 한국의 對헝가리 누적 투자 규모는 약 14억 유로이며, 헝가리에 투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첫 번째로 큰 규모. 현재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한온, 롯데첨단복합소재 등 약 106개의 주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음.

(단위: 백만 유로)



○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

-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립을 위해 3.6억 달러 투자(2018년 본격 양산), 대중소 동반 진출 형태로 협력 중소기업 진출 확대 전망

- 약 5만대 분량 공급라인으로 울산, 시안과 더불어 가장 대규모의 배터리 공장 (글로벌 배터리공장 3각 체제)

○ 삼성전자는 헝가리 5대 기업 안에 들어감

- 거의 대부분 가전제품, TV등 수출하며 헝가리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헝가리의 좋은 인력풀(기술력)로 인해 헝가리에 자리잡음
- EU법 규제 하에 장기적인 공장설비나 금형투자시 내는 관세도 환급받고 있음

○ 제조업 분야에서 대 헝가리 진출이 활발하며, 생산법인 형태로 진출한 기업 중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순으로 투자규모가 크고, 각 협력기업 진출도 다수

○ `18년 3월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기공식 개최. 2022년까지 건설비, 운전자본 등을 투자할 예정임





2 진출가능한 헝가리 시장정보

□ 음식 및 건강식품관련기업에게 헝가리 시장이 희망적

○ 한국산 식품 관심도 상승

- 헝가리는 파프리카등 매운 음식에 익숙하고, 헝가리에 대한 한류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 상승
- 또한 한-EU 관세 인하폭이 최대 30%에 달하여, 가격 경쟁력 또한 높음

○ 인삼, 홍삼 건강보조제, 유아용품 등

- 헝가리는 당뇨병 등으로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였고, 그에 따라 건강제품 관심 상승. 특히 인삼의 경우 한국산의 경쟁력이 높음
- 유아용품 : 헝가리 바이어들의 한국산 유아용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
- 현지 실정 디자인, 유통망 네트워크 등 여러 노하우 보유한 에이전트 활용 필요

□ 발전가능성이 높은 헝가리 태양광 시장

○ 중동부 유럽국가과 비교시, 헝가리는 매우 낮은 신재생 에너지 믹스(에너지 다양화)를 가지고 있음 ('14년 기준시 신재생에너지는 0.1% 이하 수준)

- 에너지 생산량은 믹스 대부분인 총 전력 90%가 원자력 및 화력 발전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생산량은 극히 적음
- 특히,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 주변국에 비교시 현저히 낮은 수준

○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한, 헝가리 정부의 노력

- ('17년) 헝가리정부는 METAR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FIT)를 적극 시행하고 있음.
- ('18년) 태양열 발전소 또한 설립 예정으로 3000만 유로 투입 → 향후 몇 년간 발전 가능성이 높음

헝가리 국가 개황

II

- 1. 국가 개황 / 14
- 2. 최근 정치 동향에 따른 경제적 전망 / 15





1 국가 개황

국가명	헝가리 (Republic of Hungary)
위치	유럽 중부에 위치하며, 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루마니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슬로베니아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면적	93,030km ² (남한의 0.94배)
기후	대체로 대륙성 기후이나 서안해양성 기후 혼재 남부 일부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연평균 기온 10.5℃)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
인구	968.8만 명
주요도시(인구)	Budapest (175.7만명), Debrecen (20만명), Miskolc (16만명), Szeged (16만명), Pécs (15만명), Győr (13만명)
민족	마자르족 98.5%, 독일 17만 명, 슬로바키아 12만 명, 세르비아 5만 명 등
언어	헝가리어(전체 인구의 약 98.9%가 사용)
종교	가톨릭(37.2%), 칼빈교(11.6%), 루터교(2.2%), 그리스정교(1.8%) 등
건국일	1000년 8월 20일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국가원수(실권자)	대통령 야노시 아데르 János Áder (2017년 3월 재취임) 총리 빅토르 오르반 Viktor Orbán (2018년 4월 재취임/4선)
명목 GDP	1,635억 달러 (2017)
실질경제성장률	3.6% (2017) / IMF 예상치 3.5% (2018)
1인당GDP	16,722달러 (2017)
실업률	3.9% (2018.3월 기준)
물가지수	2.72% (2018 예상치)
화폐단위	포린트(Hungarian Forint) /HUF
환율	309.21 (HUF/EUR), 274.27 (HUF/USD) (2017)
외환보유고	274억 달러 (2018.4월 기준)
산업구조	농업 4.1%, 광업·공업(제조) 24.6%, 건설 4.1%, 서비스 67.8%
교역규모	1,932억 달러/수출 1,063억 달러, 수입 869억 달러(2017)
대한 교역규모	대형 수출 : 12.06억 달러 (2017) - 주요 수출품목 :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의료용품, 화학제품, 곡식류 등 대형 수입 : 7.06억 달러 (2017) - 주요 수입품목 : 원동기·펌프, 자동차 및 부품, 계측제어분석기, 컴퓨터, 육류 등



2 - 최근 정치 동향에 따른 경제적 전망

□ 최근 18년 4월 헝가리 총선 결과 및 향후 전망

- 집권여당인 피데츠 압승 (총리 : 빅토르 오르반)
 - 총 의석의 2/3 차지한바 단독 개헌 가능선 있음
- 오르반 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으로 진출시장 전망 또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주변국은 난민제도 관련 헝가리-EU간 긴장감 고조 우려

□ 헝가리 총선의 결과

○ 집권 여당 압승

- 2018.4.8(일) 실시된 헝가리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집권여당인 Fidesz (피데즈, 청년민주동맹)와 기독교민주당(KDNP) 연합이 전체 의석 199석 중 133석 또는 134석을 확보하여 압승

□ 현지기업/지상사 반응

○ (기아자동차, 자동차) 변동성 축소로 자동차 산업 성장

- 임직원 모두 예상했던 결과로 사업 운영에 큰 변화 없음. 자동차업계는 오르반 정부의 연임으로 정책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축소되어 기존의 성장 추이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삼성전자(생산), 가전) 큰 변화 없어, 예상하던 결과

- 오르반 정부의 연임은 이미 예측했던 결과로 경제 분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지진출한 기업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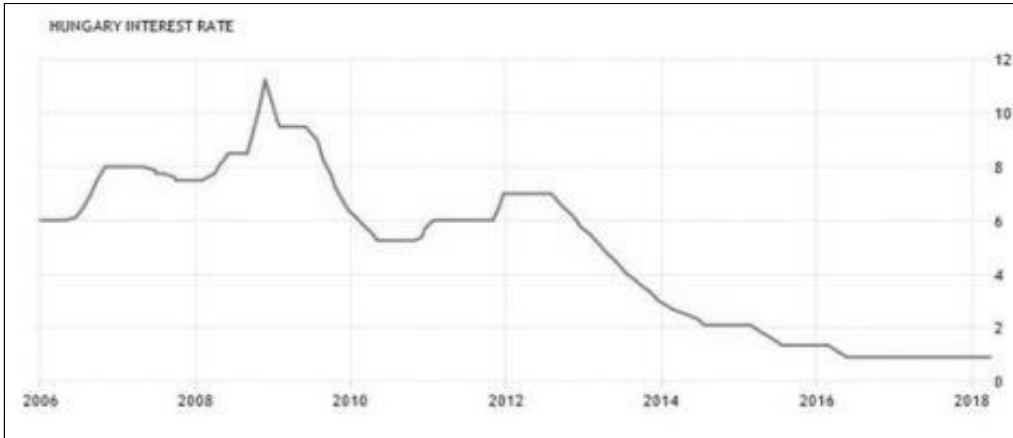
□ 금리 변화, 환율 변화

- 헝가리 중앙은행은 2012년 6.75%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2016년 5월 0.9%까지 인하. 실제로 이러한 금리정책으로 포인트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됨. 가계부채 역시 2010년 7,844백만 유로에 달했으나 2016년 5,683백만 유로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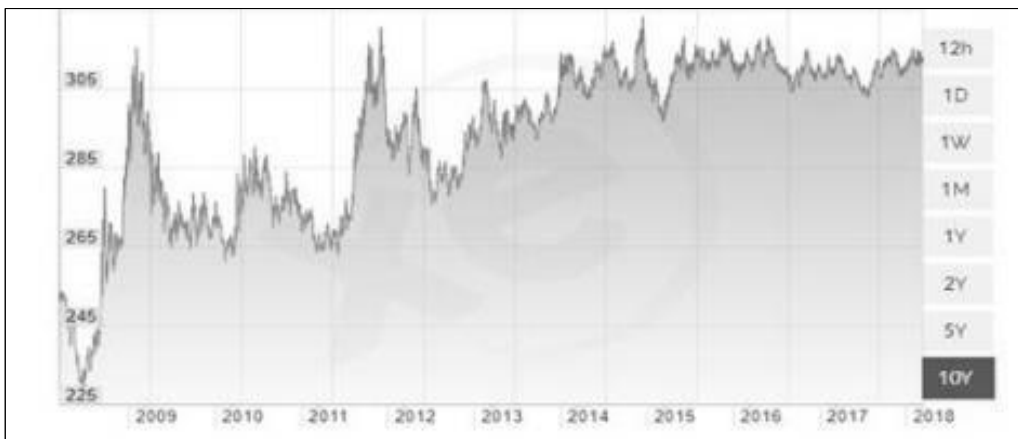
<헝가리 이자율 변화 추이>

(단위 : %)



(자료원 : 헝가리 통계청)

<유로화/포린트 환율 변화 추이>



(자료원 : 헝가리 통계청)

□ 오르반 정부 연임에 따른 전망

○ 오르반 정부의 親기업 정책에 따라 헝가리 경제 성장 지속

- 오르반 정부가 유지해온 저금리(0.9%), 세금 인하(법인세 9%, 고용주세 19.5%) 등 친 기업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20년까지 250억 유로의 EU기금 수혜 기대하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총 235억 유로(전체의 94 %)가 프로젝트에 할당됨.
- 낮은 실업률과 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매 판매 증가, EU 투자 자금의 유입, 저금리 등으로 자동차, 건설 분야와 같은 주요 산업 부문에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986만의 적은 인구와 낮은 생산성 등 구조적 문제가 걸림돌

□ 한국에의 영향

○ 한국과 헝가리의 경제 협력 강화 전망

- 2016년 기준 한국은 헝가리의 수출대상국 중 27위이고 비EU 국가 중에서는 5위를 차지. 수입대상국 중에서는 19위이며, 비EU 국가 중 4위로 헝가리에게 한국은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지속 성장 전망

○ 피데츠 당의 친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은 우리 기업에게 유리

- 오르반 정부는 서구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관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친동방정책을 추진
- 우리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

2018년 주요 일정

- 한 - 헝가리 수교 29주년 : 2018. 1월
- 헝가리 총선 : 2018. 4월
- 헝가리 2019년 예산심의 : 2018. 6월
- 헝가리 유망 전시회 일정
 - (농기계) AGROmash 전시회 : 2018. 1. 24-27, Hungexpo
 - (건축) Construma 전시회 : 2018. 4. 11-15, Hungexpo
 - (산업일반) Industrial Days 전시회 : 2018. 5. 15-18, Hungexpo
 - (치과) Dental World 전시회 : 2018. 10. 11-13, Hungexpo
 - (자동차) Automotive Hungary 전시회 : 2018. 10. 17-19 , Hungex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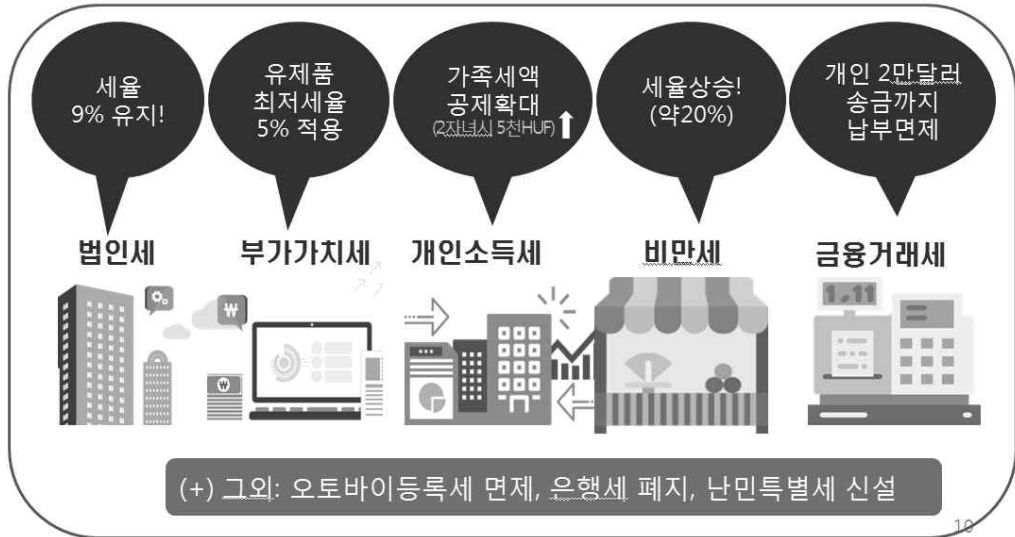
주요 개정세법

Ⅲ

- 1. '19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 20
- 2. '18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 28
- 3. '17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 36
- 4. 헝가리 최근 세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 38



1 '19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²⁾



□ 개인소득세법 개정사항 (카페테리아 시스템 등)

○ 개인소득세율 현행유지 및 가족세액공제 확대³⁾

- 유럽 연합 (EU)의 최저 개인소득세율인 15% 유지.
- 가족세액공제 : 두자녀 대상 세액공제 5,000 HUF 증가예정

○ 부가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 과세

- 부가적인 급여는 현재 증액된 과세기준(118% 소득)으로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로, 부가급여에는 증액 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현재 적용하는 의료비 대신 19.5%의 사회보장세가 부가급여에서 납부될 예정임.
- 따라서, 실효적 세금 부담은 34.5%가 될 전망이다.(현재 34.22%)

2) KPMG Tax alert(expected amendments to Hungary's tax legislation)

3) www.kormany.hu/en/ministry-for-national-economy (Hungarian Government)



- 특정 확정급여에 대한 증액 과세(소득의 118%)는 적용가능함
 - 실효세 부담(40.71%)은 변하지 않음.
- 많은 종류의 현물급여의 폐지
 -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부가 및 특정급여 적용)
 - 그러나, 10만 HUF의 현금급여와 휴일근무용역은 부가급여로 간주되지 않음. 그외, 개인 보험, 내부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학교 지원, 시즌 티켓, 자원봉사자 지원금, 소위 Erzsébet 증표 등은 특정 확정급여에서 제외됨
- 각종 면세혜택 취소
 - 주택 용자를 통한 고용주 지원, 위험보험 및 학생 대출, 이사 목적의 주택수당, 각종 운동 및 문화행사 제공되는 입장권 등이 포함 예정
- “영구주택”에 대한 정의가 개인소득세법 반영
 - “영구주택”에 대한 정의는 개인이 영구히 이용할 수 있고 생활용으로 충분한 부동산을 뜻함.
 - 증권의 정의에는 법률 회사에 기여한 자산과 같은 특정한 법적 재무적 기여금이 포함될 수 있음.
- 세금 환급 제안과 관련된 개정
 - 2019년 1월 1일부로 민간기업에 대한 세금환급안도 마련될 예정이고, 동시에 민간 기업인의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연도 다음해 5월 20일임.
 - 세무당국은 사업주 또는 도급업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라 해당 과세 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개인에 대한 세금환급안 작성함.
 - 외국인 연금보험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세금수당을 신청한 개인도 세금 환급혜택 가능. 그러나 해당 외국인연금보험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이 납세신고서에 추가 수정해야 함.



○ 임대수익 관련 개정

- 개정사항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공공요금은 임대인이 본인 명의로 송장을 발행하더라도, 수익의 실현으로 보지 않음.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회사는 세금을 원천 징수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또한 개인적으로 관련된 인상된 세금 납부의무가 있음.

○ 보험료 관련 개정

- 2019년 1월 1일부로 고용주가 고용자를 위해 지급하는 위험보험(최저 임금의 30%까지)은 면세소득으로 보지 않음.
- 상기 사항 외에, 고용주의 개인보험 지원은 특정 확정급여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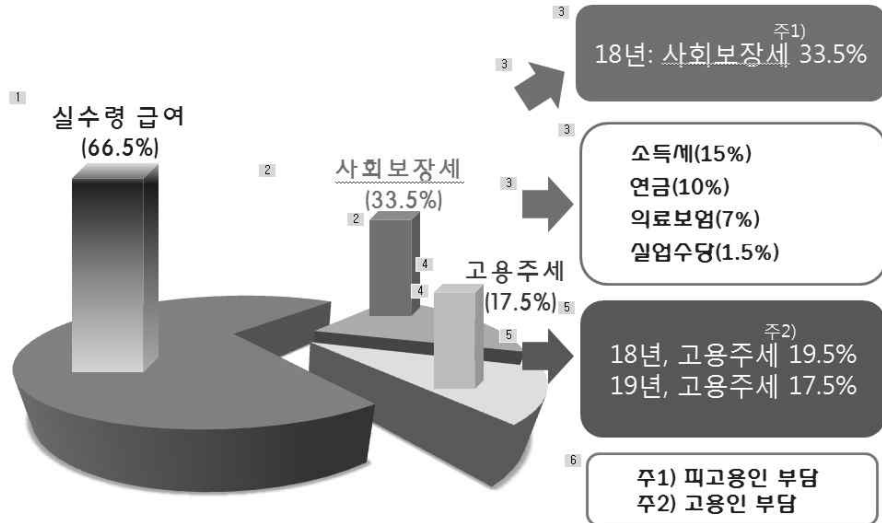
○ 그 외 개정사항

- 정부 포털 등록(Ügyfélkapu)한 개인은 세금공제 신고서(예 : 가족세액공제 신고)를 전자제출 가능함. 신고 후, 신고서는 세무당국이 고용주 즉, 업주들에게 발송 예정
- 단순화된 법인세(eva)는 2018년 12월 20일까지 개인이 선택 가능함. 이 날짜 이후에는 이 유형의 과세방식을 사용할 수 없음.
- 교육기금 출연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노후 연금을 수령한 개인(퇴직자)을 고용시, 고용주의 교육기금 납부의무 면제됨.



□ 사회보장세 개정사항

헝가리 사회보장세와 고용주세



- 고용주세 세율 인하 : 19.5% → 17.5%
 - 1% 인하는 1년 동 안의 약 130억 달러의 세수 감소 예측
- 고용주의 세금부담 완화
 - 노령연금을 받는 근로자일시, 총소득에서 15%의 소득세만 납부함(고용주는 사회보장세에 대한 납부의무 없음)
- 퇴직자의 사회보장적 지위 적용
 - 퇴직자의 근로활동(헝가리 고용 계약에 따라)은 사회보장적 관점에 따라, 보험지위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또한 퇴직후 근로한 개인은 퇴직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직원으로서의 의료보장(그 외 추가적인 서비스시간 또는 연금 기반)을 받을 자격이 없음.

○ 사회보장세 및 의료보험료 청구법

- 사회보장세 및 의료보험료 청구에 관한 현행 법규에 대해(사회보장세의 고용주 부담 완화 등) 새로운 법이 제정예정임.
- 의료보험료 청구법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사회보장세법상 개인의 범위가 확대됨. 현행 의료보험료 청구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관점에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다루지 않고 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는 개인에 대해 청구 가능함.
- 자본 투자 수익에 대한 납세의무는 여전히 제한적임. 사회보장세는 연결 과세표준의 통합, 기초임금(헝가리의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및 해당 자본투자의 소득의 합계가 과세연도의 최소임금의 24배를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납부의무가 있음.
- 통합 과세 기준과 관련된 소득에 관해서, 제3국인은 최대 2년 동안 새로운 사회보장세 면제가능(동일 면제기준 적용)
- 2019년 1월 1일자로 사회보장세 수당 중 일부 폐지됨(예 : 25세 미만 또는 R&D직원의 수당).
- 그러나 새로운 법에 따라, 사회보장 수당은 ①비숙련 및 농업 근로자 ②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개인 ③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및 공무원에 대해 허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그 외 개정사항

- 의료서비스 요금은 하루에 250 HUF, 매월 7,500 HUF임.
- 불법 해고와 고용 회복 사이의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은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보험계약자로 간주됨.
- 연금 혜택기간 및 연금기반에 대한 합의비용은 선택기준의 24%적용 (현재는 적용 가능한 34%)
- 퇴직금과 연체료 또한 사회보장세 과세대상 소득임.



□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개정사항

○ “참여면제”의 정의 명시

- 예를 들어, 오픈엔드 투자펀드가 발행한 투자단위는 더이상 보상되지 않으나, 이전의 취득한 기관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경우, 우선적인 회계 처리는 새롭게 취득한 참여에만 적용될 예정.

○ 에너지 효율개선에 관한 세금공제

- 또한, 회계법상에서 정의한 보수(renovation)공사에 대한 투자 외에 에너지 효율개선에 관한 세금공제도 신청 가능함. 특정 합의의 경우, 세금 공제비율은 35-45%로 증가할 수 있으나, 상한은 15백만 유로 유지예정임.

○ 수입 R&D 서비스의 직접 비용을 고려함

- R&D서비스와 관련한 과세표준 감소액은 서면 신고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로 나뉨. 이러한 효익에 따른 회계처리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 불가함.

○ 그 외 법인세법 개정사항

- 2019년부터 기업들은 CIT와 관련된 단체 과세를 선택 가능
- 2019년부터 헝가리 CIT 규칙은 ATAD(Anti-Tax Avoidance Directives)와 일치
- 공연자의 후원을 위한 세금 공제는 CIT에서 폐지된다
- 2019년부터 KIVA의 경우 적용 대상 기준 확대

□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 부가가치세 제도 내의 상품권 처리

- 지역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상품권처리에 관한 새로운 조항 도입 (세금 포인트를 상품권 발행에 근접하게 만드는 것 목적)

- 단일 목적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발행시 납세의무 결정
 - 다용도 목적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이 사용될 때 납세의무 결정.
- 소위 “미니 원스톱 솅 시스템”(MOSS)을 통한 전자 공급서비스
 - 오직 EU 회원국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만이 추가적인 단순화(비과세) 조치를 이용 가능함
 - 단, EU회원국에서 받은 총 매출 1만 유로(EUR)를 초과하지 않을시 공급자는 해당 국가의 VAT 부과할 기회가 주어짐
 - 송장 요건에 대해서는 (MOSS 등록이 수행된) 국가의 규정 적용함
 - 수출 또는 기타 유사한 VAT 면제 거래시 면세제도 도입
 - 면세거래를 수행하는 거래처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
 - 온라인으로 송장 작성 데이터 보고
 - 2018년 7월 1일 기준 10만 HUF로 감소하여 확대적용됨
 - 온라인 송장 데이터 보고는 판매보고서 목록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 발행일 및 송장 일자 기준으로 송장 데이터를 보고하게 됨.
 - 또한, 특정기간 이중보고 방지를 위해 온라인송장 수취인은 7월 1일 이전에 송장과 관련된 구매리스트를 작성할 의무가 없음.
 - 외국인 과세대상자는 등록일 이전분에 대한 VAT 공제 가능
 - 헝가리 VAT에 등록된 외국인 과세대상자는 등록 기간 동안 제출된 VAT 신고를 통해 등록일 이전 구매 상품에 대해 VAT를 공제가능
 - 매입자납부제도의 변경
 - 2021년 1월 1일부로, 매입자납부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법에서 정한 부동산 양도, 건설 작업 또는 기타 설치작업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학교 협동조합과 연금조합에 대한 매입자납부 또한 폐지될 것임.
 - 특정 시리얼 등 곡물과 철강 제품의 공급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 유제품 등에 대한 VAT을 인하

- 2019년 1월 1일부로 UHT 및 ESL우유에 대한 VAT 비율은 5% 적용.
- 가공류, 돼지고기, 신선한 우유 및 계란 세금감면을 목표로하는 정부의 취지 반영

○ 그 외 VAT 개정사항

□ 기타세법 개정사항

○ 세금 폐지(통합 등)

- 신용기관에 대한 세금, 특별은행수수료, 문화세금, 75% 할증료 폐지
-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는 보험세 및 사회보장세 통합
(사회보장세는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한도가 더 높아짐)

○ 보험세 개정 (사고세 폐지)

- 고정세율 적용 : 차량 책임 보험의 경우 15% (KGFB), 보험사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경우 20%
- 연간 과세표준이 80억 HUF 이하의 보험회사의 재산보험, 사고보험, 종합 보험(CASCO)의 경우에는 우대세율 유효함.
- 제3자 책임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우선세율의 연간 임계치 계산에서 제외됨.

○ 금융거래세

- HUF 20,000 은행 송금에 대해 면제됨



○ 건강제품보건설

- 특정 식품 및 음료(예 : 청량음료, 스낵, 초콜릿, 증류주, 마멀레이드, 조미료 등)에 대한 공중 보건제품세는 일반적으로 20% 인상됨.
- 시민 건강증진 정책 중 하나

○ 담배소비세

- 담배 소비세율 인상

○ 각종 감면, 면제

- 오토바이 등록세 감면 등

2 '18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 법인소득세

○ (법안 T/18006) 개발세액 공제대상 투자 방식 확장

- 제품 다양화 또는 새로운 프로세스 혁신의 2가지 방식 추가
- 그 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의 경우
투자 가치가 최소 30억 포린트 이상일 경우 세금공제 가능(그 외의)
투자 가치의 최소 한도는 60억 포린트임.

○ 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 전기충전소 원가('17.7.1 적용)

- 감면한도는 충전소당 2천만 유로에 해당하며 비용은 3년 이내에 경비로 산입되어야 함
- 즉, 이른바 “로빈 후드”세인 에너지 공급 업체의 기업소득세(2008년의 법령 LXVII)에도 적용가능함



- 에너지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조세인센티브 시행령시행 ('17.1.1부터 적용 가능, '17.7.5 발효 - 법령VII.4 176/2017)
- 법인세법상 '세금 배분법'의 기준 완화('17.11.14 도입 - 법안 T/18007)
 - 원칙적으로 정해진 납기내 법인세 납부를 한 후 세금을 배분해서 영화 제작, 공연 예술 단체, 인기 있는 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별도 요청할시엔 납기 이후라도 가능함
(단, 15일까지 유예할 수 있고, 기한까지 완납해야 함.)
- 근로자 임대아파트 건설가치 세금공제 추가
 -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및 가까운 친척 위해 지은 임대아파트의 건설가치에 대한 세금공제 추가
 - 세액공제는 공사 완료 년도에 장부금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함.
(직원의 이동성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고용주 법인세 감소)
- 외국건설회사의 헝가리 영구설립 자격규정 신설
 - 외국 건설회사가 헝가리에서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활동기간이 보통 6개월(이중과세협정 명시기한)을 초과할 경우 해당 연도의 법인세 등 신고 납부해야, 영구 설립자격이 주어짐
 - 이중과세조약이 없으면 3개월마다 신고납부해야 함.
- ('18년) 그 외 법인세법상 기타 개정사항
 - 참여 면제에 대한 10% 기준은 법에서 삭제되었음('18년)
 - 참여 규모 관계없이 법인세 구제 적용자격 요건(예 : 75일 마감, 1년 약정기간)은 변경되지 않음
 - 최소 한 명의 연구원이나 개발자를 고용하면 '창업 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신생 기업을 위한 수당에 대하여 신생 기업 및 지원 기업 등록을 포함하는 장관급 법령이 발행되었고, 잠재적 세액공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규정함.

- 연금 수급자의 일반적인 이익 단체는 법인 소득세 평가 및 지급의 주체로 학교협동 조합과 동일한 규정에 해당함
- 올림픽 입찰 지원과 관련된 세금 공제는 입찰 마감으로 폐지.
- 감가상각 및 최소 세금 규정은 IFRS에 따라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는 납세자를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개선

□ 부가가치세

○ ('18년)부터 하단 제품/서비스의 VAT 세율은 5%로 감소

- 사람이 섭취하는 생선 및 특정 생선 제품;
- 점자 타자기, 프린터 및 디스플레이;
- 인터넷 접속 서비스;
- 레스토랑에서 제공 음식 및 현지에서 만들어진 무알콜 음료.

○ 인터넷서비스 적용률 : (기존) 18% → (현재) 5%

- 부수서비스는 제외 (ex) 넷 워킹서비스 : 간주제외

○ 축산(돼지)제품 및 레스토랑 식음료 : 5%

○ 전자포털을 통한 송장 보고기한 개정 등

- 2018.7.1부터 소프트웨어로 발행한 국내 판매 송장과 관련된 세무 당국에 실시간 인보이스 정보를 제공할 것
(아직 온라인 인보이스 규정을 명시하는 장관령이 발행되진 않았음)
- 2018.7.1부터 사전 인쇄된 송장블록에서 발행된 송장은 전자 포털을 통해 세무당국으로 다음 기한으로 보고해야 함.

- VAT 금액이 HUF 100,000 이상이지만 HUF 500,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발급 후 5일 내 보고
- VAT 금액이 HUF 500,000과 같거나 초과 할 경우, 발급 후 1일



□ 개인소득세

○ ('18년) 과세대상자 조항 개정

- 과세대상자 조항('17.11.14 채택, T/17957)에 교회를 위한 1%의 개인헌금은 지정된 과세연도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적용됨
- 또한 장래에, 개인의 정보 및 데이터는 다른 단체 및 교회 등(개인의 성명을 기반으로 해야 함)에서도 이용가능

○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소득세(양도소득세) 환급가능

- 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 2년 이내에 퇴직 주택 또는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 등이 주택 목적으로 활용시 환급 가능함
- 기존에는 향후 납부할 세액에 이월공제가 가능했었음

○ 차량유지비용의 범위확대

- 기존에는 납세자 또는 배우자 소유차량에 대해 비용인식 가능했으나 납세자의 가까운 친척 소유차량에 대해서도 사업비용 인정함 단, 멀리 떨어진 친척 등은 공제 불가능(개인사업자, 자기조정 및 외부조조정 등 똑같이 적용됨)

○ 직원 임금의 비과세 금액 증가(고용주가 직원 주택지원 하는등 유리해짐)

- 취업 첫 24 개월 동안 최저 임금의 60%(기존 40%)
- 고용의 두 번째 24개월 최저 임금의 40%(기존 25%).
- 그 후 12 개월 동안 최저 임금의 25%(현행 15%).

○ 가족세제(아동)수당 증가(아동 2명 이상)

- (기존)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 2017년 1명당 100,000 HUF이었으나 아동 1명당 116,670 HUF로 증가함
- 1명의 자녀를 입양시 공제액은 변경되지 않음(HUF 66,670),
- 3명 이상의 아동 또한 변동되지 않음(HUF 220,000).



○ 근로자 학비 지원시 세액공제확대

- 사업주는 등록금 지원을 위해 근로자에게 '17.11.11부터 매월 의무적 납부액까지 학비대출상환 지원 가능 (학생대출 정부 법령)
- 최저 임금의 최대 20%까지 세금 공제 혜택 가능함 (2018년 최대 월 27,600 HUF).

□ 지방세 개정

○ 스포츠 관련기업에 대한 지방세 대폭 감소('18년)

('17.11.14 채택 - 법안 T/18006)

- 스포츠 관련수입(입장권, 임대 판매, 광고, 후원 등) 지방세 감소
- 이 금액은 국가보조금으로 구성, 납세자는 이 보조금에 대한 규칙이나 면제 규정에 따라 사용가능함.

○ 세무당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원스톱)

- 2017년 여름, 기업의 변경에 따라 신설 및 기존 기업도 한곳의점포 시스템 통해 지방 당국에 대한 등록 의무를 이행 가능
- 즉, 세무 당국은 등기소에서 받은 데이터를 해당 지자체 전달함.

○ 납세자 보호 보장규칙 개정

- 세율이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되어있는 경우 지방 당국은 고정 기간의 처음 2년 동안은 세율을 인상할 수 없음.
- 세율, 세금 면제, 세금 공제가 일정 기간 고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 당국은 주 재무부에 데이터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소비세 및 에너지세 개정

(‘17.7.1부로 소비세 새로운 법률 발효 : LXVIII of 2016 law)

○ 소비세법 구버전(2003년 법 CXXVII) 만료되었고, 에너지세법(2003년 Act LXXXVIII) 또한 만료됨

- 에너지세는 독립적인 세금으로서 폐지됨.
- 그러나, 에너지 납세의무는 계속되어, 소비세 규제는 에너지 제품의 개념으로 보완됨. (‘17.7.1. 에너지가 소비재가 됨)
- 이전 에너지 세금의 특성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전통적' 소비재와 비교하여 신에너지 제품(전기, 천연 가스, 석탄) 규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기타 세금 및 세무행정 개정사항

○ 프로운동선수 및 스포츠코치의 기부금설정한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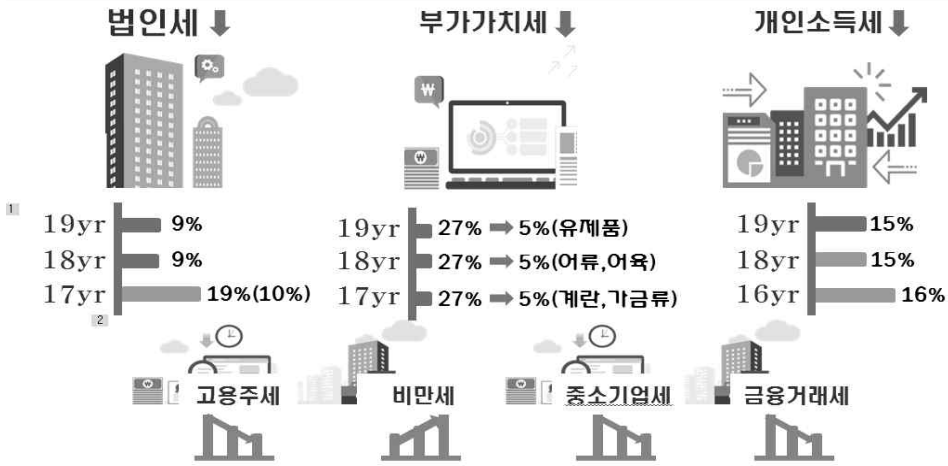
○ 법률회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적용 가능

- 2018년부터 법률회사들은 중소기업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자격이 있음. 법률 회사는 2017년 12월 1일부터 납세방법을 선택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2018 년부터 중소기업 세율은 현재 14%에서 13%로 감소

○ 부동산임대업 의료보험료 면제

- 고정자산(부동산) 임대는 14% 의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HUF 1,000,000을 초과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지 않음

주요 개정세법 한눈에!



□ 세무조사 개정사항

- 이해가능한 규정 수립, 세무당국의 서비스 제공 지위 강화, 조세 절차의 단축, 행정의 축소 등
 - 2018.1.1 시행되었음 (*17.11.14 채택)
 -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 (Act T/17994)
 - 새로운 “기법”이외에 새로운 배경법 동시채택 (Act T /17995 “조세 행정 명령”).
 - 새로운 사실/상황 제공금지 규정 도입
- (기존) 7가지 유형의 조사 → (현재) 2가지 새로운 유형 조사
- 재조사 불가능한 기간은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90일 기한 적용 및 그 외 규정준수감사(30일 기한)에 해당함.
- 세무조사 기한 개정사항
 - 가장 중요한 변화 : 365일 이내에 세무조사는 완료될 것임. 성실 납세자 : 180일 이내 완료해야.(지금과 동일)
 - ※ 세무조사 기한과 관련한 보증규칙 (기한 등을 어기게 될시)
 - 종결기한 초과시 :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지불한 수수료/관세 등의 금액을 상환해야함
 - 납부기한 초과시 : 수수료/관세의 두배를 상환해야 함



□ 불복제도의 개정사항

○ 법적구제 기한변경

- 세무 조사시 회의록 등 논평에 대한 마감 기한 : 15일 → 30일
- 논평 제출시 문서 접수로부터 60일 기한 + 30일로 첫 번째 심사 결정 기간은 90일 이상임

○ 불복 및 이의신청관련 개정사항

- 불복(항소)시, "새로운 사실/상황 금지"에 덧붙이는 또다른 언급가치가 있는 해석 등은 거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의신청내용 불분명 또는 논란시에 세무당국은 납세자에게 해명을 위한 8일의 기한을 제공하고, 미해명시에는 항소 거부함
- 이의신청서가 늦게 제출된 경우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확인 요청을 할수 있고 확인에 응하지 않은경우 항소 거부할수 있음.
- 검증요청 기간 제출마감일 6개월 → 45일(단축)

○ 조건부 세금감면

- 납세자가 항소할 권리 포기하고 만기일까지 세금차액 납부하면 50% 세금 감면함. (감독조치 제기가가능성 또한 떨어짐)

○ 가산세 한도규정 신설

- 소득 은닉시 현재 가산세 금액은 200%로 한도규정이 없었으나자연인 벌금 최대 20만HUF, 타 납세자 최대 50만 HUF 한도

○ 신규사업자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 실시(창업지원)

- 신규사업자는 납세이행에 관한 무료정보제공 및 6개월 멘토링 프로세스 참여가능



○ 자체 재심의 원칙 (자체수정)

- 납세자는 해당 과세기간당 자체수정 기회가 있으며, 자체수정 후 조사는 15일 이내 불가능함.

○ 분납 금액 및 기간 조정

- 분납 금액 상향 조정 : 20만 → 50만 포린트
- 분납 기간 또한 조정 : 6개월 → 12개월

3 '17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 법인소득세

○ 헝가리 법인세, 19% → 9% 인하

- 유럽연합(EU) 최저 수준인 9%로 법인세율 인하 법안 통과.

기존		개정
순이익 5억 포린트 초과	19%	단일세율 9% 적용
순이익 5억 포린트 이하	10%	

- 헝가리 경제 성장동력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시행하기 위함
- 연매출 200만 유로 넘는 외국기업에서 가장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분석

□ 고용주세

○ 고용주세 인하, 27% → 22% → ('18년)19.5% → ('19년) 17.5%

- 헝가리 노동자의 경우, 실 급여의 약 1/3에 해당하는 33.5%를 사회보장세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음. 이는 연금 10%, 의료보험 7%, 실업수당 1.5%, 소득세 15%로 구성돼 있음.



- 헝가리 근로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사회보장세 33.5% 외에도 각 기업에서는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세를 2016년 기준 27%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했음(임금 대비 매우 높은 세금)
- 자국 노동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노동자의 실제 급여 인상을 지원해 자국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부가가치세

- 농축산물에 대한 부가세, 27% → 5% 대폭 인하
 - 우유·계란·계육에 부가되던 부가세 27%를 2017년 5%로 인하.
 - 최근 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및 농가의 수입 감소, 해외 수입 제품과의 경쟁 이유로 분석됨
- 기타 개정사항
 - 헝가리 인터넷 부가세 인하 : 27% → 18% → ('18년) 5%
(인터넷 사용 증가 및 온라인 마켓 활성화 등의 효과 기대)
 - 식당서비스 세금 인하 : 27% → 18%로 인하
(2016년 중대형 상점의 일요일 영업 금지 폐지 등 시장 확대)
 - 현금 지출 시 의무 세금신고 기준 확대적용
: 100만 포린트(약 400만원) → 10만 포린트(약 40만원) 이상

4 - 헝가리 최근 세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 헝가리정부는 외국계 기업 유치에 적극적
 - 헝가리 정부는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 대륙으로 이전하는 외국계 기업 유치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음
 - 본격적인 유치경쟁 위해 법인세 및 고용주세 인하 정책등 도입
 - 삼성 SDI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투자 유치 · R&D · 서비스 산업 등 차세대 산업 유치목적 등 조세정책이 뒷받침하고 있음

- 농업국가로서의 특성
 - 주로 농축산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를 통하여, 농업국가로서 특성을 나타내며, 농축산품 경쟁의도를 알 수 있음
 - 우유, 계란, 계육 그 외 인터넷, 타자기, 컴퓨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중점적 인하됨

- 급격한 정책변화 및 안정성 결여가능성
 - 2017년 발표된 국제투명성지수(CPI)에 따르면 헝가리는 OECD 35개 회원국 중 31위, 투명성이 낮은 국가로 이권을 위해 국가등이 활용될 소지가 높은 편임.
 - 헝가리 투자진출 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일관성 등 정책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기업 투자 시 애로점은 상시 한-헝가리 양국 간 의제로 제시해 국가 차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임.



○ 납세자의 권리보장 강화

- 새로운 조세 집행 규칙의 가장 중요한 수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및 관세청이 권력기관에서 일반 집행 기관으로 변경
- 세무조사기한, 불복제도 등 개정시 제출 기한이 촉박하거나 불필요한 조사유형 및 절차에 대해 전면 수정함으로써 납세자의 법적 구제 성격도 개정사항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헝가리 조세제도

IV

1. 헝가리의 기본 과세체계 / 42
2. 참고해야할 헝가리 세정시스템 / 43
3. 헝가리 주요 세법 / 47



1 - 헝가리의 기본 과세체계



□ 중앙세와 지방세

- 중앙세금 : 주정부 예산의 수입(≒국세)으로 목적에 따라 나눔
 - 일반 세금 : 전통적인 세금 유형
 - ex)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 특별 세금 : 특정 산업 / 부문에 부과되는 세금 유형
 - ex) 에너지 시설세, 금융/신용기관 과세, 신용기관 공익사업세, 전기 통신세, 광고세, 공중보건세 등
- 지방세 : 지방 자치 단체 수입(≒지방세)
 - 지방세는 개별 시정촌의 권한 내에 속함
 - ex) 지방사업세, 토지세, 건축세 등

□ 헝가리의 과세원칙 및 방향

- 일반적으로 자진 신고납부 원칙 적용
 - 기업과 개인이 세금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해야
 - 경우에 따라, 세금 당국이 직접 세금 부과 가능.
 - (중앙 세금은 소득에서 소비로, 일반 세금에서 특별 징수 전환)
- 헝가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세금, 관세 및 소비세 제도합쳐져 조화를 이루고 있고, 조세 제도의 운영에서 국가는 EU, OECD 및 BEPS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헝가리 세제환경에 대한 투자 시사점

- 겉보기에 복잡한 세금 제도와 때로는 과도한 규제가 있지만, 낮은 법인세율, 세제상 인센티브(투자/개발세액공제 등) 관점에서 헝가리는 투자 가치가 크고, 고용소득세 또한 지속적 감소하는 등 즉, 수용가능 세금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
- 영리 or 비영리이냐, 목적이 법인소득세 or 부가가치세이냐 등 여러 관점에 따라 헝가리 내의 고정사업장 여부가 결정되고, 특히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조약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임.

2 - 참고해야할 헝가리 세정시스템



□ 현지기업의 세무행정 대응시

- 원칙상 국내지점(지사)만이 가능
 - 지사는 조세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고 세금 부채를 준수하고 당국에 앞서야하며 외국 법인을 대신하여 세금문제 진행함
 - 기업은 납세의무를 위해 대리인을 임명가능하며, 어떤 경우에는 세금 문제를 처리할 재정 담당자를 임명도 가능.
- 업무대리인 선임가능
 - 사업체가 헝가리에 있고, 주주 또는 관리이사가 헝가리에 영구적 주소가 없는 외국인 경우, 공정 서비스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업무대리인은 법원 및 당국이 제기한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전달하여야 함.

□ 헝가리의 세무행정 전자시스템 체계화

○ 행정 전자시스템 체계화 (Cégkapu 포털)

헝가리의 세무행정 전자시스템

Intézzék elektronikusan

A gazdálkodó szervezetek számára 2018. január 1-jétől kötelező a Cégkapu használat. A NISZ Zrt. Cégkapu szolgáltatása 2017. december 28-án indul.

A gazdálkodó szervezet regisztrációját ezen az oldalon online módon lehet kezdeményezni.

세무행정 전자시스템

헝가리 전자 행정에 대한 세부 규칙 451/2016 (XII.19) 정부 법령 89 91

<https://tarhely.gov.hu/ckp-regisztracio/kauloqin.html>

- 2018년부터 모든 회사는 세무당국 등 모든 당국과 전자적으로 연락할 의무가 있음 (전자연락은 양방향에서 전자 채널을 통한 통신을 의미)
- 최근 Cégkapu 포털이 만들어져, 전자 관리 및 연락처 관리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조직에 제공되는 공식 저장공간으로 2018년부터 비즈니스 협회에서 등록후 사용하고 있음
- 2018년까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는 이전에 적용된 포털 **Ügyfélkapu / CAR** 저장 공간을 통신에 계속 사용가능

- 전자행정은 회사의 신속한 등록을 허용하며 소위 “원 스톱 숍”(one stop shop) 시스템을 통해 세무 당국에 등록하고 등록과 동시에 지자체에도 등록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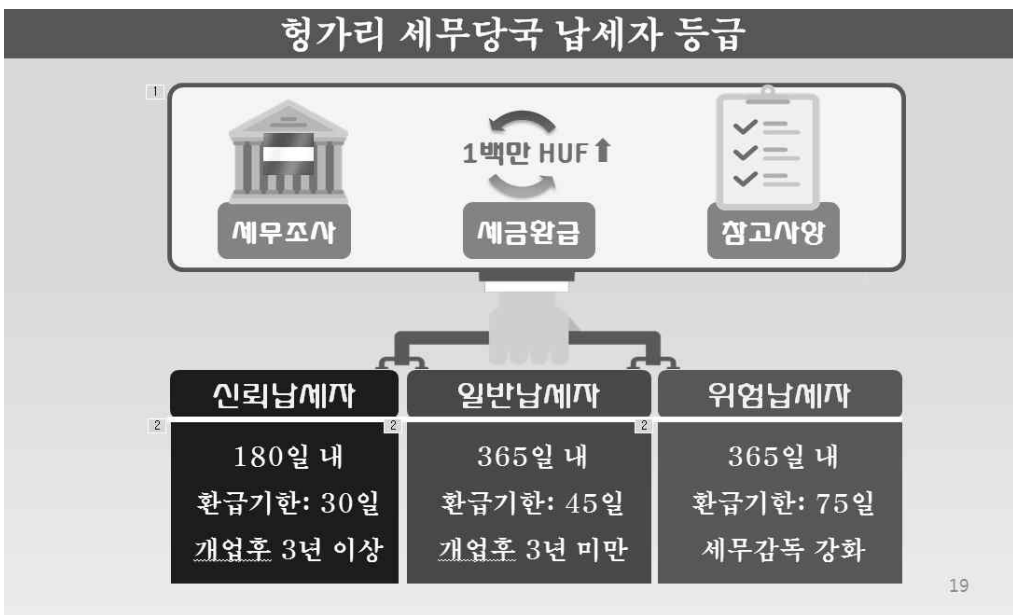


- 회사의 장부 및 납세의무를 준수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회계사를 유지하거나 회계 자격이 있는 직원을 고용해야함.
(연간 순매출 3억 HUF를 초과하거나, 인원 50명 초과시에는 회계감사 대상)

□ 헝가리 외국인 (부동산, 토지)의 부동산 취득

- 외국 법인이나 자연인은 보통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외국 법인 또는 자연인은 적격성을 지닌 부다페스트 또는 관청 승인을 얻어 농경지 또는 임업 토지자격이 없는 재산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음.
 - EU, EEA 회원국 및 스위스의 법적 성격이 없이 재산이 시민, 법인 및 상속으로 취득되는 경우 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 납세자의 등급



○ 세무당국은 기업을 세가지 범주로 분류

：일반납세자, 신뢰납세자, 위험납세자

- 신설기업은 개업 3년 동안은 신뢰할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음
- 신뢰납세자는 세금 준수 및 세무조사 등에 대한 다양한 혜택
- 위험납세자는 세무당국 감독 강화, 관리부담 증가 및 감사 증가

□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 의무적인 세무조사는 없음 (예외적 경우 제외)

- 세무조사가 예상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환급신고서 제출할때
- 세금당국은 위험평가를 토대로 납세자를 감사대상 선정

○ 세무조사시 일반적으로 회계감사서류 제출요구하여 검토

- 세무당국은 진술서 요청, 증인 심리, 현장 검사, 거래와 관련하여세무조사 등의 조사절차 수행권한이 있음
- 조사후 당국은 납세자가 주석을 첨부할 수 있는 보고서 발행



- 보고서에 결함 또는 세금 체납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 세무 당국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모든 세금 환급 및 추징, 연체료 또는 벌금 등 (세금 미납 관련)은 세무 당국에서 평가 및 결의.

□ 불복 및 소멸시효

- 결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세무 당국의 상급기관에 제기
 - 납세자가 2단계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법적 구제요청 가능.
- 세금 소멸시효는 신고서 제출 후 5년째 되는 날의 마지막날임

3 - 헝가리 주요 세법⁴⁾



1) 기업관련 세금

□ 법인소득세(Income taxation of enterprises)

- 과세대상(=납세자)
 - 거주자의 납세의무 : 국내 및 해외 수입 모두
 - 비거주자 납세의무 :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제적 활동

4) Doing Business in Hungary by Mazars

- 즉, 헝가리의 고정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 또는 납세자가 부동산소유 법인의 참여지분의 양도 또는 철회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

* 과세대상 거주자

- 비영리기업 및 규제된 부동산 투자회사를 포함한 비즈니스 협회
(예 : 공공/민간 유한회사, 유한 책임 회사 및 유한 파트너십)
- 재단, 공공 재단.
- 부동산 보유 기업.
- Societas Europaea (SE), 유럽 연구 기반 시설 컨소시엄(ERIC)
- 유럽지역 협력 파트너십.
- 신탁 계약에 따라 관리되는 자산.

○ 납세자 자격기준

- 외국인 개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협회에서 주식을 매각하거나인출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의 자격을 얻음.
- 사업협회는 헝가리에 소재한 부동산 가치가 납세자 중 재무제표에 독립적으로 인식된 자산(헝가리에 거주하는 계열사 또는 외국기업가 자격을 가진 계열사 포함)이 대차 대조표일 현재 장부가액 75%를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는 회사로 자격이 주어짐
- 또다른 기준은 헝가리가 이중과세 회피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지않은 주에서 과세연도 중 적어도 하루 동안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단체 회원 또는 그 그룹의 구성원이 설립된다는 것임 조세 또는 조약은 헝가리에서 교환 소득에 과세 할 수 있음.
- 또한, 위탁자산 관리 계약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 관리장소 및 자금을 보유한 외국인은 내국세 납세자의 자격을 얻음.
- 부동산 또는 천연 자원의 이용 및 판매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이헝가리에 설립된 것으로 간주됨
- 이용에는 배당을 위한 금전적 가치의 권리 양도 및 판매가 포함됨
- 이 규칙은 재단 설립상태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EEA 주에 설립 된 외국 부동산 투자 펀드에는 적용되지 않음.



- 국내외 기업의 경우 법인세 기반은 1996 년 법인세법 (이하 “법인세법”)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과세 수정 전의 소득(증감)임
- 법인세율(Corporate income tax rate)
 - 법인세 과세표준의 9% ('17.1.1부로 적용)
- 각종 비용 공제 등
 - 특정 조건이 충족시 로열티 소득의 50%와 직접 연구 개발비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됨.
 - 목표연도 받은 배당금으로 인정된 소득은 통제된 외국 회사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표준을 줄임.
 - 이월결손금공제 납세자는 전년도에 이월된 손실을 과세표준의 50%까지 과세기준 적용 가능 (5년까지 가능)
- 최저한세(Income minimum)
 - 회사 또는 세무 기준액의 세전 이익 중 더 높은 금액이 최소 소득 (이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세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 ① 신고서의 비용 구조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 ② 최소소득으로 과세 표준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 세금 납부.
 - 소득 최저액 : 수정된 총소득 × 2%
 - 이전 과세연도와 그 이후 첫번째 과세 연도에는 최소 소득에 관한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 피지배외국법인(CFC = Controlled Foreign Company)
 - 외국 법인은 법인 소득세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납세자가 아니면서 외국 회사가 아닌 경우 통제된 외국 법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음.

- EU 규정에 따라 **외국 법인은 통제된 외국 기업이 될수 있음**
 - 납세자는 직접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의결권의 50% 이상 또는 등록 자본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50%를 초과하는 세후 이익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 실제로 과세 연도를 위해 해외에서 납부된 법인세에 해당하는 세금은 모회사에 적용되는 **법인 소득 세율의 절반 이하**임 (즉, 헝가리 모기업의 경우 4.5% 미만임).
 - 외국 법인 또는 외국사업장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있는 적절한 인원, 장비, 자산 및 시설이 확립된 경우 CFC(통제된외국 회사)의 자격이 없음.
 - 납세자/헝가리 모기업은 CFC 분류와 관련해 세금기반 필요함.
 - CFC의 소득(과세 기준)의 일부는 이자, 로열티, 보유, 등록취소, 금융리스, 은행 및 보험 활동과 같은 특정 제목으로 실현된 납세자의 **과세 표준에** 추가됨.
 - 그러나 상기 규정은 한편으로는 수입이 **통제된 외국계 기업의 전체 소득 (과세표준)의 3분의 1**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반면에 통제 된 외국 회사가 금융리스, 금융, 보험 또는 기타 금융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전체 수입의 3분의 1은 납세자 또는 관련당사자와의 거래에서 실현되는 경우임
 - 납세자는 회사가 통제된 외국 회사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야함.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sation)**
- 회사의 채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제외)가 **회사 지분의 3배를 초과**시, 이자의 비례 금액은 법인세율 기준에추가됨.
 - **과도한 자본화율**을 계산할 때, 이전 가격 책정 규정의 적용으로인해 납세자가 세전 이익을 해당 기간의 이익 금액만큼 감소시킨 경우 관련자에 대한 **미지급 잔액을 고려**해야 함.



- 세무 기준 조정의 계산 목적상, 인식된 이자비용 외에도 **정상가격산출과** 관련하여 인식 된 과세 표준 감소 항목을 고려해야 함.
- 부채의 가치는 매출 채권의 특정 비율로 감소 될 수 있음.

○ **배당금(Dividends)**

- 헝가리의 경우 회사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
- 또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인출세가 부과되지 않음**
- 헝가리 회사는 통제 된 외국 회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목표연도에 수령한 배당금으로 회계연도 수익에 공제 가능함.

○ **법인소득세 세금공제(Tax credits)**

세금공제 종류	세금공제 내용
개발 세액 공제 (Development tax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80%까지 세금공제 가능 - 현재 가치로 최소 30억 HUF의 가치가 있는 투자 - 현재 가치로 적어도 10 억 HU의 가치가 있고 특정 수혜 자치도시 행정 구역에 설치된 운영투자 - 동물로부터 유래된 식품을 생산하는 시설 위생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현재가치 최소 1억 HUF 상당의 투자 - 현재 가치로 최소한 1억 HUF에 달하는 독립적인 환경 보호 투자 - 현재 가치로 최소한 1억 HUF 상당의 기초 연구 또는 응용 연구 또는 실험 개발 위해 고안된 투자 - 현재 가치로 1억 HUF 이상 가치가 있는 영화 및 비디오를 홍보하기 위한 투자 - 현재 가치로 적어도 5억 HUF 상당의 SMB 투자 - 현재 가치로 최소한 1억 HUF의 투자가 운영되고 자유 기업 영역의 영토 내에서 운영되며 - 새로운 절차 혁신 또는 제품 다양 화를 창출하는 현재 가치로 적어도 60억 HUF의 초기 투자 - 현재의 가치로 적어도 30억 HUF의 창업 투자를 창출하여 새로운 절차적 혁신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품 다양화

세금공제 종류	세금공제 내용
<p>중소기업 세금 공제 (Tax credits for small medium busines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은 신용 금융 기관과 체결한 대출 약정을 토대로 유형 자산의 매입 또는 생산을 위한 대출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p>스포츠 세액 공제 (Spectacle team sports tax cred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공제는 발행한 스폰서십 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과세연도에는 해당 팀에 환급의무 없음(단, 납부해야 할 세금의 70 % 이하) - 부여된 연도로부터 8년이 되는 해까지 - 납세자가 스포츠 후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스포츠 전국 연맹 또는 이 목적을 위한 공공 기관 해당 스포츠가 개설한 별도의 지불계좌에 과세연도 종료 후 90 일 이내에 지급 되는 이른바 보충적 스포츠 개발 지원금을 지불해야함. - 보충된 스포츠 개발 지원금은 납세액 또는 법인 세율에서 공제되지 않음.
<p>영화 제작 및 공연 예술기금과 관련된 세액 공제 (Tax credits related to funding film making and performance ar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조건이 충족시, 회사는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 공제는 받은 연도로부터 8번째 해가 되는 과세연도임. - 이 세액 공제의 적용 조건은 후원하는 과세 연도에 납세자는 영화제작자 또는 공연 예술 단체에 관련 조건에 따라 보충 지원을 제공해야함. - 스폰서는 제공된 후원을 위해 스폰서된 공연 예술 단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p>에너지 투자세액공제 (Tax credit for investments serving energy efficiency purpo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자산 투자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 공제가 적용되어 에너지 효율성 향상. - 세액 공제는 납세자의 재량에 따라 투자 위탁의 세무 연도 또는 다음 해 세무 연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총액은 자격의 30 % 중 낮은 세율 초과할 수 없음 - 비용 (중소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증가) 또는 HUF 1500 만 유로 상당의 비용. - 법에 따르면 의무 운영 기간은 5년 ※ 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 비용(간주 규정) - 유무형 자산의 비용은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의 달성과 직접적 관련. 단, 이러한 자산의 가치는 투자 총액에서 별도로 결정될 수 있음.



세금공제 종류	세금공제 내용
에너지 투자세액공제 (Tax credit for investments serving energy efficiency purpo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및 무형자산 비용의 일부는 세금 공제나 기타 주정부 지원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시행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효율적이지 못한 투자에 비해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효율성 목적을 충족 - 세액 공제는 세액 공제에서 개발세액 공제보다 70%까지 세금 인출로 적용.
라이브음악 서비스에 대한 세금공제 (Tax credit for live music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 공제 대상은 납세자 운영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라이브 음악 서비스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비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VAT를 제외한 대가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 - 납세자가 납세의무에서 공제한 인식된 원가/지출의 일부는 과세 표준에서 적격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즉, 법인세 과세표준에 추가됨.) - 납세자가 납세 의무에서 공제한 인식된 원가/지출 일부는 과세 표준에서 적격비용 인정되지 않음 - 라이브 음악 서비스에 대한 세액 공제는 과세연도 부여된 최소 보조금으로 인정.
조세로부터의 교부금 (Grants from tax pay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는 영화, 공연 예술 단체 또는 구경꾼 팀 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납부할 조세의 최대 50% 또는 현재 연도의 상한 / 납세 의무 금액의 최대 80%를 제공 가능함. - 납세자는 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후속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납부한 세금의 최대 80%). - 세액 공제율은 조세 진흥 또는 조세보조금으로 제공되는 교부금의 경우 7.5%이며 세금 공제의 경우 2.5%임. -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제공되는 보조금은 영화, 공연 예술 단체 및 구경꾼 팀 스포츠와 관련 세액 공제와 함께 적용될 수 없음.
성장을위한 세액 공제 (Tax Credit for Grow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당국에 성명서를 작성하여 성장과 성장을위한 세액 공제를 신청한 회사 - 회사는 개업일 이후 3년 이후일때 - 회사는 현재 과세연도 이전 과세 연도에 어떠한 변화, 합병 또는 분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 이전 과세 연도의 회사 세전 이익을 초과하는 현재 과세 연도의 회사 세전 이익 부분은 이전 과세 연도 납세자 세전 이익의 절대값의 5배이거나 초과하며, - 다음 2년간의 과세 연도의 세전 이익을 초과하는 현재 세무연도의 세전 이익 부분에 대한 세무/세금을 납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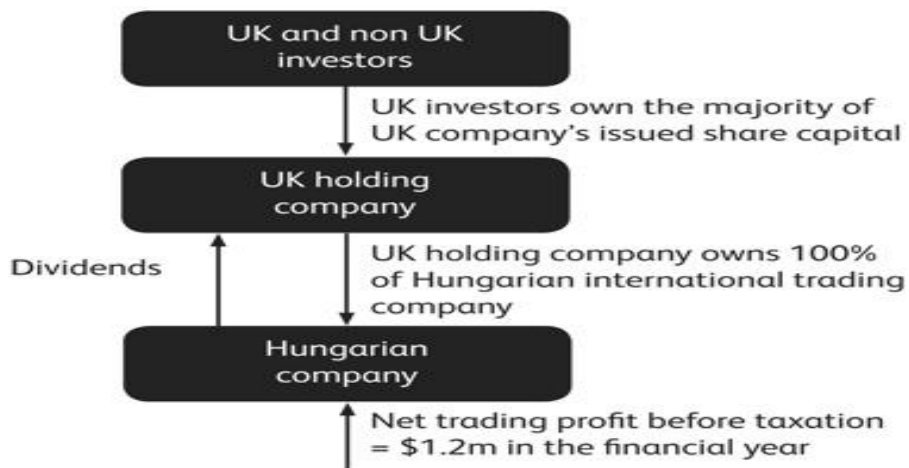


○ 세금 신고 및 납기(Tax filing and payment deadlines)

- 헝가리의 기업은 매년 과세연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 이전 과세 연도에 대한 회사의 납부할 세금이 500만 유로(HUF)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법인세를 납부함.
- 당해 연도 이전 연간 매출액이 1억 HUF에 달하면, 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 양식을 제출해야 함.
- 이 사전 법인세 납부는 해당 연도의 회사의 세금책임으로 계산된 금액을 보충하도록 설계됨.
- 이 세금 추가 납부기한은 당해 년도의 12월 20일임.

○ 원천 징수(Withholding tax)

- 헝가리에서는 회사에 배당금,이자 또는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원천 징수세가 없음.
- 그러나, 개인에게 지불하는 경우, 해당 이중 과세 조항에 따라 15%의 원천 세금이 부과됨.
- 예를 들어, 헝가리 비거주자가 영국지주회사를 통해 투자할 경우





- 배당금은 헝가리에서 영국 지주 회사(UK holding)에 지급되고, 원천징수세는 없음. (“Brexit”에 관계없음).
- 영국 지주 회사는 영국 거주자가 아닌 주주들에게 배당금(헝가리 소득에서 발생)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원천세가 부과됨

2) 개인에 대한 세금

□ 개인기업에 대한 과세(Taxation of private entrepreneurs)

○ 납세자(Taxpayers)

- 민간 기업가, 공증인, 집행관 및 변호사가 민간 기업가인 등록부에 포함됨.

○ 기업가의 개인 소득세 및 배당 기준

(The entrepreneur's personal income tax and dividend base)

- 납세 의무를 평가할 때 민간 기업인은 먼저 기업가의 개인소득세 과세액을 결정하고 지불해야함.
- 기업가의 개인 소득세는 개인 기업의 총 수익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비용을 공제하고 법으로 정한 조정 항목을 적용함.
- 사유 기업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연 손실을 고려하며 최소 소득 / 이익에 대한 세금을 결정해야함.
- 관련 법정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 사업자는 **일시납**을 선택할 수 있음.
- 선택 후, 기업가의 배당 기반과 배당금 부채는 세후 이익으로 결정.

○ 세율(Tax rate)

- 기업가의 개인 소득세 비율은 9%임.
- 기업가는 기업 배당금에 대해 추가로 세금 납부의무를 짐.(세율은 15% 적용.)



○ 세금 신고 및 납기

- 개인 기업가는 각 과세 연도에 부과되는 세금을 평가해야하며 부가가치세 대상인 경우 과세 연도 다음 연도의 2월 25일까지 신고하고 기타 모든 경우에는 과세 연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함.
- 이 세금 유형의 납부자는 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분기별세무 심사,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함.

□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납세자(Taxpayers)

-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져야함.
- 비거주 개인의 납세의무는 헝가리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헝가리에서 국제 협약 또는 상호성에 근거하여 과세되는 소득에 적용됨.

○ 거주자에 대한 규정

규정	의미
'Resident private individual' means :	‘주민 개인’이란 다음을 의미함.
any citizen of Hungary (with the exception of dual citizens without a residence or a place of stay in Hungary),	모든 헝가리 시민(헝가리에 거주지 없는 이중시민을 제외)
citizens of EEC member states if residing in Hungary for more than 183 days in the year,	EEC 회원국 국민은 헝가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83일 이상,
citizens of third countries with residence permits,	거주허가가 있는 제 3국의 시민,
persons with residence only in Hungary.	오직 헝가리에만 거주하는 사람

- 관련국이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경우 그 조약이 우선함.



○ 연결 세제(Consolidated tax base)

- 연결 세율은 독립적 활동 수입, 비독립적 활동 수입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함.
- 독립적 활동으로 인한 수입의 경우, 납세자는 자체 재량에 따라 항목별 비용을 계산하거나 10% 비용 비율을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음.

○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Income taxed separately)

-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에는 부동산 판매, 이자, 배당 및 장기투자로 인한 소득이 포함됨.
- 별도 과세되는 소득에는 현물 보조금과 이자보조금 수입도 포함.
- 이 두 가지 유형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개인이 아닌 제공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함.

○ 세율(tax rate)

- 세율은 과세 기준의 15%임.

○ 세금공제

- 세금 공제는 종합 합산 된 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할수 있음.

○ 가족세액공제(Family tax base credit)

- 외국인 거주자는 동일한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자신의 총 소득의 최소 75%가 헝가리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만 가족 세액 공제를 신청 가능함.
- 한 자녀는 HUF 66,670로 매달 가족액공제가 적용되며, 두 자녀는 HUF 116,670 세 명 이상은 HUF 220,000이 적용됨.



○ **초혼 세제혜택(First marriage tax benefit)**

- 결혼한 커플은 적어도 부부중 한명이 첫 번째 결혼인 경우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33,335 HUF만큼 월 단위로 총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음

○ **세금 신고 및 납기**

- 세금 신고는 매년 1회이고 제출 기한은 해당 연도 다음 5월 20일임.
- 사업 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경우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은 해당연도 다음 2월 25일임.
- 개인 소득이 자영업 이외의 활동, 특히 **고용** 또는 이와 유사한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개인의 고용주는 **매월 12일까지**매달 보류된 세금 공제에 대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 또한, 사용자는 당해 연도 이후의 **원천 징수 세액**의 총액을 담은 증서(원천징수영수증)를 **직원에게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사용자는 **매월 세무 당국에 전자 데이터 공개** 의무를 부담해야함.
- 민간 개인(소득을 수령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거나 납세자가 세수를원천 징수할 의무가 없는 경우), 개인 기업가 및 소규모 농업 생산자는 **분기별 다음달 12일까지** 세금을 선불 납부해야 하고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함.
- 헝가리의 외국인 노동자는 **매 분기 다음달 12일까지** 개인 소득세를 지불해야함.

□ **“EKHO”세금**

- Simplified contribution to public revenues

○ **공공 수익에 대한 단순한 기여의 의미**

- 예술적 표현의 자유, 특히 스포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된 직업의 개인은 Simplified contribution to public revenues를적용할 수 있음.



○ 납세자

- 이 세금은 언론인, 작가, 예술가, 감독, 배우, 음악가, 운동 선수, 트레이너, 서커스 공연자 및 법률에 명시된 직업의 사람과의 계약 관계로 지불함.
- EKHO 과세 제도는 연간 소득이 HUF 6천만 (선수와 강사의 경우 2억 5천만HUF) 미만인 자연인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고용 및 기타 법적 관계로 인한 수입을 가지며 이에 따라 공적 기여금과 관련된 부채의 이행 수익은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발생함.

○ 세율(Tax rate)

- EKHO 기여금은 수취인은 19.5%이고 개인은 15%임(연금 수령자 개인의 경우 11.1 %)임.
- EU 회원국의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개인의 경우, EKHO 비율은 9.5% 적용.
- 지급자는 EKHO를 납부할 의무는 없음.

○ 세금 신고 및 납기(Tax filing and payment deadlines)

- 개인은 해당 기한 내에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EKHO 소득을 신고해야함.

3) 부가가치세

○ 납세자(Taxpayers)

- 납세자는 위치, 목적 또는 결과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조직임. 헝가리에 등록되지 않은 납세자가 과세 대상 활동을 수행시 등록하고 사업자번호를 요청해야함.
- 등록은 최소 매출액에 달려 있지 않음. 즉, 소액 거래의 경우에도 헝가리에 사업자번호를 등록해야함.



- 그러나 외국 납세자는 헝가리에서 부가가치세 등록을 면제받음. (예를 들면) 헝가리에 수입한 후에 지역사회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주식 거래의 단순화의 경우에, 또한 VAT창고 내의 국내 공급과 VAT 창고로부터 지역 내 공급의 경우가 있음.
- 부가가치세에 등록되었으나 경제적 목적으로 헝가리에 거주하지않은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제공되는 권리를 행사하고 부채를 이행할 재무 대표를 임명 할 수 있음.
- 과세 책임이 있는 납세자가 경제적 목적으로 제3국에 정착하면재무에 관한 대표를 임명해야함.

○ **세율(Tax rate)**

과세대상	적용 세율
일반적인 경우	27%
- 옥수수, 밀가루, 전분 또는 우유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상업용 숙박 서비스 및 접근 제공 서비스 및 야외이벤트 등	18%
- 의학, 의료 기기, 서적, 전자 서적, 잡지, 돼지, 소, 양, 염소, 가금류, 생선, 새의 알, 우유 (모유 이외의 다른 우유, 초고온 및 ESL 우유), 지역 난방, 인터넷서비스 및 식당에서의 케이터링, 예술가의 라이브 음악 서비스	5%

○ **과세표준(Tax base)**

- 상품 / 서비스 공급자가 받은 돈의 조건으로 지급한 대가.
- 대가가 돈으로 지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무 기준은 주어진 제품 /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돈으로 결정됨.

○ **세금 납부, 세금 환급(Tax due, tax refund)**

-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발생한 공제금 사전 청구한 세금 총액만큼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음. (차액만큼 납부)



- 세금 납부액이 양수인 경우 납세자는 세금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금액을 납부해야함.
- 납부액이 음수일 경우, 납세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이 마이너스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 당국의 세금을 회수가능

단, 환급 가능한 세금의 절대 값이 초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여야
 HUF 1,000 thousand for monthly filers, 매월 1,000,000 HUF,
 HUF 250 thousand for quarterly filers, 분기별 250,000 HUF,
 HUF 50 thousand for annual filers 연간 50,000 HUF

- 헝가리에서는 VAT의 납부와 환급이 엄격히 규제됨.
 예를 들어, 고객이 송장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장 발행인이 VAT를 지불해야함.

○ 세금 환급(Tax refund)

- 납세자가 환급을 신고하면 세무 당국은 세금신고서 제출일부터 75일 이내에 또는 세금 납부 기일로부터 더 높은 날짜까지 세금 환급을 의무화함.
- 납세자가 제출일까지 세금 환급 권리 청구서 금액을 완납시 환급 세금이 1백만 유로 미만인 경우 세금 환급마감일
- 환급 세금이 1백만 HUF 이상이면 45 일임.

(주의사항)

- 세무 당국이 납세자를 “위험 등급”으로 분류한 경우 세금 환급마감일은 상기에도 불구하고 75일임. 세무 당국이 납세자를 “신뢰 등급”으로 분류한 경우 세금 환급 마감일은 30일이거나 “퇴할 수 있는 납세자”로 분류된 주식으로 제한되는 상장회사의 경우 20일임.



○ 주식 통화 단순화

- 헝가리는 주식 통화와 관련하여 단순화를 도입했음. 따라서 국내 납세자 자격이 없는 상품 공급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EU로부터 국내 구매자의 창고로 물품을 인도 할 경우 VAT제도에 등록할 필요가 없음.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지역사회 내 물품 공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부동산관련 부가세 규정

- 신규 건물 및 토지 매각은 과세 대상임
새로운 건물은 의도된 사용을 위한 첫 번째 인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용 허가가 2년이 넘지 않았거나 사용을 위한 인수의 승인이 2년이 넘지 않은 건물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모든 재산의 매각과 모든 부동산의 임대는 면제 대신에 다른 세금법을 선택할 수도 있음.
판매자가 판매세를 과세하고 그 재산을 다른 납세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역 세금징수 규정이 적용됨.
- 과세 대상이 아닌 개인이 2년 내에 4개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네 번째 거래시 그 사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 국내 (헝가리 내) 역 V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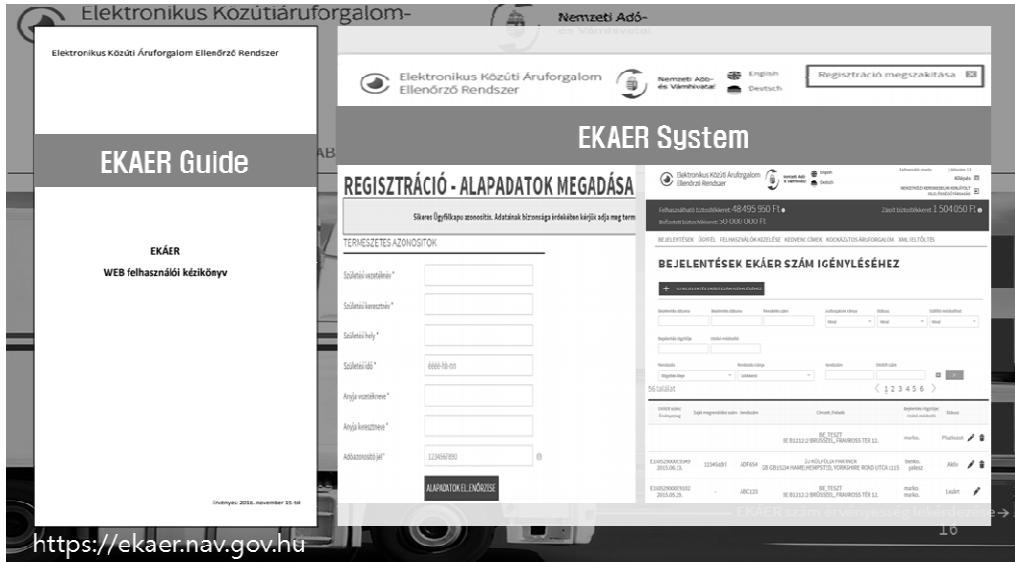
- 특정 거래 유형의 경우 및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나 국내 납세자 중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과세대상자가 됨.

※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됨.

- 건물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 건물의 확장, 철거 또는 개조를 겨냥한 건축 공사 및 기타 건설 작업,
- 재화 및 용역 공급을위한 인력 임대 또는 할당, 직원 배정, 학교 협회 서비스, 폐기물 판매
- 일반 규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부동산의 판매
- 담보 자산의 매각
- 곡물 및 특정 제품의 판매
- 특정 철강 제품 판매



○ 전자 무역 및 운송 통제 시스템 (“EKAER”)⁵⁾



- 헝가리는 세금 사기에 맞서 싸울 EKAER 시스템을 도입했음.
이 시스템의 목표는 **상품의 실제 경로를 추적하고** **상품의 구매 및 판매 중에 발생하는 공공 수익을 보장하는 것**임.
※ EKAER에 등록하고 보고해야 하는 납세자 : 유럽 연합으로부터 헝가리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차량, 유료화 대상인 차량을 통해 헝가리에서 EU로 물품을 판매 또는 수출 납세자 제1의 과세 대상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료 대상 차량을 통해 소비자 이외의 주체에게 물품을 판매함.
- 미등록시 위탁이 압류되어 **물품 가치의 40%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

○ 반복적인 (VIES) 보고서

- 납세자는 판매 된 제품 및 유럽 공동체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조달 된 제품 및 유럽 공동체에서 사용 된 서비스에 대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통합 진술서를 제출해야함.** 요약 보고서는 VAT가 반환하는 것과 동일한 빈도로 제출됨.

5) <https://ekaer.nav.gov.hu>



○ 반복 보고서

- 2018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납세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VAT 반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송장에 대한 세부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 청구 금액은 1백만 HUF에 달함.
- 2018년 7월 1일부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HUF 10만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인보이스에 대해서 **상세한**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 이 상세한 보고서 외에도 공제 권한을 행사하는 납세자는 동일납세자로부터 수락 된 송장 수를 기준으로 법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경우 **통합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납세자는 제한값과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반복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 할 수 있음.

○ 인보이스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온라인 공급

- 2018년 7월 1일 이후에 헝가리에 등록 된 모든 과세 대상자는부과되는 세액이 HUF 100,000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해 국내 과세 대상자에게 발행된 송장에 대해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야함.

○ 인보이스 발행 소프트웨어 통지

- 모든 납세자는 자신이 사용한 인보이스 소프트웨어를 세무 당국에 통보 해야함. 송장 소프트웨어에는 세무 당국("NAV")이 정한 형식으로 발행된 송장 관련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 "세무검사 데이터 공개"라는 독립적인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야함.



○ 세금 신고 및 납기

- 세금 납부액에 따라 납세자는 해당 기간 다음 달 20일까지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기준으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연간 신고시 다음연도 2월 25일까지 세금 납부함.
- 요약한 기록이나 요약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음.
- 헝가리 제도의 “예비” 및 최종 세금 환급은 없지만, 제출된 모든 세금 신고서는 최종 명세서로 간주됨.

○ 해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2010년 1월 1일 이후 다른 EU 회원국에 있는 과세대상 기업은 참석한 국가의 세무 당국에 신청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여 헝가리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있음.
- 유자격 제3국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에 설립된 납세자는 서류 양식 또는 전자형식으로 직접 헝가리 세무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헝가리에 등록된 사무소 또는 영구적 사이트가 있는 납세자는 다른 회원국의 유럽 공동체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국세 및 관세 행정부(NAV)에 신청해야함.
- NAV는 신청자가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비적으로통과 절차 역할을함. 사무실은 수령 후 15일 이내에 외국당국에 신청서를 전달해야함. 신청 접수 마감일은 해당 연도 다음 9월 30일임.

세무조사 및 불복제도

V

1. 세무조사(Tax audit) / 68
2. Self-Revision(불복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69
3. 구제수단(불복제도) / 71



1 - 세무조사(Tax audit)



□ 세무조사의 기간 및 유형

○ 세무조사기간

- 2018년 도입된 세무조사 관련 변경 사항에 따르면,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으면 조사가 시작됨.
- 통지서를 받으면 더 이상 자체 수정 등 수정신고 불가함.
- 세무 조사 기간은 **36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만약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없고 성실 납세자로 세무조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체납세의무자 및 VAT 납세자의 경우 **최대 세무조사기간**은 항상 365일임



- 세무조사는 조사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종료됨
- 조사보고서에는 납세자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검토된 세금 유형 및 기간에 대해서는 몇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더 이상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간주함
- 자주 조사하는 세금 유형 및 빈도
 - 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 그러나, 최근 이전가격 책정과, EKAER 보고의무(전자도로운송 화물시스템), 인보이스 발행 프로그램의 데이터 내보내기 등이 최근 더 많은 조사 대상이 됨
- 조사의 빈도수는 업종과 세무관리 능력에 영향 받음
 - 2017년에는 경제 공유, 폐기물 관리 및 온라인 전자 금전등록기 산업의 조사 빈도가 높음

2 Self-Revision (불복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Self-Revision (자체 수정)

Section 55 Tax

자체수정 효과

기업 스스로 과세표준 확정

수정신고서 제출시 세무조사 불가

연체로 감면 (50~75%)
= 자체수정이익

주의사항/서류

세무조사時 사전제출 요망

징수기간, 유형당 각 1회 가능

별도의 서식 작성 (18ONELLB)
: 헝가리 국세청



□ 자체 수정(Self-Revision)

○ 자체수정의 적용

- 과세 규칙에 관한 새로운 법의 54 항은 헝가리에서 적용되고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알려진 자기 개정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자체수정(Section 55)의 수행의사를 보고하는 것으로 확대됨

○ 자체 수정시 주의사항

- 자체 수정은 늦어도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전에 제출되어야함
- 세금 징수 기간과 세금 유형당 한 번만 가능함
- 제척기간 또는 세무조사와 가까운 기간에는 자체 수정 불가
- 이전의 세무신고시 합법적으로 이용한 방법이 수정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자기 수정은 할 수 없음

○ 자체 수정에 필요한 서류

- 세무 당국에 대한 자체 개정의 의도를 보고하기 위해 별도의 문서를 사용해야 함.
- 18ONELLB 문서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자체 개정본(세금 신고서의 경우)은 해당 기간의 세금보고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하며, 자체 수정을 “신고 유형”으로 표시해야함

○ 자체 수정은 세법의 중요한 법적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임. 이는회사가 그들 스스로 조세채무(납세의무) 또는 부정확하게 작성된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과세당국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있게함.

○ 모든 것이 자기 수정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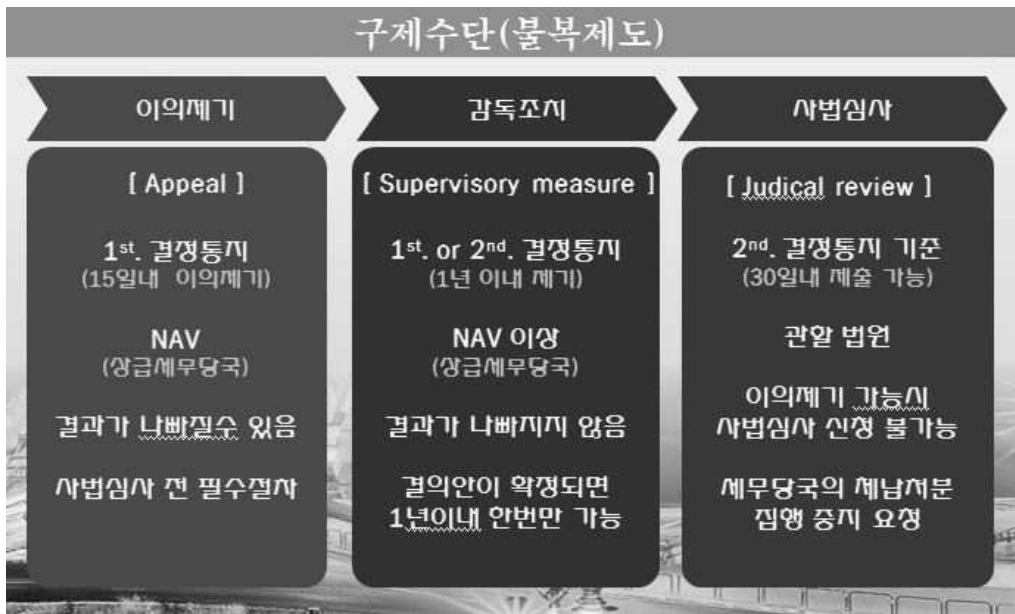
- 사전에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ex : 원가산정방법) 자체 수정은 허용될 수 없음



○ Self-Revision비용

- HUF의 자체수정이자는 원래 세금 신고서가 만료된 날부터 자기수정 세무신고서가 접수되는 날까지 계산되어야함.
- 자기수정이자는 중앙은행의 주요이자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의 50%에 해당하고 두 번 이상의 자체 개정의 경우 연체료 이자의 75%

3 - 구제수단(불복제도)



□ 법적 구제수단(불복제도)

-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세금문제를 처리하고, 법으로 규정된 절차(자기수정, 협력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헝가리 국세청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Appeal, Supervisory Action, Judicial reviews등의 법적 구제가 있음



○ 세무당국의 결정에 대한 서면의견 제출

-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결정서에 대해 15일 이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서면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음

□ 항소(Appeal)-이의제기

○ 항소 방법 및 기한

- 법적 절차의 기본 사항으로, 과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 결정이 이루어진 관할청에 제출되어야함.
- 그리고, 그 항소는 NAV 항소부서로 전달됨.
- 일반적으로 항소 기한은 1단계 결의통지일부터 15일 (소급된 세무 평가의 경우 30일)임
- 항소(Appeal)은 사법심사를 위한 전제조건임

○ 항소에는 NAV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와 범위가 포함되어야

- 장래의 항소절차에서 과세당국의 결정이 이루어졌을 당시에 과세당국의 요구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납세자가 알고있던 사실이나 증거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함
- 항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1단계 세무당국은 납세자에게 8일 이내에 명백한 내용의 항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해야함
- 만약 8일 이내 납세자가 왜 첫 번째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는지,또는 납세자가 그 결정에 대해 무효,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항소는 기각됨.

○ 항소의 결과로 결과가 더 나빠질 수 있음에 유의

- 항소 세무당국은 이의제기된 결정뿐만 아니라 결정되기 전의 진행된 절차를 모두 조사하므로, 항소기관의 검토결과가 납세자에게 더욱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항소비용은 HUF 5,000에서 HUF 500,000까지 발생함



□ 감독조치(Supervisory measure)

- 감독조치 신청은 상급 과세당국의 최종결정에 대해 할 수 있음
 - (NAV의 상고 관리 소의 경우 상급 기관은 NAV의 중앙 관리 소) (in the case of the NAV's Appellate Directorate, the superior body is the NAV's Central Directorate).
 - 감독조치는 과세당국의 직권으로도 가능
- 감독조치 신청 가능 기간
 - 원칙적으로 감독조치에 대한 기한이 없으며, 부과제척기간 중 언제라도 가능함
- 항소(Appeal)과의 가장 큰 차이점
 - 납세자가 손해를 보도록 결정할 수 없음
 - 납세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부적정한 방법 대신 새로운 소송절차가 시작되며, 모든 법적구제가 다시 가능해짐
- 이전 규정과 달리 감독 조치 신청은 결의안이 최종 확정 된 후 1년 이내에 한 번만 가능 함
 - 청구기한 이후 제출되는 경우 세무 당국은 감독 조치의 개시를 거절해야함
- 수수료는 항소와 동일함



□ 사법심사 (Judicial Review)

○ 사법심사

- 법원에 제출하는 법률 구제책으로 조세행정의 공정하고 합법적 운영을 보장
- 조치는 두 번째 결정기관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첫 번째 과세 당국에 제출되어야함

○ 사법심사의 효과 및 특성

- 이는 세무당국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법원절차는 길고 까다로움

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VI

1. 헝가리 이전가격 세제 개요-요약(2018. 02. 기준) / 76
2.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최근 국제 동향 / 79
3. 헝가리 이전가격세제 주요 개정 사항(이전가격 문서화) / 80
4. 이전가격세제 적용대상 / 83
5. 적용되는 규정 / 84
6. 정상가격 산출방법(Transfer Pricing Methods) / 85
7. 이전가격문서 제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 89
8. 이전가격분쟁해결과 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제도 / 92
9. 향후 대비 사항 및 시사점 / 94



1 헝가리 이전가격 세제 개요

- 요약 (2018. 02. 기준)⁶⁾

<Comparability Analysis (비교가능성 분석)>

내용	요약	참조
헝가리 규정은 TPG3장에 규정된 비교가능성분석을 따르는가?	헝가리의 규정은 비교가능성분석에 대해 상세하게 정의되지 않았지만 TPG3장에 대한 비교가능성 지침을 따름	
외국의 비교가능성에 비해 국내 비교가능성이 더 선호되는가?	외국비교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때만 사용되며 선호됨	
헝가리 법은 정상가격의 결정을 위해 통계적 방법이나 정상가격 범위를 허용하는가?	그렇다.	Act LXXXI of 1996 on Corporate Tax and Dividend Tax - Section 18, paragraph 9
비교가능조정이 국내법 규정에 요구되는가?	그렇다. 비교가능 조정은 선택 사항임. 납세자는 비교가능을 높이기 위해 TPG에 포함된 비교가능을 포함할 수 있음. 조정사항은 적절히 문서화되어야함	The Decree 32/2017 of the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on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Section 7 laying down provisions

<Intangible Property (무형자산)>

헝가리 규정	요약	참조
무형자산이 포함된 특수 관계자거래의 가격책정에 대한 지침이 구체적인가?	구체적이지 않으나 TPG에 담긴 지침을 활용할 수 있음.	
무형 자산 포함된 거래의 세금 혜택과 관련하여 이전 가격세제외의 다른 규정이 있는가?	BEPS5에 따라 로열티 공제, Nexus Methodology, Royalty Rules은 FHTP기준(유해조세경제포럼규정) 존재	Act LXXXI of 1996 on Corporate Tax and Dividend Tax Section 4, point 20 http : //net.jogtar.hu/j
무형자산 가치 측정이 어려운 것에 대한 특정 방법이나 이전가격 방법이 있는가?	없지만, TPG에 포함된 지침을 활용수 있음	Act LXXXI of 1996 on Corporate Tax and Dividend Tax - Section 31, paragraph 2

6) [http : //www.oecd.org/tax/transfer-pricing/transfer-pricing-country-profile-hungary.pdf](http://www.oecd.org/tax/transfer-pricing/transfer-pricing-country-profile-hungary.pdf)



<Cost Contribution Agreements (비용분담약정)>

형가리 규정	요약	참조
비용분담약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없지만 비용분담약정과 관련된 TPG의 규정이 연관됨	

<Intra-group Services (관계사 용역거래)>

형가리 규정	요약	참조
관계사 용역거래에 대한 지침이 구체적인가?	그렇지 않지만 비용분담약정과 관련된 TPG의 규정이 연관됨	
저부가가치용역에 대한 간편화된 접근법이 적용 가능한가?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해 3~7%의 가산률이 적용되며, 적용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진가격 관련 증빙의 보관 및 보고의무가 부여됨	The Decree 32/2017 of the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on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Section 5
이진가격세제의 관계사 용역 거래와 관련된 다른 규정이 있는가?	없음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이진가격세제 보고서)>

형가리 규정	요약	참조
납세자가 준비해야하는 이진가격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G의 제1장 부록 I에 일치하는 마스터 파일(통합기업보고서) - TPG의 부속서 II에서 일치하는 로컬파일(개별기업보고서) - 국가별 보고서 - TPG의 V장에 부속 문서 III를 준수함 	Master file, local file : Act LXXXI of 1996 on Corporate Tax and Dividend Tax - Section 18, paragraph 5 Decree 32/2017 of the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on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CbCR : Act XXXVII of 2013 on the rules of international administrative co-operation related to taxes and other payroll - Section V/D. Act XCI of 2017 on the multilateral exchange of information of CbCR between competent authorities
이진가격세제 보고서 제출에 관련되는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증빙서류)의 제출기간, - 이진가격문서와 지원문서 작성 시 사용될 언어 - 국가별보고서 제출기간 	Master file, local file : the Decree 32/2017 of the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on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CbCR : Act XXXVII of 2013 on the rules of international administrative co-operation related to taxes and other payroll(Annex 3 of the Act)



헝가리 규정	요약	참조
이전가격세제 보고서에 대한 벌금 규정	- 로컬파일과 마스터파일은 최대 200만 HUF까지 국가별 보고서는 최대 2,000만 HUF까지	
이전가격세제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 되는 경우가 있는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며, 아래 후술	

<Administrative Approaches to Avoiding and Resolving Disputes>
(이전가격 분쟁 해결과 방지를 위한 조세행정)

헝가리 규정	요약	참조
이전가격세제 분쟁 해결/ 예방을 위한 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 - Advanced Pricing Agreements Unilateral APAs Bitateral APAs Multilateral APAs - Mutual Agreement Procedures - 기타 : 중재위원회의 분쟁해결 	<p>Rulings : Act CL of 2017 on the Rules of Taxation - Section 164-173</p> <p>APAs : Act CL of 2017 on the Rules of Taxation, Section 174-183</p> <p>Details on the submission of APA requests - Decree No. 465/2017 on Advance Pricing Agreements</p> <p>Rules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s on</p> <p>MAP : EU Arbitration Convention (Act XXXVI of 2006)</p> <p>Double Tax Treaties</p> <p>Act CL of 2017 on the Rules of Taxation</p> <p>Act XXXVII of 2013 on the rules of international administrative co-operation related to taxes and other payroll, Section 42</p>

<Safe Harbours and Other Simplification Measures> (조사면제 및 간소화 조치)

헝가리 규정	요약
특정산업, 특정 납세자, 특정거래에 대한 조사면제 규정이 있는가?	있음. 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SME 유형의 납세자 내부용역 거래 중 저부가가치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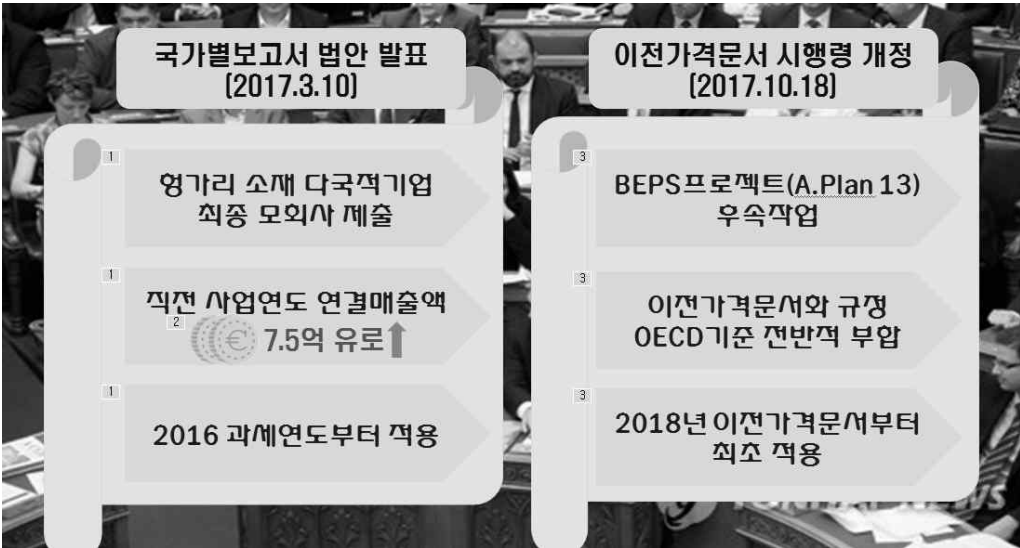


2 -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최근 국제 동향



- 지난 몇 년간, 관측된 과세표준 과소평가와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익분배, 직접과세의 결여 등으로 인해 G20이 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
- 이에 G20은 OECD에 2013년 7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실행 계획 초안을 작성을 요청함
- BEPS의 15가지 항목의 주요 목표
 - 가치 창출이 실제로 발생한 국가에서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대해과세 해야함
 -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그룹내 거래에 대한 가격결정, 즉 이전가격 결정을 제어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
 - BEPS action program(BEPS 조치프로그램)의 결과로 국제 이전 가격 통제 규정(OECD 이전가격 지침 :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가 수정됨
 - 그 결과 헝가리를 포함한 각국의 이전가격 제도 초안 작성에 대한 법률이 크게 변경됨

3 헝가리 이전가격세제 주요 개정 사항 (이전가격 문서화)



□ 배경

- 최근 다국적기업의 역외 투자가 증가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과세당국이 세원관리를 위한 정보확보에 어려움이 증가
- 현재 제도하에서 수집하는 세무신고서에는 자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 계열사들의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제한적이므로 다국적기업의 본국 또는 진출국가별 활동내역, 상업 수행범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부재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개별 과세당국의 세원관리에 한계가 있음
-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본국은 물론 국가별로 수행한 사업 내용을 공개 함으로써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 행정상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해짐



□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법안 발표

- 2017년 3월 10일 헝가리 정부가 발표한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헝가리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헝가리 과세당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과세기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 매출액이 7.5억유로를 초과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함
- 헝가리 내국법인은 과세기간 종료 후 12개월 내에 과세관청에 국가별 보고서 제출대상자인지 여부와 다국적기업 그룹 내 국가별보고서 제출 기업과 제출 국가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제출대상자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20백만 포린트(HUF)까지 가산세가 부과됨 -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는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제출대상자를 보고하지 않거나, 국가별보고서를 지연제출이나 미제출하거나, 국가별보고서 기재 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 헝가리는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과세당국 간 다자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서명하였으며, 다자협정 체결국과 관련 정보를 교환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정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7)

7)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헝가리-국가별보고서에-관한-법안-발표/524897



□ 이전가격문서 관련 시행령 개정

- 헝가리 국회는 이전가격문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0월 18일자로 승인, 공포함
 - **BEPS 프로젝트(Action Plan 13)**의 후속 작업으로서,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의 작성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존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에 이어 이번 시행령 도입에 따라 헝가리의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이 전반적으로 **OECD의 기준**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음
 - 동 시행령은 2018 사업연도에 대한 이전가격문서에 대해 최초 적용될 예정임
- 동 시행령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과 **로컬파일(개별기업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함
 - 마스터파일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전반적인 조직구조, 사업활동의내용 및 이전 가격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로컬파일은 사업, 헝가리 납세자의 현황 및 사업활동 내용, 관계사간 거래 내역, 이전가격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함
 - 이들 보고서 중 어느 한 종류만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는 없으며, 해당 문서를 반드시 헝가리어로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자료수집 및 정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⁸⁾

8)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헝가리-이전가격문서-관련-시행령-개정/525196



4 - 이전가격세제 적용대상

- 이전가격세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
(형가리 법인 소득세 법 (CIT)에 정의되어 있음)
- 이전가격과세제도 의의
 -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는 제도
- 특수관계자 간주 기준 (회사가 다음 기준 충족시)
 - 기업이 다른 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 동일인이 과반수의 지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둘 다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비거주 기업과 국내의 고정사업장, 국내 고정사업장과 비거주자의 특수관계 있는 기업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특수관계있는 기업의 해외지점
 - 동일한 경영진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업
- CIT 법은 기업이 이전 가격 조정을 적용해야하는 경우를 정의함
- CIT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의 사용 가격이 비교 가능한 조건 내에서 독립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라면 이전가격조정이 요구됨
 - 세전이익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전 가격 조정을 통해 세금 수정
 - *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 된 대가로 인해 과세 전의 이익이 더 높은 경우, 과세표준은 이전 가격 조정에 의해 감소되어야함
 - * 특수관계인간 합의된 대가로 과세전이익이 감소하면, 과세표준은 이전 가격 조정에 의해 증가 되어야함

- 과세표준의 감소는 양 당사자가 양측이 서명한 선언서를 소지하고 있고, 정상가격과 사용된 가격의 차이를 선언하고 상대방이 헝가리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을 해외에 부과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 특수관계자가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로 간주되는 경우 감소를 검증할 수 없음
- 이전 가격 조정은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증가 및 감소와 무관하게 적용됨

5 적용되는 규정

- 이전가격세제는 헝가리에서 다른 법률,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따라 결정
- CIT(Corporate Income Tax)에 관한 1996년 Act LXXXI는 계열사에 대한 설명과 정상가격결정 원칙과 관련된 과세표준 조정 항목을 결정
- 사전가격협약(APA) 규정은 2017년 CL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전가격 문서가 누락되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제제와 함께 포함
- APA 요청서 제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재무부 Decree No. 48/2017 참조
- 부가가치세에 대한 2017 년 법 CXXVII는 관련 당사자가 적용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이 과세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규정
- 이전가격보고서에 대한 요구 사항의 세부 사항은 Decree No. 22/2009 및 TP 문서 요구 사항에 관한 국가경제부령 제 32 / 2017호에 포함
- 또한 이중과세조약 (Double Tax Treaties)에는 이전 가격 보고서를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관련 주체의 과세 장소를 정의하기 때문임



6 - 정상가격 산출방법 (Transfer Pricing Methods)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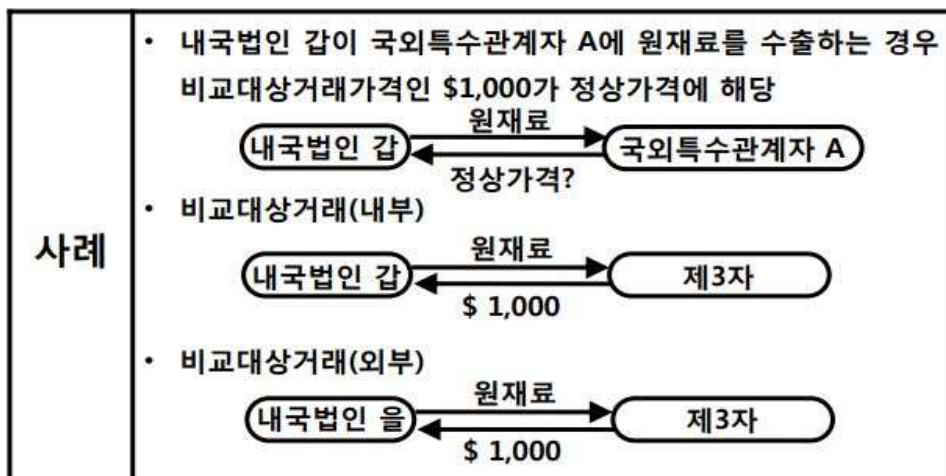
□ 헝가리 이전가격세제에 정의된 정상가격 산출 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법)
- 재판매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
-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 CPM)
-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PS)
-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 다른 방법

□ 산출 방법 예시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9) 출처 : 국세공무원 국제조세 교재 중 정상가격산출 방법

○ 재판매가격방법

-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자가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 이윤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구매자의 통상이윤	• 특수관계가 없는 자 판매금액 × 판매기준통상이익률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 중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대상거래에 의한 거주자의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15%로 가정하는 경우 ※ 정상가격 = 850 (1,000 - 150)

○ 원가가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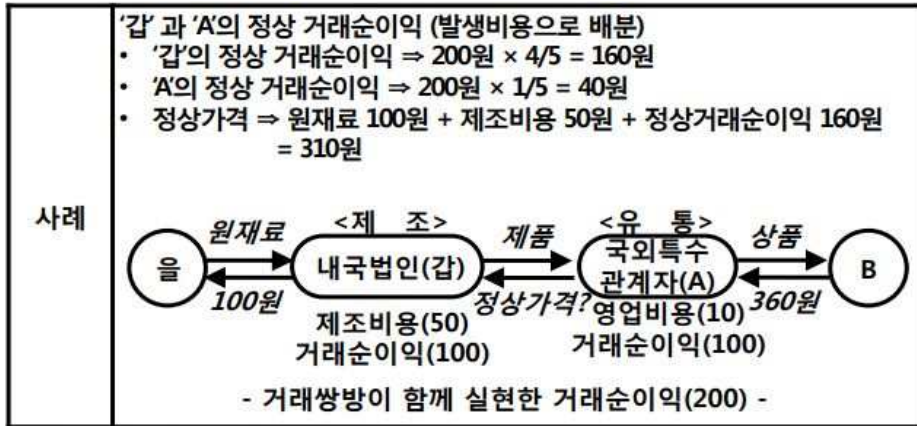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원가기준 통상이익률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대상거래에 의한 거주자의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50%로 가정하는 경우 ※ 정상가격 = 1,500 (1,000 + 500)



○ (잔여)이익분할방법

- 국외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서 쌍방이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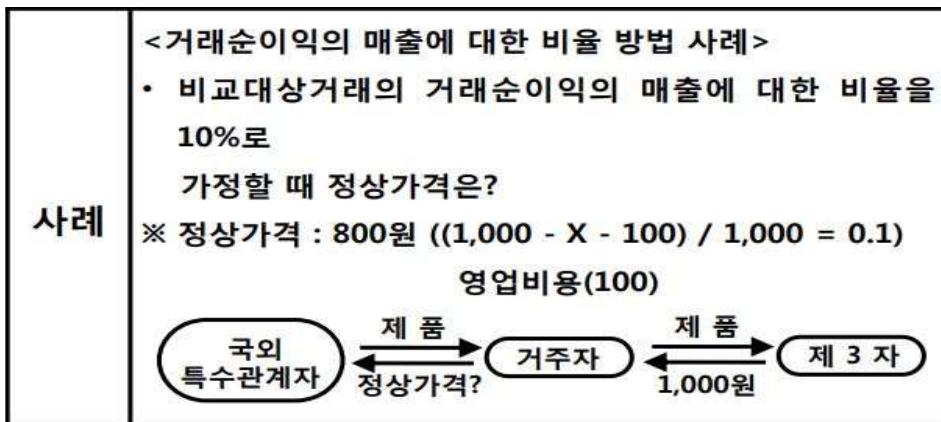


* 공헌도 기능분석 예

1. 제품개발 2. 제조 3.물류 4. 마케팅 5. 판매 6. 관리 등 수행기능으로 공헌도 부여

○ 거래순이익률법

-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 중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그 밖에 관련된 내용

- 헝가리는 적용 방법의 우선 순위를 두지 않으며 위의 방법들은 동일한 순위를 가짐
- 다른 방법은 나열된 5가지 방법들로 정상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함
- 2015년 1월 1일에 법인소득세법의 18 항은 특정(합리적인)경우 정상 가격 범위를 결정할 때 사분위 범위를 적용 할 수 있게 통계적 측정을 허용 하도록 개정됨
- 새 규정은 모든 경우에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납세자에게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결정 권리를 위임함
- 그러나 사분위 범위를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없을 때를 지원하는 것보다 안전하므로 납세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99%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이 법령은 납세자가 계약 기간 중, 계약 변경시 및 이행 시점에 사용 가능한 모든 사실 및 조건을 고려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정상가격결정과 관련됨
- 그러나 이 법안의 비용-편익 원칙은 납세자가 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불균형한 높은 비용을 부담 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정의됨
- 이 원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왜냐하면 납세자들이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실 또는 상황이 상세히 문서화 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납세자가 위에서 언급한 원칙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그러나 위의 내용은 납세자가 이전가격 보고서를 유지하는 의무를 면제 하지 않음



7 - 이전가격문서 제출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 다국적기업에게 이전가격세제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함

- TPG의 제1장 부록 I에 일치하는 마스터 파일(통합기업보고서)
- TPG의 부속서 II에서 일치하는 로컬 파일(개별기업보고서)
- 국가별 보고서-TPG의 V장에 부속 문서 III를 준수함

□ 이전가격관련 문서 종류 및 보고 의무

○ 로컬파일(개별기업보고서)

- 대상자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 내 개별법인
- 대상자료 : 사업, 형가리 납세자의 현황 및 사업활동 내용, 관계사간 거래 내역, 이전가격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함



○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

- 대상자 : 개별기업 보고서 제출기업의 최종모회사
- 대상자료 : 다국적기업그룹의 전반적인 조직구조, 사업활동의 내용 및 이전 가격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국가별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 CbCR)**

- 대상자 : 원칙적으로 다국적 기업집단의 최종모회사
- 제출자료 : 국가별 소득, 세금 및 사업활동표, 국가별 계열기업 명단 및 사업활동표

□ **이전가격세제 자료제출과 관련된 요구사항**

- 증빙 서류는 세무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요청 시 제출해야함
- 로컬 파일 작성 마감일은 법인세 신고 일자(5월 31일)
- 마스터 파일을 준비하기 위한 마감일은 최종 모회사에 맞추어 조정하지만,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 이후 늦어도 12개월임
- 이전 가격 보고서와 지원 문서는 헝가리어가 아닌 언어로 편집할 수 있지만 납세자는 세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영어, 불어, 독일어 등의 언어로 준비할 수 있음.
- 국가별 보고서 (CbCR)
 - 헝가리 내국법인은 과세기간 종료 후 12개월 내에 과세관청에 국가별 보고서 제출대상자인지 여부와 다국적기업 그룹 내 국가별보고서 제출 기업과 제출 국가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이전가격세제 자료제출과 관련된 벌금

- 제출대상자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 등으로
 - 로컬 파일, 마스터 파일 : 최대 200만 HUF, 반복 위반 시 최대 400만 HUF
 - 국가별보고서(CbCR) : 2,000만 HUF까지 가산세 부과 가능

□ 이전가격문서 의무 면제사항

○ 마스터파일 / 로컬 파일 :

- 거래가 개인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때
- 소기업으로 간주될 때
- 특정 거래에 대한 중소 기업일때
-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국가와 거래시
- 정상가격이 세무당국에 의한 APA에 의해 결정될 때
- 현금 이체
- 과세 연도 내에 거래 금액이 5천만 HUF 미달시
- 법에 의해 명시된 주식 거래 또는 고정 가격에 대한 거래

○ 국가별 보고서

- 금융연도가 보고되기 전 회계연도에 **통합 매출액이 7억 5천만 HUF** 미만인 경우, 다국적 기업은 국가별 보고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음

8 이진가격분쟁해결과 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제도



□ Advanced Pricing Agreements : 사전가격협정 (APA)

○ 의의

- APAs (Advance Pricing Agreements)는 향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2007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음

○ 세무 당국은 결의안에 심사 결과를 포함함

- 결의안의 기간은 3년에서 5년의 고정 기간임
- 그러나 요청에 따라 추가 3년이 연장될 수 있음

○ APA의 종류 및 특징

- Unilateral APAs : 거래국 일방과 체결, 제한된 확실성(상대국가에서 이전 가격에 대해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음)



- Bilateral APAs : 납세자와 양 국가간 체결
- Multilateral APAs : 납세자와 3개 이상의 관련 국가간 체결

○ 전제조건

- 경제환경, 시장상황, 최종가격, 규모 등 요건의 변화가 없을 것

□ Mutual Agreement Procedures : 상호합의절차(MAP)

○ 의의

- 조세조약의 규정에 근거한 이중과세의 배제 및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2국간 혹은 다국간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행해지는 외교교섭 행해지며 이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는 제도

○ OECD 모델조세조약 25조에 규정

-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관할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당해 조치를 처음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

<MAP 와 APA 비교>

분류	MAP	APA
협상 시기	과세 이후	과세 이전
불확실성	높음	낮음
Penalties	높음	낮음
입증 부담 강도	높음	낮음
세무조사 및 소송 장기화	많음	짧음
법적 공방	높음	낮음
절차적 접근	많음	적음
비용	많음	적음
납세자 연루	많음	적음



- 그 외 OECD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방법이 있으나 과정과 결과가 불확실하고, 납세자 참여가 제한적인 문제가 있어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9 - 향후 대비 사항 및 시사점



- 문서화 보고대상 기업 기준 변경에 대비 (OECD BEPS Action 13 관련)
 - 현재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 매출액이 7.5억유로를 초과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 헝가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OECD 지침이 2020년에 재검토될 예정이므로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 APA의 활용도 증가 예상
 - 최근 29개 국가들이 APA를 도입하고 있고 많은 모회사가 분쟁해결도구로 APA를 사용하고 있으며, 헝가리에서의 향후 이전가격 문제 해결에 있어 APA가 중요한 분쟁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됨

사회적 이슈로 본 헝가리 세금

VII

- 1. 기본소득제도와 로봇세 / 96
- 2. 브렉시트가 헝가리 세금에 미치는 영향 / 99
- 3. 광고세 / 102
- 4.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인터넷세 / 104
- 5. 난민유입에 따른 헝가리 특별세 부과 / 107





1 기본소득제도와 로봇세



스위스가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5일 시행했으나 부결됐다. 스위스 국영방송 SRF는 이날 76.7%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가 국민투표에 부친 기본소득 도입 방안은 매달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의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 2016년 6월 6일, 한국경제신문

□ 기본소득제의 의의

-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적든, 일을 하든 안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
 -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 하자는 취지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차이가 있음

□ 헝가리의 기본소득제도

- '15년 2월 헝가리 녹색당(Green-Left Party)에 의해 모든 헝가리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제안
 - 이 제안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월80유로, 성인 160유로, 젊은엄마 240유로를 받도록 제안하였음
 -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이 당은 비용의 90 %는 기존 사회 복지를 재정비 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세금으로 충당 할 수있음이고 하였으나 집권당 등 다른 세력의 정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함



- '17년 3월 헝가리총리 빅토로오반은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
 - 그것은 공산주의 산물로 헝가리에서 기본소득제도가 실행된다면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고, 헝가리 정부는 성과와 노력없이 돈을 분배할 수 있는 수단이나 능력이 없다고 연설함
 - '18년 4월 연임에 성공한 빅토로오반은 친기업성향의 정책을 펼칠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이 정권아래에서 기본소득제도는 실시될수 없을것으로 판단됨

□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제도

국내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거론했다. 여야 국회 연구모임인 ‘어젠다 2050’도 첫 의제로 기본소득제를 선택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기본소득제도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소득이 분리 되는 세대에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2016년 08월호

- 논의배경
 - 청년층의 실업률이 고공행진 지속되는 가운데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 인류가 개발한 AI나 로봇 같은 첨단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의 종말’을 초래하면 구글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과 이를 소유한 극소수만이 엄청난 부를 쌓을 것이고,
 - 사회 양극화가 극에 달한다면 정부가 기본소득을 줘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임



○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기 위한 접근방법

- 기본소득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문제와 도덕적해이를 해결해야 함
- 사실 스위스나 핀란드 등은 실업률을 낮추고 사회복지 비용도 줄이는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핀란드 정부는 실업률이 높은 이유를 임시직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커서 국민들이 일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 재원조달은 로봇세로

- 기본소득제가 재정적 한계를 부딪힐 수 있음은 지적에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 로봇에게 거둔 세금을 재원으로 노동자의 전직 교육과 소득 보전에 활용할 수 있음은 이유임.
- 글로벌 기업의 수장들은 로봇세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인 빌게이츠는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는 자동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로봇세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음.

□ 결론 및 시사점

○ 헝가리에서는 일찌감치 기본소득제도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못하였고 특히, 친기업 성향의 빅토르오반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당분간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야 국회 연구모임인 ‘어젠다 2050’에서 의미 있는 논쟁을 시작하였음
- 시간이 지날수록 인류가 개발한 AI나 로봇 같은 첨단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의 종말’은 다가올것이고



- 그렇게 되면 구글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과 이를 소유한 극소수만이 엄청난 부를 쌓을 것이고,
- 이로 인해 사회 양극화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데 더 늦기전에 헝가리 정부도 의미있는 논쟁을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됨
- 물론, 재원조달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은 로봇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도 여러 대안 중에 고려해볼만 함

2 - 브렉시트가 헝가리 세금에 미치는 영향

□ 브렉시트 지금까지의 협상경과

- 영국이 2017년 3월 29일에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양측은 TEU(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에 따른 탈퇴협상에 돌입하였음.
 - 메이(May) 영국 총리는 투스크(Tusk)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상임의장에게 보낸 공식서한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영국의 EU 탈퇴 의사를 통보¹⁰⁾
-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예상과 달리 탈퇴가 52%를 득표하였으며,¹¹⁾ 국민투표 직후 취임한 메이 총리는 영국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였음.¹²⁾

10) European Council(2017), “Statement by the European Council (Art. 50) on the UK notification,” *Press release*. (March 29)

11) The Electoral Commission(2016), “Official result of the EU Referendum is declared by Electoral Commission in Manchester,” *News release*. (June 24)

12) European Union(Notification of Withdrawal) Act 2017, c. 8,
[http : //www.legislation.gov.uk/ukpga/2017/9/contents/enacted/data.htm](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7/9/contents/enacted/data.htm)(검색일 : 2018. 6. 16).

- 회원국의 탈퇴 절차를 규정한 TEU 제50조에 따라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는 탈퇴 의사 통보 후 2년이 지난 2019년 3월 29일에 소멸할 예정 (글상자 1 참고)¹³⁾
- 단 영국을 포함한 EU 정상회의의 만장일치가 있을 경우 탈퇴 시점 연기 가능
- 협상 최종결과에 대한 양측의 비준절차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가을 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함.¹⁴⁾

<글상자 0. TEU 제50조 전문>

제1항. 모든 회원국은 자국 내 헌법적 요구에 따라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

제2항. 탈퇴하기로 결정한 회원국은 EU 정상회의에 탈퇴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EU는 해당 회원국의 탈퇴 및 탈퇴 이후 EU와의 관계에 대한 협상을 EU 정상회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 탈퇴협정을 도출한다. 동 협상은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진행된다. 탈퇴협정에 대한 EU 측 승인은 EU 정상회의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동의를 얻은 후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로 내린다.

제3항. TEU와 TFEU는 해당 회원국이 동의하고 EU 정상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제2항의 탈퇴 의사 통보일로부터 2년 내에 탈퇴협정이 발효될 경우에는 탈퇴협정 발효일부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 의사 통보 2년 경과 시점부터 해당 회원국에 적용되지 않음.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을 위하여 EU 정상회의 및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해당 회원국 대표는 자국의 EU 탈퇴와 관련된 EU 정상회의 및 EU 이사회의 논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가중다수결은 TFEU 제238조 제3항 b의 정의를 따른다.

제5항. 탈퇴한 회원국이 재가입을 요청할 경우, 동 요청에 대한 처리는 제49조의 절차를 따른다.

자료 : Article 50 TEU, [http : //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 : 12012M/TXT](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12012M/TXT)(검색일 : 2017. 1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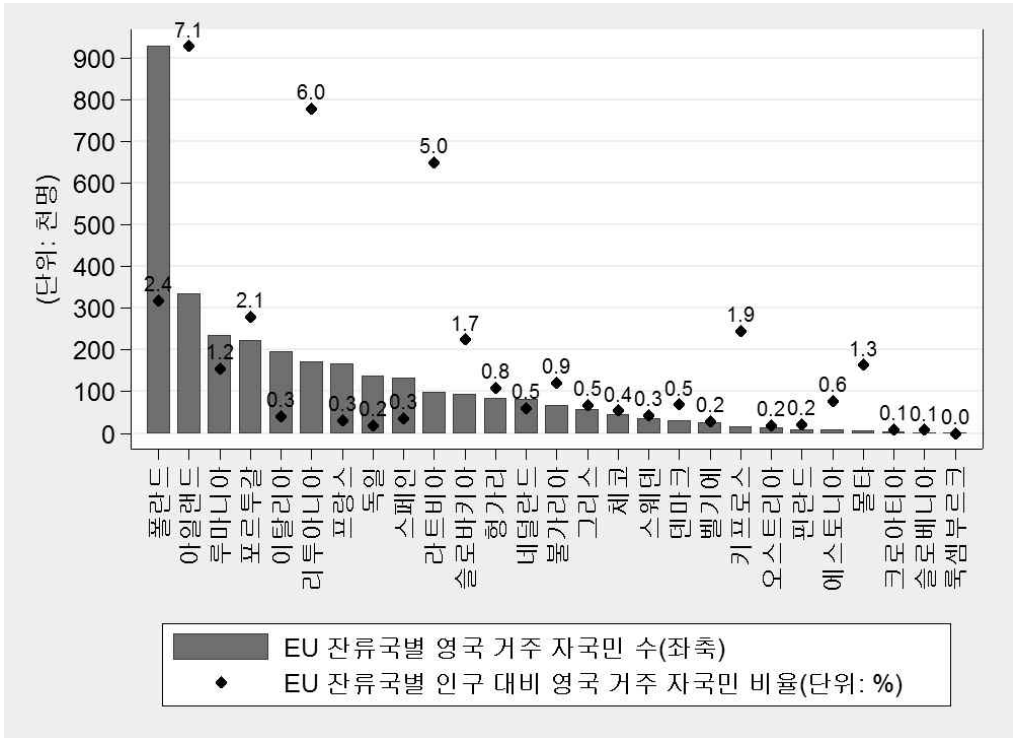
13) European Council(2017), *GUIDELINES FOLLOWING THE UNITED KINGDOM'S NOTIFICATION UNDER ARTICLE 50 TEU*, p. 5.

14) European Commission(2017), "Article 50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Q&A," *Press release*. (March 29)



□ 세금관련 주요이슈

- 브렉시트 이후 영국 거주 헝가리국민의 영국 내 세금문제 및 헝가리 거주 영국국민의 헝가리내 세금문제가 있음



주 : 2016년 1월 1일 기준.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7), Eurostat DB(검색일 : 2018. 1. 2).

<EU 잔류국별 영국 거주 자국민 현황>

- 2016년 기준 약 10만여명의 헝가리국민이 영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반대의 경우 8백여명의 영국인이 헝가리에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됨

○ 간접세 영향(Indirect taxes)

- 그동안 EU내에서 관세 부과없이 물품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으나, 영국과 EU간 상품 수출입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됨



○ 직접세 영향(direct taxes)

- VAT와는 달리 법인세, 소득세 등은 헝가리를 비롯한 EU국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지난 몇 년동안 영국의 세법이 EU조약에 명시된 4가지 자유를 토대로 재설계된 결과임(freedom of establishment, free movement of capital, free movement of workers and free movement of goods)

□ 결론 및 시사점

- 의심 할 여지없이 영국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비즈니스에 좋은 소식은 아님
- 그러나 Brexit의 모든 영향은 EU와의 재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완화될 수 있음
- 다국적기업에게 세금영향이 무엇인지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고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님

3

광고세



□ 광고세의 의의, 배경 및 헝가리내 반응

○ 광고세의 의의

- 광고 세금은 특정 광고 서비스에 적용되는 세금.
- 헝가리에 게시된 광고 또는 광고가 게재되지 않지만 주로 헝가리 웹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광고와 관련하여 적용됨.



- 우리나라는 생소하지만, 헝가리뿐 아니라 이미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등에서 부가되는 세금임.

○ **세제의 발효 배경**

- 2014.6월 헝가리의 청년민주동맹(Fidesz) 예비의원인 시몬라슬로(L. Simon László)는 **광고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 법안** 발의
(당시 광고수입 200억 포린트 초과시 한계세율 40%)
- 그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업체와 방송국, 신문사들 등 막대한 광고 수입을 얻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밝히며, 광고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 2014.7.18 **광고세 법안 발효됨**

○ **헝가리 내 반응**

- 헝가리 내의 광고인 협회(MRSZ) 부회장 등 은 도입된 광고세가 경쟁을 왜곡하고, 개발 및 혁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광고서비스 질과 양적인 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힘
- 또한 그는 광고세로 인해 헝가리 광고시장 내 큰손들의 연간 수익이 15% 이상 하락했다고 밝힘

○ **이슈가 되는 이유?**

- 2015년 유럽내 거대 미디어기업인 Bertelsmann(방송국 RTL 소유회사)의 광고세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동년 10월 16일 광고세의 과도한 세율로 인하여 유럽위원회 소송 제기 (누진세 적용할 때 세금을 내는 미디어 기업이 RTL 밖에 없어 사실상 RTL에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음)
- 유럽연합 집행기관(EC)의 광고세 적합성에 대한 조사 착수
- 이에 따라 헝가리 정부 또한 광고세 개정 착수

○ 광고세 이슈에 대한 시사점

- 이는 미디어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헝가리 정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측근 인사들이 헝가리 미디어를 인수하며 **친정부 언론**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을 받았음**.
(개정당시 누진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을 내는 미디어 기업이 RTL 밖에 없어 사실상 RTL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
- 또한 헝가리 정부는 광고세 적합성에 대한 EC의 조사에 따라, 세율을 낮추고, 다시 시행하였으나 이것 또한 EU의 비판에 부딪힘. 이유는 누진세율을 그대로 두고, 세율만 낮춘 개정 법은 수익을 내지 못한 기업에 지나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고, 이는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
-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의도를 알수 있으며, 정부의정책과 관련하여 국내 미디어 기업 진출시 참고 가능할 것임.

4 -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인터넷세

□ 인터넷세의 배경 및 이슈

○ 인터넷세의 도입 배경

- 헝가리, 재정적자를 세수 확충으로 상쇄하기 위해 특정산업(통신, 금융, 에너지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세를 도입함

○ 인터넷세의 도입 과정

- 미하이 버르거(Mihaly Varga) 헝가리 경제부 장관은 2014년 10월 21일 (화) 2015년 시행 예산안을 헝가리 의회에 제출함



- 또한 통신세(telecom tax)의 범위를 인터넷세(internet tax)까지 확장해 4.5%에서 6%의 세금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들에 부과한다고 밝혔음.

□ 인터넷세의 주요 내용

-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전자 커뮤니케이션 법(Electronic Communication Act)’에 따라 사용자(user)나 또는 구독자(subscriber)가 사용해 발생한 데이터 트래픽(data traffic)의 기가바이트(GB)량으로 측정함.
 - 인터넷세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지불하며, 1기가 바이트(GB) 당 150포린트(약 650원) 부과함.
- 인터넷세의 상한선 규정
 - 고객(예를 들면, 월 4.67GB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월 700 포린트가 인터넷 세의 상한선이며, 기업(월 33.3GB를 사용하는 사람)은 월 5000 포린트가 인터넷세 상한선임.
-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 트래픽(data traffic)-전화, 메시지 발송, 이 발생한 다음 달의 스무 번째 날까지 세금을 계산해 납부해야 함.

□ 당시 헝가리 국내 반응

- 이미 헝가리의 통신사는 2010년부터 특별세 명목으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인터넷세는 또다른 부담임.
 - 2012년부터는 통신세(telecom tax)가 부과되었고, 또한 2013년에는 유틸리티 세(Utility tax)가 부과됐음. 당시 머저르 텔레콤(MagyarTelekom)의 경우 2010~2013년간 연간 250억 포린트에서 330억 포린트(약 1080억 원에서 1425억 원)를 세금으로 냈음.

○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

- 인터넷 세에 반대해 2014.10.26 저녁 약 4만 명의 시민이 언드라쉬 거리 (Andrássy út)에서 반대 집회를 가졌고,
- 머저를 텔레콤(Magyar Telekom)은 헝가리 정부의 인터넷세가 서비스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유해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 기고함.
-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청년사회동맹(Fidesz)당은 사용자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할 것이며 이를 월 700포린트로 한도를 정하겠다고 수정했음. 하지만 Fidesz당은 지난 26일과 같은 대규모 집회에 굴하지 않고 법안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이후 2014.10.28 첫 시위의 다섯 배 늘어난 10만 명이 요세프 나도르 광장에 모였으며 데브레첸(Debrecen), 니레지하자(Nagyhalasz), 미슈콜츠(Miskolc), 세계드(Szeged), 죄르(Győr) 등 헝가리 지방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음.

<2014.10.28 당시 요페스 나도르 광장 시위모습>



자료원 : 헝가리 경제 일간지 portfolio



□ 당시 국외 반응

- 네일리 크로즈(Neelie Kroes) 유럽위원회(EC) 디지털담당 집행위원은 현재 헝가리의 인터넷 사용량은 유럽연합국가들의 평균 인터넷 사용량에 뒤져진 상황인데 여기에 인터넷 세를 도입해 시민의 인터넷 접근을 막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인터넷세 도입에 반대 지지의사를 밝힘.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세를 지불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결국 요금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인터넷 세를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의 최신 사례라고 꼬집음.

□ 헝가리 인터넷세를 통한 국내 시사점

- 헝가리 주요 경제이슈 중 하나는 만성적 재정적자를 회복하는 것으로, 세계 최초로 인터넷세를 도입한 헝가리 정부는 재정적자를 세수 확충으로 상쇄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 통화세, 광고세 등과 같이 시대 역행적인 세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내기업 진출시 세금 부담 비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5 — 난민유입에 따른 헝가리 특별세 부과 —



□ 난민유입과 관련한 헝가리 정치 상황

- 반난민 정책을 내세워 헝가리를 민주주의에서 준독재 국가로 퇴행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온 빅토르 오르반 총리(54)가 2018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3연임 · 4선을 확정지음.

- 8년간의 야당 생활을 거쳐 2010년·2014년 재집권에 성공한 오르반은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이후 점점 더 거친 반난민 수사를 쏟아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분산 수용 정책에 맞서 세르비아와의 국경에 철조망을 세워 난민 유입을 막았고, 유럽연합의 난민 수용 정책 개혁 논의에도 참가하지 않음.

<헝가리 여당의 선거 캠페인 광고물>



헝가리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조지 소로스와 야당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헝가리어로 '그들은 교착상태를 깨뜨린다'는 말이 쓰여있음.

[자료출처 : DPA=연합뉴스]

□ 이에 따른 헝가리 정책

○ 난민을 돕는 행위에 대해 범죄 규정

- 불법 이민자를 지원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최대 1년의 징역형.
-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헝가리 의회는 '18년 6월 20일 불법 난민의 체류를 돕는 이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반(反)난민법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을 통과시킴. '외국인은 헝가리에 정착할 수 없다'는 조항도 새로 헌법에 포함시킴.



- 유럽연합(EU)의 난민 정책인 즉, 난민쿼터제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헝가리정부의 공식 선언임

○ 난민을 원조하는 단체에 대한 세금추징법안 발의

- 유럽연합(EU) 국가 중 난민에 가장 적대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헝가리가 이번엔 난민을 돕는 단체를 겨냥해 세금 추징법안 발의
- 2018.6.19 DPA통신 등에 따르면 헝가리 경제부는 성명에서 “이민자를 조직적으로 돕는 행위에 맞서 세금 정책을 사용하려고 한다”며 “이민 특별세는 국가 예산에 추가 부담이 되는 불법이민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함.

○ 25%의 ‘이민특별세’ 부과하는 방안 추진

- 헝가리 정부는 외국의 지원을 받아 난민을 돕는 비정부기구 (NGO)에 25%의 ‘이민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EU 내에서 비판이 일자 구체적인 세율을 삭제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국내 난민 상황 비교 및 시사점

○ 난민문제 대응에 대해 엇갈리는 유럽의 상황

- 헝가리가 논란이 됐던 특별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데는 난민문제 대응을 놓고 분열상을 보이는 유럽의 정치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독일은 연립 정부가 난민 정책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고 이탈리아 또한 극우 포퓰리즘 신정부가 난민구조선의 입항을 불허해 국제사회에 논란 촉발

○ **친기업적이고, 자국민 보호하는 헝가리 정부의 정책 방향**

- 친기업 정책을 통해 외국기업 투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난민 유입을 방지하여 자국민을 보호하려는(정치적 목적일수 있으나) 헝가리정부의 방향성을 알 수 있으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현 오르반 총리 체제의 성향을 알 수 있음.

○ **현재 제주 난민으로 찬반 논의가 치열한 대한민국 상황**

- 대한민국 또한 서울과 제주 등지에서 예멘 난민 수용을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리며 난민 문제가 사회적 논의 과제로 떠오름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7.1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힘.
- 슬기로운 난민 정책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헝가리 및 타국가의 난민 문제에 대응 방식 등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됨.
- 제주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헝가리의 이민특별세와 같은 조세 관련 정책도 대한민국이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됨

헝가리 기타세법

VIII

1. 소비세 / 112
2. 환경제품 수수료(Environmental Product Fee) / 115
3. 관세 / 118
4. 고용관련 공적회비 / 121
5. 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노동시장 기여금 / 122
6.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 / 123
7. 지방세(Municipal taxes) / 126
8. 에너지공급자의 소득세(로빈후드세) / 133
9. 금융 기관 및 신용 기관의 특별세, 신용 기관의 기여 / 136
10. 기타 세법(Other taxes and duties) / 140



1 소비세

□ 소비세 발효

- 2016년 소비세에 관한 법률 (“소비세 법”)은 형식과 내용 모두 개정되었으며,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됨에 따라 유럽 연합의 지침에 따라 작성. 소비세 법 (Act on Excise tax)에 정의된 제품의 범주는 모든 면에서 EU 관련 지침의 조항에 해당함.

○ 납세자(Taxpayers)

- 법에 의해 정의 된 경우, (일정량 이상인 경우) 소비재는 자유순환 유통, 소비재로서 수출 또는 수입, 소비세 면허를 소지한 공동체 판매 회에서 판매되거나 구매된 경우에만 유통될 수 있음.
- 소비세 면허가 없는 판매자는 세금 창고, 소비세 면허가 있는 판매 업체, 수입업자 또는 사용 허가자 만이 소비 물품을 조달할 수 있음.
- 납세의무가 있는 상품이 제조되거나 제 3 국에서 EU의 영역으로 소비세 대상 품목이 수입 될 때 세금 책임이 발생함.
- 그러나 납세의무는 소비를 위한 소비재의 방출 시점 또는 세금면제로 간주될 수없는 과세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발생함.

○ 과세 대상 물품(exise goods)

- 헝가리에서 다음 제품에 대한 소비세가 발생할 수 있음.

- 에너지 제품 (이전의 미네랄 오일)
ex) 석탄, 천연 가스, 전기
- 맥주 및 스파클링 와인
- 기타 아직도 발포 된 발효 음료
- 중간 알코올 제품, 그 외 주류제품
- 담배 제품
ex) 담배, 시가, 롤렛, 미세 절단된 담배, 가벼운 액체를 함유한 니코틴 그 외 새로운 담배 제품 카테고리



○ 납세 의무가 발생함

- 소비재의 국내 제조에 있어서,
- 제 3국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
- 상업적 목적이거나 우편 주문 거래를 통해 다른 회원국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소비세 물품을 헝가리로 운송하는 경우.
 - 소비재의 제조, 보관, 사용, 수취, 발송 및 거래의 경우 헝가리 세관 및 세관 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면허가 필요함.

○ 과세 표준, 세율

- 201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 세율은 다음과 같음.

품 목	세 율
에너지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솔린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항에 따른 석유의 국제 가격이 배럴당 5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HUF 120,000 / 1,000 리터, (3)항의 원유가가 배럴당 5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HUF 125,000 / 1,000 리터, · 석유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항에 따른 석유의 세계 가격이 USD/배럴을 초과하는 경우 : HUF 124,200 / 1,000 리터, (3)항에 따른 석유의 국제 가격이 USD / 배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HUF 129,200 / 1,000 리터, · 가스 오일 : 연료로 또는 난방 목적으로 제공,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항의 원유가가 배럴당 5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HUF 110,350 / 1,000 리터, (3) 항에 따른 석유의 국제 가격이 배럴당 5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HUF 120,350 / 1,000 리터, · 난방유 용도 : 난방 목적으로 제공,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경우 : HUF 4,655 / 1,000kg, 연료로 제공,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경우 : HUF 116,000 / 1,000kg,

품 목	세 율
에너지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의 경우 : 도로 차량의 연료로 제공,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경우 : HUF 95,800 / 1,000kg (다른 엔진에 판매,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경우) HUF 12,725 / 1,000kg, 난방 목적으로 판매,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경우 : HUF 0 / 천 킬로그램, · 천연 가스의 경우 : 도로 차량에서 연료로 제공,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경우 : HUF 28 / nm³, 그렇지 않은 경우 : HUF 0.3038 / kWh, · 전기 요금 : HUF 310.50 / 메가 와트, · 석탄 : HUF 2,516 / 1,000kg,
Beer맥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헥토 리터 당과 실제 알코올 섭취량 당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소규모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맥주 : HUF 810, b) 다른 모든 맥주 : HUF 1,620. · 아직도 와인 : HUF 0 / hectolitre. · 스파클링 와인 : HUF 16,460
기타 발효 음료 (헥토 리터당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틸 와인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8.5% 미만의 알코올 함량을 가진 향료를 첨가하지 않은 스틸 와인과 스파클링 워터의 포장 된 혼합물의 경우 : HUF 0, · 다른 모든 발효 음료의 경우 : HUF 9,870. · 다른 스파클링 발효 음료 : 세율은 헥토 리터 당 16,460 HUF임. · 중급 알코올 제품 : 세율은 HUF 25,520 / 헥토 리터임.
알코올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개별 고객을 위해 제조된 증류 액의 경우(“bérfőzet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개인 고객을 위해 제조 된 연간 50 리터 이하의 수량(세무 창고에 판매하려는 경우) : HUF 167,000 / 헥토 리터, · 한 개인 고객 또는 세수 창고에 판매 할 예정이없는 수량으로 제조 된 연간 50 리터 이상의 수량 : HUF 333,385 / 헥토 리터, b) 상기 a) 항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모든 경우 : HUF 333,385 / 헥토리터



품 목	세 율
담배 제품	a) 담배 : HUF 16,200 / 1,000 조각에 소매 가격의 25%를 더하고 HUF 29,200 / b) 시가와 시가 릴로의 경우 : 소매가의 14 %이지만 HUF 4,180 / 1,000 개 이상인 경우, c) 미세절단 담배 및 기타 흡연 담배의 경우 : HUF 17,300 / d) 더 가벼운 유체의 경우 : HUF 55 / 밀리리터, e) 담배를 함유하거나 담배와 함께 소비되는 새로운 담배 제품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제품 : HUF 10 / piece, · 유체의 경우 : HUF 70 / 밀리리터.

2 환경제품 수수료 (Environmental Product Fee)

□ 환경제품 수수료의 의의

- 환경 제품 수수료의 목표는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촉진하고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촉진하며 국내 및 국제 규정에 기반한 **폐기물 관리 목표**의 이행을 향상시키는 것임.

○ 환경 제품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단체

- 환경 제품 수수료는 국내 유통을 위한 다음 제품 범주의 자체 목적을 위한 첫 번째 사용시 지불해야함.

- 배터리, 포장 재료 및 기타 포장(이하, 합쳐서 포장이라고 함)
- 기타 미네랄 오일 제품, 전기, 전자 장비,
- 타이어, 광고지,
- 다른 플라스틱 제품, 기타 화학 제품,
- 사무실 종이.
- 실제로 이것은 위에 나열된 제품이 헝가리에서 판매되는 경우 또는 다른 유형의 제품을 거래시 헝가리에서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품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함.



- 헝가리에서 제조된 다른 광유 제품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됨.
- 국내 유통을 위해 처음 출시한 당사자의 첫 구매자 또는 자체 용도로 제품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당사자가 지불해야 하므로 통행료 제조사에 의한 통행료 수입.
- 경우에 따라 제품 수수료 부채는 인보이스 또는 계약을 토대로 추정할 수 있음.

○ 환경 제품 사용료 기준

- 환경 제품 사용료의 기본은 제품 사용료가 부과되는 제품의 순 중량 (킬로그램)임.

○ 환경 제품 수수료율

- 제품 사용료 및 관련 제품 사용료가 적용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음.

기 술	제품 수수료율
배터리	HUF 57 / kg
포장 재료	HUF 19-1 900 / kg
기타 미네랄 오일 제품	HUF 114 / kg
전기, 전자 장비	HUF 57 / kg
타이어	HUF 57 / kg
광고 용지	HUF 85 / kg
기타 플라스틱 제품	HUF 1 900 / kg
기타 화학 제품	HUF 11-57 / kg
사무 용지	HUF 19 / kg

- 특정 조건에 따라, 중도량만을 발행하는 납세자 (농업 생산자 및 국내 유통료, 제품을 자체 용도로 사용하는 납세자 또는 자동차 부품(부속품)으로 재공품을 취득하여 제품을 출시하는 납세자)은 일시불 납부를 선택할 것.



○ 보고 의무

- 환경제품 수수료가 부과되는 활동은 이 목적에 의한 전자서식의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당국("NAV")에 보고되어야함. 또한, 제품 수수료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 사항은 변경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에 NAV에 보고되어야함.

○ 기록 의무

- 법에 따라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려면 제품 수수료가 부과되는 회사가 필요함. 그러한 기록의 최소 필수 데이터 내용은 설명, 관세 표제, CSK 또는 KT 코드, 수량, 제품 수수료 책임, 원산지(외국 또는 국내), 제품 수수료 책임이 발생하고 지급된 날을 포함해야 함.
- 가정, 환불 또는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기록에 추가 데이터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제출 및 납부기한

- 환경 제품 사용료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이 목적을 위해 제공된 전자 서식에 대한 검토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분기마다 반품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환경 제품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납세자는 당해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검토되는 4분기 동안의 제품 수수료를 평가, 신고 및 납부할 책임이 있음. 이 범위는 당해 연도의 처음 3/4 분기에 지불된 제품 수수료의 3분의 1의 80퍼센트임.

○ 송장 보증 의무

- 환경 제품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납세자는 제품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간주, 회수 또는 납부하는 경우 청구서에 제품수수료를 공개해야함.

3 관세

□ 관세(Customs Duty) 의의

- 관세는 관세의 방향(수입, 수출 및 운송 의무), 효과(재정 또는 행정 관세), 시간적 범위(영구 및 임시 관세) 및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양한 범주로 분류된 국경을 넘어 상품에 관해 지불되는 세금임.
- 유럽 연합은 EU 회원국의 국경에서 지불해야 할 관세를 없애고 비 EU 국가에서 수입한 제품에 부과되는 표준 EU 수입 관세 제도를 제정한 관세 동맹을 창설함.(EU수입 관세 제도의 목표는 한편으로는 예산 수입을 창출하는 한편, 특정 대외 무역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것)
- 헝가리 세관 규정은 공동 세관 규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

○ 관세 납세의무가 있는 단체

-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는 신고인이거나 간접 세관신고의 경우 고객(간접 세관 신고가 이루어진 이름) 일 수 있음.

○ 관세 가격 결정

- 관세 가격은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의 기준임. 세관 값을 결정하는 것은 관세 값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과정임. 관세 가격은 공동체의 국경에서 결정된 공동체 영토로 수입된 제품의 가치임. 이것을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
- 세관 가치는 주로 다음과 같이 거래 금액 방법을 통해 결정됨. 거래가격 방법의 적용 외에도 제품 자체의 거래 가격(송장 금액),페리티(운송 비용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지리적 위치) 및 조정 요인(추가될 항목 또는 관세 가격에서 공제)은 관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함.



- 거래가치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상품에 대해 실제로 지불된 가격에 다음 항목이 추가되어야 함 : 수입 관세가 수입 관세 지역에 입국 될 때까지 발생한 수입물품의 운송 비용과 보험 비용, 그리고 운송과 관련된 모든 적재 및 처리 비용.
- 거래 가치 방법 하에서, 다음 항목들 (다른 것들 중에서는)은 통관 가치로 계산 될 수 없다 : 통관 관세 영역에 진입 한 후의 상품 운송 비용, 수입 관세 및 기타 물품의 판매로 인한 비용 커뮤니티.

- 세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거래액 방법을 적용할 수없는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음.
 - 동등물의 가치에 기초하여,
 - 유사 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 동등 물 또는 유사 상품의 단가에 기초하여,
 - 계산 된 값에 기초하여,
 - 무료 방법에 기반함.
- 위의 순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관세율

- 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시행중인 관세 평가 규정에 따라 관세 금액이 결정됨. (관세율과 관세율을 알고 있어야)
- 관세율은 조합 명칭을 기준으로 결정됨.
- 결합된 명명법의 분류 체계는 엄격한 자연 질서를 토대로 제품 그룹을 분류하고 이를 관세목표에 할당함. 이러한 관세 표제를 사용하여 주어진 물품의 수입에 대해 지불해야 할 관세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원산지가 다른 국가에 우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 면세 특권

- 관세 면제 절차는 특정 조건에 따라 무료 순환을 위한 상품의 방출이 특혜 또는 0 % 관세율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 관세 면제를 위한 전형적인 표제 중 일부 :
 - 반품의 관세 면제,
 - 해외에서 반품 된 제품 샘플의 관세 면제,
 - 해외에서 등록 된 운송 수단을 수리하기 위해 수입 된 예비 부품의 면세 면제 및 국내 채류 중에 손상된 경우,
 - 대체 물품 또는 부품의 관세 면제,
 - 신규 거주자의 면세 (개인 재산, 동산),
 - 결혼을 위해 지역 사회의 영토로 이사하는 사람들의 의무 면제 (동산, 결혼 선물),
 - 상속의 관세 면제,
 - 소액 가치 위탁화물의 면제.

- 상기 관세 면제 신청은 EC(Council Regulation) 1186/2009에 규정된 특정 엄격한 조건에 따라 관세 면제의 공동체 시스템을 설정한다는 점에 유의할 것.

○ 관세 납부 기한

- 관세 부과금의 납부는 즉시 또는 연기 될 수 있음.
- 즉각적인 납부의 경우 관세는 세관 통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 되어야한다. 그 후 수입 물품은 세관 통제로부터 해제되어 수입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 이연 지급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음.
 - 납세자는 통보 후 30일 이내에 각 세관 항목에 대하여 관세를 별도로 납부하며,
 - 통합 기간이 1주일인 경우 납세자는 통합 주간 후 4주차 금요일까지 관세를 납부하며,
 - 연결 기간이 1개월인 경우 납세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6일까지 관세를 납부함.
- 연체료(가산금) 납부는 NAV KAVIG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적용을 받음.



4 고용관련 공적회비

□ 고용관련 공적회비(Employment-related public dues)

-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헝가리에서는 지침 No. 883/2004/EC 및 규정번호 987/2009는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상태를 규제하는 지침의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직원은 일하는 주에서 보험에 가입함. 이 규칙에 대한 예외는 주된 규칙에 따라 직원이 출생나라에서 최대 2년 동안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단기 임용 보험(STA)임.

○ 단기임용보험(STA)

- 이 보험은 제 3국의 시민이며 비거주자 자격이 있는 미등록 외국인 고용주가 헝가리 영토에서 고용한 고용인을 포함하지 않음. 단, 일하는 것은 분담, 임무 또는 임시기관 근무 약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음
- 헝가리는 보험 의무를 규정하고 기여금을 이중으로 납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몇몇 국가와 사회 보장성 협약을 맺음.(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대한민국, 캐나다, 퀘벡, 몰도바, 일본, 몽골,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호주 및 인도. 현재 시행중인 조약은 부속서 제2항에 열거되어있음.
- 상기 사회 보장 기여금에 관한 조항은 사용자가 이전에 납입한사회 보장 기여금을 대체하는 사회부담세에도 적용됨.

5 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노동시장 기여금

□ 근로자/피보험자가 납입하는 연금 보험, 건강 보험 및 노동 기여금

○ 기여금 납입의무자

- 피보험자 자격이 있는 개인.(피보험자는 특정 월 소득을 초과하는 대가로 개인적으로 고용 관계 또는 계약 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 또한 피보험자 자격을 얻음.

○ 기여금

- 기여금은 고용주로부터 수령하고 개인 소득세 증감의 평가를 위해 고려된 금액임. 기업가에게는 최저 임금의 특정 비율임.

○ 기여율

- 연금 보험료 부담 : 10%
- 건강 보험 및 노동 시장 기여도 : 8.5%

○ 기여금공제

- 개인소득세로 간주되지 않는 가족세액공제의 15%는 개인 건강보험 및 연금 기여금 (가족출연공제)에서 공제될 수도 있음.
- 세액공제는 총 급여에서 개인 건강보험료 공제금액에서 우선 적용되어야함. 미사용 세액 공제가 남을시, 개인 연금 기여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

○ 세금 신고 및 납기

- 지급자(고용주)는 기여금에 대한 수익을 신고하고 해당 월의 다음달 12일 까지 개인소득세 공제액과 동시에 세금 납부해야함.



6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

□ 사회부담세

○ 납세자(Taxpayers)

- 독립적이고 비독립적인 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납세자가 사회보장세금으로 부과하는 사회 보장 관계에 거주하는 자연인에게 지불하는 납부자(고용주)

○ 과세 기준

- 개인 소득세 전진의 평가를 고려한 금액. 그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 기여금은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또는 서비스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정의된 수수료임.
- 고용이 외국법에 의해 규율 된 고용 계약 하에서 수행되는 경우, 과세 표준은 계약 수수료의 월간 금액임.

○ 세율

- 고용주가 납부하는 세금은 19.5%임.

○ 세금 혜택

- 세금 혜택은 일반적으로 불우한 근로자의 고용이나 소외 계층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음. (고용주 세금부담 감소)
- 또한 숙련되지 않은 직무, 불우한 종업원, 육아 중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연구원 고용에 대한 추가세금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음.



○ 세금 신고 및 납기

- 지급자(고용주)는 기여금에 대한 수익을 신고하고 해당 월의 다음달 12일 까지 개인 소득세 공제 동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직업 기부금

○ 납세자

- 헝가리에 소재한 회사 및 개인 기업체, 헝가리에 정규직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헝가리에서 사업 활동하는 경우에 한함)

○ 과세 기준

- 직업 기부금의 세율 기준은 사회 기부금과 동일하다.

○ 세율

- 직업 기부율은 과세 표준의 1.5%임.
- 직업 기부 의무는 실제 훈련 조직이나 기부 금액 납입에 의해 성취될 수 있음.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직업기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선택함. 실습을 조직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 법(2018년 HUF 480,000/인/년)에 명시된 기본 규범에 따라 지불 책임이 축소 될 수 있음.

○ 세금 혜택

- 감소하는 항목의 금액이 미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는 납세자에게 환급됨.
-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근로자가 고용된 경우, 직업 기부의 기반은 고용 초기 2년 동안의 총임금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 근로자 1인당 월 10만 HUF 이하이다.



○ 세금 신고 및 납기

- 이 기여금을 납부해야하는 납세자는 해당 연도의 **처음 11개월** 동안 선급금을 납부해야함. 선급금은 신고한 달의 **다음 달 12일까지** 월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함.
- 선급금과 **연간 순 납부액** 사이의 차이는 계산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2일까지** 납부되어야 하며, 잉여금은 이 날짜로부터 환원될 수 있음.

□ 재활기여금

○ 납세자

- 고용주는 불우한 근로자의 고용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 기여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

○ 과세 기준

- 기업의 **인원수가 25명을 초과**하고 기업이 고용하는 **취약 계층**의 근로자 수가 **총인원의 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재활 기여금을 지불해야함.

○ 세율

- 재활 공헌 금액은 당해 연도의 **첫날 현재** 전일 근무직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최저 기본 임금의 9배**임.(이 금액은 2018년 **인당 HUF 1,242,500**임.)
- 이 금액은 연례 재활기금 출연에 도달하기 위해 소수점 첫째자리로 반올림한 기업의 평균 통계 직원 수에서 결정한 **5% 의무 고용 수준**에서 누락된 인원을 곱한 것임.

○ 세금 신고

- 고용주는 세무 당국에 대한 재활 기여금 납세의무를 평가, 신고 및 지불해야함.



7 지방세(Municipal taxes)



- 지방 자치 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음.
지방세에는 지역사업세, 건축세, 토지세, 개인 공동세 및 관광세 등이 포함됨

□ 마을세금(Town tax)

○ 의의

- 타운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이미 법률로 정의된 공공 부담이 관련된 세금 대상에 부과되지 않는 한 모든 세금을 의미함.

○ 납세자

- 납세자는 자연인일 수 있음.

○ 세무 기준, 세율, 신고 및 지불 기한

- 법률에 의해 규제되지 않고, 각 시정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 지역사업세(Local business tax)

- 지역 사업세는 가장 널리 보급되고 사용되는 지방세임. 주어진 시정촌의 관할 지역에서 수행되는 모든 영구적 또는 임시적인 비즈니스 활동임.

○ 납세자, 세제

- 지방사업세는 등록된 지사가 지방자치단체(영구)의 관할 구역 내에 있거나 지자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30일 동안 임시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가 납세자에 해당함.



- 과세 표준은 순 매출액이며 판매된 제품 원가 및 증재 서비스비용, 하청 업체 성과의 가치, 연구 및 실험 개발의 직접비용 및 재료비임.

○ 세율

- 최대 세율은 과세기준의 2%임. 지방 자치 단체는 이를 벗어나거나 지역 사업 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음.
참고) 임시비즈니스 활동의 경우 세율은 1일 5,000 HUF임.

○ 세금 면제, 세금 공제

- 회사가 평균 통계적으로 담당 직원이 전년도에 증가를 보인 경우, 회사는 증가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100만씩 줄일 수 있음.
그리고 이 면제는 과세 연도의 수익에 적용됨.
- 규제된 부동산 투자 회사, 전 기업 및 특수 목적 차량은 이 세금 유형에서 면제됨.
- 구매 및 판매 협동 조합은 지역사업세가 면제됨.
상기 이외에,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이 250만 유로(HUF)를 초과하지 않는 한, 자치 단체는 세금 공제 또는 세금 공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음.

○ 세금 신고 및 납기

- 지역사업세는 3월 15일과 9월 15일 일년에 두 번씩 신고납부. 전년도에 생성된 수익이 1억 HUF를 초과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의 예상세액에 대한 세금을 상한선으로 해서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함.
- 지역 사업 세금 환급은 관련 연도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함. 일시적 활동에 관한 지방사업세는 늦어도 활동중단일 다음 달 15일까지 지불해야함.



□ 건축세(Building tax)

- 용도에 관계없이 주거용 및 비거주용 건물 및 모든 객실에 적용됨.

○ 납세자

- 건물 소유자.

○ 세율

- 최대 HUF 1853.9/m² 또는 조정 된 시장가치의 최대 3.6 퍼센트

○ 지불 마감

- 연간 건축 세금은 2 월에 부과됨 : 3월 15일과 9월 15일.

□ 토지세(Land tax)

○ 납세자

- 1월 1일 현재 등록된 소유자임.

○ 세율

- 최대 HUF 337/m² 또는 조정된 시장 가치의 3%

○ 지불 마감

- 연간 토지세는 2번에 부과됨 : 3월 15일 및 9월 15일.

□ 개인의 공동세(Communal tax of individuals)

○ 납세자

- 1년 중 개인의 소유가 아닌 아파트 또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권을 보유한 개인.



○ 세율

- 최대 HUF 28652.7 구조당, 토지 또는 임차할 권리.

○ 납부기한

- 세금은 매년 2회에 걸쳐 3월 15일과 9월 15일 납부.

□ 관광 세금(Tourist tax)

○ 납세자

- 지자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적어도 한 관광 도시의 밤을 보내고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

○ 세율

- 관광객 1 인당 최대 HUF 505.6 또는 숙박료의 최대 4%

○ 세금 신고 및 납기

- 관광세는 주최자가 징수함. 관광세 납부 기한은 징수하는 월의 다음 달 15 일임.

□ 특별세(Special taxes)

- 특별 세금에는 특정 산업/부문에 부과되는 세금 유형 (에너지 시설 소득세, 금융 기관 및 신용 기관에 대한 과세, 신용기관 기부금, 에너지세, 공공세, 전기통신세, 광고세, 공중 보건제품세, 채광보수 등).
- 이 세금은 주어진 경제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만 부과.



□ 금융거래세 (Financial transaction duty)

○ 금융거래세의 의의

- 금융 거래 세금의 목표는 공동비용의 사회보장 과정에서 금융 부문 주체의 참여를 향상시키는 것임.
- 금융 거래 의무는 기업 은행 업무 및 우편 거래, 환급 주문, 수주 주문, 은행 카드 구매, 수표의 현금화, 현금 지불, 현금이체, 대출 상환, 교환 활동 및 은행 수수료 청구로 확대됨

○ 납세의무가 있는 단체

- 이 의무는 지불 서비스 제공자, 교환 활동을 허가받은 신용기관 및 헝가리의 지사가 있는 교환 서비스를 조정할 권한이 있는 특별한 중개 자격이 없는 신용 및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에 적용됨.(의무는 항상 서비스 제공 업체가 있음)
- 주요 규칙에 따라 기본 과세대상은 서비스 제공자가 지급한당사자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며 현금 송금의 경우 고객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회원의 계좌가 동일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현금 풀링 운영을 포함하여 특정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음.

○ 관세율

- 관세율은 0.3 %이지만 거래당 HUF는 6,000을 넘지 않음.
- 현금 거래는 0.6 %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지급하는 금액의상한선은 없음.

○ 관세 수당

- 이 법은 2015 년 말과 비교하여 2017 년 말까지 20 %를 초과하여 고객 기반(특히 대출 포트폴리오 포함)을 크게 늘릴 수있는 지불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적용 할 수 있는 수당을 제공함.



- 수당은 고객 기반 증가분의 0.6 퍼센트이지만, 해당 금액은 해당 과세 연도에 지불해야 할 거래 의무의 80 퍼센트 또는 HUF 3 억을 초과 할 수 없음.
 - 지불 서비스 제공 업체는 과세 연도 이후에 고객 기반의 실제 증가율을 결정해야함.
- 신고 및 납부기한
- 금융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실적일자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하고 의무를 지불해야함.
- 공중 보건 제품 수수료(Public health product fee)
- 공중 보건 제품 사용료는 공중 보건 관점에서 유용하지 않은 식료품의 소비를 줄이고 건강 식단을 증진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특히 공중 보건의 개선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납세자(Taxpayers)
- 헝가리에서 다음과 같은 제품을 처음으로 판매하거나 헝가리자체 생산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또는 구성 요소와동일한 것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공중 보건제품 요금을 지불해야함
- 과세 기준(Tax base)
- 과세 표준은 납세자가 판매하거나 구매한 과세 대상 제품의양을 킬로그램 또는 리터로 표시함. 과세 표준을 결정할 목적으로 포장 중량을 고려하지 않아야함.



○ 세율(Tax rate) - 제품마다 다름

생 성 물	세 율
시럽	HUF 200 / 리터
청량 음료	HUF 7 / 리터
에너지 드링크	HUF 250 또는 40 / 리터
설탕 코코아 분말	HUF 70 / kg
기타 미리포장 된 설탕 제품	HUF130 / kg
짤 간식	HUF 250 / kg
식품 향료	HUF 250 / kg
맛된 맥주, 알콜 음료	HUF 20 / 리터
잼	HUF 500 / kg

○ 세금 감면 옵션

- 납세 대상자는 과세 대상자가 주최하는 건강 보존 프로그램의비용, 지출 및 정부기관의 건강 보존 프로그램 재정 지원을 위한 제공으로 줄일 수 있음.
- 과세 대상자가 조직한 건강 보존 프로그램 및 과세 대상자가제시한 세금공제에 대한 감면 총액은 달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10 %를 초과 할 수 없음.

○ 면제(Exemptions)

- 면제는 수량, 판매 및 조달을 기준으로 한 제품 수수료 납부 의무와 관련 될 수 있음.
- 특정 연도에 50kg 이하 또는 5리터 이하의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대상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과세 대상 재화의 취득은 과세대상 제품의 생산을 위해 획득한 재화의 포장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 세금 면제 대상이 됨.



○ 세금 신고 및 납기(Tax filing and payment deadlines)

- 과세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기한 (즉, 해당 월의 다음달 20일) 까지 해당 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빈도(월별, 분기 별, 매년)로 신고해야함.
-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해당 과세 연도의 다음 해 2월 25일 까지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함.

8

에너지공급자의 소득세(로빈후드세)



- Income tax of energy suppliers (Robin Hood tax)

□ 에너지 공급자의 소득세 (Robin Hood tax) 도입

- 에너지 공급자의 소득세는 소매업자의 경쟁적 불이익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이고 에너지 소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됨.

○ 납세자, 세제(Taxpayers, tax base)

- 에너지 공급업체, 공공서비스 제공업체 및 헝가리 해외 법인은 에너지 공급 업체의 소득세가 부과됨.
- 세무 기준액은 조정된 세전 이익임.

○ 세율(Tax rate)

- 세율은 과세표준의 31%임.

○ 세금 공제(Tax credit)

- 에너지 효율 목적을 위한 투자에 대한 개발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세액의 50%까지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세금 신고 및 납기(Tax filing and payment deadlines)

- 에너지 공급자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5월 31일까지임
(납세자는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하는 법인)
- 소득세는 전년도 납부할 세금이 관련 법정 한도를 초과했는지여부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균등 분할로 납부 할 수 있음.
- 납부세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조세금액을 상회해야함. 관련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당해 연도의 마지막 달 20일까지 지불해야함.

□ 통신 세금(Telecommunication tax)

○ 통신 세金的 의미

- 전기통신 세금의 목표는 공동 비용을 사회에 보장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부문 주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임.

○ 납세자, 과세표준

- 전기통신세는 통신 서비스(전화 또는 문자요금 등)에 부과됨.
- 헝가리에서 전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기타 단체가 납세자에 해당함.
- 과세표준은 발신번호와 보낸 문자메시지 수로 계산한 통화 시간임.

○ 세율

- 개별 가입자의 경우 : 각 시작 통화에 대해 분당 HUF 2
- 비개별 가입자의 경우 : 통화는 분당 HUF 3, SMS 메시지당 HUF 2 (MMS 메시지당 HUF 3)
- 통신세는 부과세금에 대한 상한선이 있음
(개인 월별 HUF 700, 비개인 HUF 5 000).



○ 세금 신고 및 납기

-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 목적을 위해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낸 후 두 번째 달 20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함.

□ 관광 개발 기부금(Tourism development contribution)

○ 과세대상, 납세자

- 기부금은 (현장에서 준비하는) 음식·무알콜 음료의 레스토랑 케이터링 거래에 부과됨.
- 기부금은 자체 이름으로 과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지불 할 수 있음.

○ 과세 기준

- 과세 표준은 과세 대상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아닌 가격임.

○ 세율

- 기부금의 비율은 4%임

○ 세금 신고 및 납기

- 관광 개발 기부금을 지불해야하는 사람들은 이 목적을 위해 정한 전자 서식을 관세 당국에 제출함으로써 기부 책임을 선언해야함
- 기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을시, 과세 대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법(VAT Act)에 정의된 성과 연월일의다음 해 2월 25일까지
- 기부 책임이 있는 사람은 해당 기한까지 기부금을 납부해야함.

9 금융 기관 및 신용 기관의 특별세, 신용 기관의 기여

□ 금융 기관, 유통업자 및 투자 기금의 특별세 (Special tax of financial organizations, distributors and investment funds)

○ 금융기관 등 특별세의 의의

- 광범위한 금융 조직 (일반적으로 "은행세"로 알려짐)에 부과되는 특별 세금의 목적은 금융 비용 실체가 사회에 공통 비용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재정을 강화하는 것임.

○ 납세자, 세제

- 특별세의 영향을 받는 금융 기관은 은행, 전문 신용 기관, 금융 기업, 투자 기업, 증권 거래소, 투자 펀드 매니저, 벤처캐피탈 펀드 매니저임.
- 또한, 특별세는 헝가리의 보안 계좌 및 헝가리에 등록된 투자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는 외국인 집합 투자 증권에 대해분배 자에 의해 납부됨.
- 금융 기관의 특별세 과세기준은 수정된 대차 대조표 총액이며금융 기관의 특정 재무 제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한 조정 판매 수익임.
- 배급자 및 투자 기금의 경우, 특별 세제는 HUF의 법령에 명시된 투자 수단 및 투자 단위의 가치로, 법에 따라 계산됨.

○ 세율

- 특별 세율은 법인마다 다름

기 관	세 율
신용 금융 기관	- HUF 500억 이하 : 0.15% - HUF 500억 초과 : 0.21%
다른 금융 기관	- 과세표준의 각각 5.6% 및 6.5%임.
투자기금, 분배자	- 과세표준의 0.05%



○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 세금 납부 방법 (과세 표준 및 세율)은 납세자마다 다름.
- 금융 기관은 과세 연도당 3월 10일까지 특별세를 계산하고 일자별 별도 양식으로 신고하고 분기 마지막 달 10 일까지 4번 나눠 납부해야함.
- 분배자 및 투자 펀드 매니저는 해당 분기 다음달 20 일까지연례 세율의 1/4을 적용하여 분기 별 특별세를 평가, 신고 및납부해야함.

□ 신용 금융 기관의 특별세(Special tax of credit institutions)

○ 납세자, 과세 표준, 세율

- 금융 기관의 특별세 외에 신용 기관은 해당 기관에 독점적으로부과된 30% 세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특별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 금융 기관의 특별세로서 지불되는 금액은 납부할 세금을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함

□ 공공세 (Public utility tax)

○ 공공세란?

- 공공 유틸리티 세금은 공공 유틸리티 라인 소유자에게 부과됨.(공공 유틸리티 라인은 공공 구역 또는 공공 장소로는 자격이 없는 토지의 구역에 위치한 물 공급, 천연 가스, 열 및 전기 공급 및 전기 통신 서비스 라인을 포함함.)

○ 납세자

- 소유자 또는 주정부 및 자치 단체가 소유한 공익 설비 라인의경우 해당 연도의 첫날 현재 공공 유틸리티 운영자.



○ 과세 기준

- 유틸리티 라인의 트랙 길이는 미터로 표시됨.

○ 세율

- 유틸리티 라인의 트랙 길이의 각 미터에 대한 HUF 125.
- 전기 통신 회선 소유자는 누진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세금 면제

- 새 트랙을 따라 건설된 공공 유틸리티 라인의 경우, 시운전 후1년차에 세금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 서비스가 시작된 후 6년이 되는 첫날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건설 후 5 년간신규 라인에 대해 지불해야함.

○ 세금 신고 및 납기

- 매년 3월 20일까지 공익사업세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주어진 해에 세금은 3월 20일과 9월 20일 두 번 납부.

□ 광업 수수료(Mining fee)

○ 광업수수료 의의

- 미네랄자원과 지열에너지는 자연 재해 지역에서 국가 소유임.
광산업자가 채굴한 광물 원료 및 에너지 생성을 목적으로 착취된지열 에너지는 광산업자의 재산이 됨.
- 착취한 광물 원료 및 지열 에너지에 대해 주(州)는 채광료를 수취할 권리가 있음.



- 광업료를 지불해야하는 단체(Entities liable to pay mining fee)
 - 채광료는 광산 기업가, 광물 재료 광산 채굴권 소유자, 채광 감독 기관 이외의 기관이 발행한 광물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양허 소유자 및 지열 에너지를 이용할 권한이 있는 업체가 납부할 수 있음.

- 광업 기반(Mining fee base)
 - 지하 석탄 가스화에 의해 개발된 광물 원료 및 지열 에너지는 광업 비용 책임하에 사업체가 사용하는 광물 원료임

- 광업 요금 비율(Mining fee rate)
 - 세율은 착취, 사용 또는 소비된 무기 원료의 양 또는 개발된 지열 에너지의 가치에 의해 생성된 가치의 지정된 비율임.

- 세금 신고 및 납기(Tax filing and payment deadlines)
 - 광업 비용은 자체 평가에 의해 결정됨.
 - 해당 기간에 광업비 지불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광업 수수료 환급 가능함.
 - 광물유, 천연가스 및 이산화탄소 가스의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20일 까지 월별로 신고해야하며 다른 광물 원료 및 개발된지열에너지의 경우 분기별로 신고해야함.
 - 헝가리 광업 지질 조사국 광업비 징수과와 함께 현재 분기 다음달 20일 까지 광업 지질 사무국의 광업 비용 징수 부서와 중앙 광업 예산의 현금 계정에 동시에 광업비를 지불해야 함.



10 기타 세법 (Other taxes and duties)



□ 의료보험료 (EHO-Healthcare contribution)

○ 의의

- 헝가리는 건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보장세의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는 특정 과세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함. EHO를 납부해야하는 사람과 그 비율은 소득원에 따라 다름.

○ 납세자, 세제(Taxpayers, tax base)

- 보건 의료 기부는 사회 보장 기여금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 거주자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단체가 지불할 수 있음.
- 보건 의료 기금이 지급되는 소득이 지급인 이외의 출처에서 나온 것이거나 지급인이 그러한 소득에 관한 세금을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의료 기여금은 소득이 있는 거주 개인에 의해 지불되어야 함.
- EHO는 개인이 수령 한 특정 자본 이득에 대해 지급됨.
- EHO 기반은 개인이 실현 한 소득으로 개인이 납부해야함.
- 개인이 현물로 소득을 실현하고 EHO를 공제할 수 없는 경우EHO 기준은 소득의 1.19배가 됨.

○ 세율

- 의료 보험료율은 소득원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19.5 %의 EHO가 적용됨

- in case of income within a combined tax base, the incom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tax base that is not subject to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social contribution tax; 종합 세율 기준의 소득이있는 경우 사회 보장 부담금 및 사회부담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과세 표준을 고려한 소득.
- the amount added to the tax base of certain contributions not qualifying as fringe benefits; 부가 급부로 인정되지 않는 특정 기부금의 과세 표준에 추가 된 금액;
- the amount of income from interest rate discounts added to the tax base. 세율에 추가 된 금리 할인 수입.

다음은 14 %의 EHO가 적용됨 :

- the amount of fringe benefits provided by the employer, added to the tax base; 과세 표준에 추가 된 고용주가 제공 한 부가 급여액;
- income derived from entities acquired in the tax year; 과세 연도에 취득한 기업 으로부터 얻은 소득;
- income derived from securities lending, dividend and exchange gain; 증권 대여, 배당 및 교환 이득에서 파생 된 소득;
- income received by a non-resident performing artist for activities performed in Hungary. 헝가리에서 행해진 활동을 위해 비거주 예술가가받은 소득. 참고) 의무적인 14% 보건의료 기부액의 연간 최대 금액은 HUF 450,000임(특정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감소 될 수 있음).

○ 세금 신고 및 납기

- 납부는 납부할 금액에서 건강 관리 기여금을 공제해야함..
- 원칙적으로 해당 월의 다음달 12 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월 세금을 납부해야함.
- 소득이 지급인에게서 파생되지 않는 곳에, 개인은 분기별로EHO를 납부할 것을 요구되고 단지 연소득 보고서에서 신고.



□ 차량세(Vehicle tax)

○ 차량세 의의

- 차량세 납세의무는 자동차 서비스를 개시할 때 발생함.
- 차량세의 목적은 모터링과 관련된 공공 비용에 보다 비례한기여를 보장하고, 지방 자치 단체 수입을 늘리고, 공공 도로망의유지 보수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대하는 것임.

○ 납세자(Taxpayers)

- 자동차 등록자에 포함 된 자동차 운전자 또는 소유자

○ 세율(Tax rate)

- 세율은 승용차의 제조 연도와 전력에 따라 다르며 화물차 및 버스의 중량에 따라 다릅니다.
- 세금은 승용차의 경우 킬로와트 당 HUF 140 ~ 345 사이임.
- 버스 및 캐러밴의 경우 세금은 레지스트리의 연석 중량, 세미트레일러의 경우 연석 중량 및 최대 견인 가능한 질량의 특정부분을 곱하여 계산되며 재화 중량에는 각 100 킬로그램 단위또는 그 일부에 대한 페이로 드는 HUF 850 또는 HUF 1380의비율로 부과됨.

○ 세금 면제(Tax exemption)

- 환경 친화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세 부과되지 않음

○ 세금 신고 및 납기(Tax filing and payment deadlines)

- 연간 자동차세는 2번 걸쳐서 분납함 : 해당 연도의 3월 15일과 9월 15일 까지.



□ 회사 자동차세(Company car tax)

- 회사의 자동차세는 사적인 개인이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사적인 개인이 비용, 지출 또는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지불함.

○ 납세자(Taxpayers)

- 세금은 승용차 소유자가 지불하거나 금융리스 또는 장기리스의 경우 당국이 등록한 임차인에게 부과됨.

○ 세율(Tax rate)

- 월 7,000 HUF에서 44,000 HUF 사이.
(승용차의 동력 및 배기 가스 등급에 따라)
-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세가 회사 자동차세에서 공제될 수 있음

○ 세금 면제(Tax exemption)

-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선 회사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음.

○ 세금 신고 및 납기(Tax filing and payment deadlines)

-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세금은 해당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분기 별로 지불해야함.

□ 등록 세금(Registration tax)

- 등록 세금은 헝가리 최초 등록시 자동차, 캐러밴 및 오토바이에 대해 납부할 수 있으며 차량 운영자 소유한 승용차를 거주자에게 보내는 경우에도 등록 세금이 부과됨.

○ 납세자(Taxpayers)

- 차량 이름이 서비스 중인 (자연 / 법적) 사람.
- 수입의 경우, 지역 내 구매의 경우 VAT를 지불해야하는 사람과 소유자를 다시 모델링하는 사람이 수입자임.



○ 세율(Tax rate)

- 승용차에 대한 세금은 차량의 연식, 배출 등급 및 기술적 특성에 따라 HUF 45,000에서 4,800,000 사이임.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는 HUF 76,000임.

○ 세금 면제(Tax exemption)

- 전자식으로 구동되는 충전식 자동차만 등록세가 면제됨.

□ 보험세(Insurance tax)

- 헝가리 보험회사는 보험세를 지불하여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
- 재산 및 사고 보험 제공 등이 보험 서비스의 대상임.

○ 납세자(Taxpayers)

- 납세자는 보험 회사임.
-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헝가리 보험회사의 지점과 국경 간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회사는 헝가리에서 과세 대상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시 보험세가 적용됨.

○ 과세 기준(Tax base)

- 과세 표준은 보험료임.

○ 세율(Tax rate)

- 세율은 CASCO의 총 보험료의 15%이고 재산 및 사고 보험의총 보험료의 10%임.
- CASCO의 보험료 수입과 재산 및 사고 보험 서비스가 전년도 80억 포린트에 미치지 못하면 우대 세율이 적용됨.



- 보험세는 CASCO 및 재산 및 사고 보험의 총 과세연도 보험료수입 중 HUF 1억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 세율의 25%를 적용
- HUF 1 억을 초과하지만 7 억 HUF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는 일반 세율의 50%를 적용하여 평가됨.

○ 세금 신고 및 납기(Tax filing and payment deadlines)

- 보험자는 주 세무 당국의 전용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을 평가하고 신고 해야하며 보험료 또는 그 일부가 결제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보험자가 지불해야함.

□ 부동산 관련 납세의무(Duty)

- 헝가리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이 상속의 경우 부과되고, 재산 증여 및 저가양도, 절차상의 의무는 행정절차로 부과됨.
- 공공 행정기관과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지불해야 하며 감독 의무는 재심 법원에 의해 수행되는 규제 감독 활동에 대해 지불됨

□ 부동산 양도부담금에 대한 의무 - 부동산양도세 (Duty on onerous transfers of property)

○ 의무의 주제(The subject matter of the duty)

- 법률에 의해 지정된 부동산, 귀중한 권리, 이자 및 유형자산의 취득은 재산 양도세의 적용을 받음.
- 임무는 재산을 취득한 당사자가 지불해야함.
- 다음과 같은 귀중한 권리와 이익 및 유형 자산은 이 의무를 전제로 함.

- acquisition of valuable rights and interests related to real estate and the acquisition of assets resulting from the termination of such rights and interests, 부동산과 관련된 귀중한 권리와 이익의 취득 및 그러한 권리와 이익의 종료로 인한 자산 취득,
- transfer of the right of usufruct for real estate, 부동산 용도의 용익권 양도,
- acquisition of tangible assets at public auctions, 공공 경매에서 유형 자산의 취득,
- acquisition of the title or valuable right of a motor vehicle or a trailer, 자동차 또는 예고편의 권리 또는 권리의 취득,
- acquisition of the title or valuable right of a superstructure not qualifying as property and located in a public area, 재산으로 자격이 없고 공공 장소에있는 상부 구조물의 소유권 또는 가치 있는 권리의 취득,
- acquisition of securities by a contract of inheritance, 상속 계약에 의한 유가증권의 취득,
- acquisition of capital contribution (stocks, business shares, co-operative shares, investor's shares, converted investor's shares) of a business association that owns real estate in Hungary. 헝가리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 협회의 자본출자 (주식, 사업 주식, 협동 조합 주식, 투자자 주식, 전환 된 투자자 주식) 취득

○ 세율(The rate of the duty)

- 부동산 양도세의 일정 비율은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당 10억 달러 HUF 미만인 경우 또는 헝가리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 협회의 취득한 자본 출자액의 경우 취득한 부동산 시장 가치의 4%이며 부동산당 2억 HUF 이하 등 나머지는 2%임
- 주택용 부동산 양도세의 과세 기준은 부동산의 시장가치이며세율은 표준적으로 4%임.
-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 할 때, 엔진 출력과 차량의 연식에 따라 세금은 300 HUF / kW와 850 HUF / kW 사이임.



○ 면제(Exemption) - 다음과 같은 내용에는, 의무가 면제됨

-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of a flat newly constructed by an entrepreneur for sale, 판매를 위해 기업가가 새롭게 건설 한 평면의 소유권 취득,
-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of (an ownership share in) land suitable for the construction of residential property and the acquisition of property rights established on such property if, within 4 years of the presentation of the relevant contract for the assessment of the duty payable, the party acquiring the property builds a residential property and the useful area of the flat(s) in the constructed building reaches at least 10 percent of the maximum site coverage defined in the town development plan and the party acquiring the property declares its intention to build a residential property until the effective date of the duty payment order at the latest, 부동산의 건설에 적합한 토지의 소유권의 취득 및 그러한 재산에 설정된 재산권의 취득은 임무를 평가하기 위한 관련 계약의 제시 후 4 년 이내에 재산을 취득한 당사자는 주거용 건물을 짓고 건설된 건물의 평지의 유용한 지역은 마을 개발 계획에 정의된 최대 부지 범위의 최소 10%에 도달하며 건물을 취득한 당사자는 주택건설 의도를 선언함 늦어도 의무 지불 명령의 발효일까지 주거용 부동산,
-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or a contribution in a company owning domestic real estate under a preferential transfer of assets, 부동산 취득 또는 자산의 우대 이전에 의한 국내 부동산 소유 회사의 출자,
- the transfer between related parties of real estate or a contribution in a company owning domestic real estate if the main activity of the party acquiring the property is the leasing, operation or sale and purchase of real estate, 부동산 취득자의 주된 활동이 부동산의 임대, 운영 또는 판매 및 구매 인 경우 부동산의 관련 당사자 간의 이관 또는 국내 부동산 소유 회사의 출자,
-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under a lease-back arrangement, 임대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
- the transfer of property in a transaction between lineal relatives and spouses, 직계 가족과 배우자 간의 거래에서 재산 양도,
- the acquisition of property as a result of the termination of marital community property. 결혼 공동체 재산의 종료로 인한 재산의 취득.



□ 상속 및 증여세(Inheritance and gift duties)

○ 납세의무자(Persons liable to pay the duty)

- 상속자와 수증자.

○ 세율(The rate of the duty)

-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의무에는 표준 18 %의 요금이 부과되며 주거용 부동산의 무료 취득 및 재산권 관련 비용에는 9 %의 세율이 부과됨.

○ 면제(Exemption)

- 직계 가족 및 배우자 간의 상속 및 증여 및 생존 배우자가 받는 유산은 면제됨.

□ 절차상의 의무(Procedural duty)

○ 의무의 주제

- 일반적으로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절차적 관세 또는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고, 법원 절차에 대해서는 절차적 관세가 부과됨.

○ 납세의무자

- 절차를 시작한 사람.
- 의무는 각 청원에 대해 지불해야함.

○ 세율

- 의무는 절차의 대상물 가치에 따라 평가되거나 항목별 요금으로 평가됨.



붙임 1

참고 문헌 목록

참고문헌

- 2018 헝가리 진출전략, KOTRA
- 헝가리 국가정보 및 현지정보, KOTRA
- 헝가리 투자진출 가이드, KOTRA
- 헝가리 이전가격문서 시행령 개정, 조세재정연구원
- 헝가리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법안 발표, 조세재정연구원
- OECD -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과세당국간 협정 체결, 조세재정연구원
- BEPS 프로젝트 액션13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과세당국간 다자협정에 6개국 추가서명, 조세재정연구원
- Global beps 2017.5~2018.4, 삼일아이닷컴
- 2017.7.10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 BEPS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개정되는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주요 내용의 국내 법제화 방안, 법무법인 율촌
- 국제거래에서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이전가격 국제현안 검토 OECD BEP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Tax Avoidance Legislation in Hungary
(BY : Éa ERDŐ - Anna HALUSTYIK - IldikóSZABÓ)
- EY Worldwide Transfer Pricing Reference Guide 2017-2018
- EY Worldwide Corporate Tax, Personal TAX, VAT, Tax-Guide 2017-2018
- Main Rules Pertaining to Corporate Income Tax 2017,
(National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
- Doing Business in Hungary Guide 2017, Mazars



- Changes in the Hungarian taxation
- Global Transfer Pricing Review
- Transfer pricing - Changes in regulation, BDO
- Tax system and tax policy, Ministry of Finance
- Audit process in Hungary, NAV
- Gateway to Europe/Tax (FGN Law firm)

국회도서관 자료

- 무역보험=Trade insurance magazine(2016년 3/4월호)
(크로아티아·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 시장정보)
- 위클리뉴스=Weekly newsis 제494호(2016년 9월호)
(“헝가리 5위 국민기업” 삼성전자법인 TV 700만대 유럽시장 공급)
- 워터저널 제146호(2016년 9월)
(헝가리, 발전차액지원제도로 태양광 산업 적극지원)
- 국세. 통권 제604호(2017년 7월)
(주요국의 조세동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솔라투데이. 통권 제97호(2016년 9월)
(떠오르는 이머징 마켓 헝가리 태양광시장)
- 민족연구. 통권 제70호 (2017년 9월)
(EU지역 내 난민문제 갈등에 따른 통상과 투자의 영향)
- MM No.21 (2017년 1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호하는 나라, 헝가리)
- 이코노미스트 = Economist. 통권1368호 (2017년 1월)
(헝가리 야스페니사루는 삼성전자사)
- 이코노미 인사이트 = Economy Insight. 제94호 (2018년 2월)
(“하나의 유럽” 흔드는 신국가주의)



- 더리더 = The Leader.Vol.36 (Aug, 2017)
(북방정책의 첫걸음, 헝가리와의 수교)

○ 기관 웹사이트 등

- 헝가리 국세청 : www.ape.hu/
- 코트라 : <http://www.kotra.or.kr/>
- 구글 : <http://www.google.co.kr/>
- 주헝가리한국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hu-ko/index.do>
- OECD 사이트 <http://www.oecd.org/>
- 헝가리경영컨설팅그룹 WTS <http://wtsklient.hu/>

○ 언론사 웹사이트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붙임 2

현지 체류정보

1. 출입국 정보

□ 출입국

○ 출입국

- 1991년 4월 25일부터 헝가리와 한국간 비자면제협정의 발효로 90일 이내 상호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90일 이내 헝가리를 포함한 쉥겐 협약 26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쉥겐 협약은 유럽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가입국에 최초로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기간 중 최장 90일 기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헝가리와 국경을 인접한 국가 중 쉥겐협약에 속하지 않는 국가는 크로아티아, 루마니아가 있다.

○ 입국절차

- 현재까지 한국-헝가리간 직항은 없다. 따라서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등을 통한 항공편으로 입국을 하거나,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을 통한 육로 입국이 가능하다. 쉥겐지역을 통한 입국은 최초 입국하는 국가에서 하게 됨으로 헝가리에서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중동 항공편 등 쉥겐 외 지역 경유를 통해 도착할 경우, 입국심사대를 거쳐야 한다. 2016년 여름한철 아시아나 전세기 직항편이 운행되었고, 현재 헝가리 정부에서는 한국-헝가리간 고정 직항노선 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 출국절차

- 역시 평상시 직항이 없기 때문에 인근국을 통하여 한국으로 출국해야만 한다. 국제선 탑승 수속은 터미널2A 또는 터미널2B에서 가능하며,



수속이 끝나면 동일한 출국라운지에 모이게 된다. 출국라운지 중앙에 대형 전광판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출국 게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헝가리에서 바로 쉥겐지역 외로 나가게 될 경우 출국심사를 헝가리에서 하게 되나, 독일·프랑스 등 타 쉥겐국가를 통할 경우 해당국가에서 출국 심사를 받게 된다.

○ 출입국 수속 및 세관신고

- 출입국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여행객 등에 대해 일일이 휴대품 검사를 하지는 않으나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검사를 하기 때문에 세일즈 출장자들은 Sample 등에 대해서 인보이스 등 관련서류를 갖춰 통관해야 출국 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출입국 유의사항

- 입국 시 18세 이상의 경우 담배 200개비, 시가 50개비, 와인 2리터, 양주 1리터까지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며 그 외 일반상품의 휴대 반입은 430유로까지 (공항 이용 시) 허용된다.
- 면세 제품을 EU국에서 구입하였다면 마지막 출국하는 EU국가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헝가리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오스트리아를 경유하여 출국하는 경우 오스트리아 공항에서 세금 환급이 가능) 이 경우 제품은 사용 전이어야 하고 제품가격이 VAT 포함 175유로를 초과, EU 국가로 입국한 후 90일 이내 출국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 세관에 제품 구입시 발행된 원본 인보이스와 세금 환급 양식 2부를(세관 보관 1부 포함)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비자(사증)

○ 비자 발급

- 1991년 4월 25일부터 헝가리와 한국간 비자면제 협정의 발효로 90일 이내 상호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나 취업 등의 이유로 헝가리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한다면 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헝가리 국경에서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출국 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비자의 종류에는 노동비자, 유학비자, 가족통합을 위한 비자, 방문비자, 치료요양목적의 비자, 연구를 위한 비자가 있으며, 2013년 7월 8일부로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 공항경유 비자는 부다페스트 국제공항을 통과할 때 필요하나 대한민국 시민은 면제이다. 비자발급 시간은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보통 30일 정도를 예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동비자의 경우에는 평균 60일이 소요된다.

○ 비자 발급처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1-103(주한 헝가리대사관)
- 전화 : 02-792-2105 / 팩스 : 02-792-2109
- 업무시간 : 월-금9 : 00-11 : 00

□ 여권 분실

○ 여권 분실시 대처방안

- 여행시 여권은 별도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여권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사고를 당했거나 위급 시 경찰에 도움을 청하고, 대사관에 연락한다.



- 여권 분실 시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 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 한국으로 귀국이 가능하다.

○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

- 분실신고 : 현지 경찰서에 신고 후 여권분실확인서를 발급 받음
- 대사관 방문 및 발급신청 : 분실사유서 작성
-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2장
 - 여권의 경우 5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4~6주 소요
 - 여행증명서의 경우 7달러 납부 후 당일 혹은 1~2일 소요
- 주 헝가리 한국 대사관
 - 주소 : H-1162 Budapest, Andrassy ut 109
 - 전화 : +36-1-462-3080 / 팩스 : +36-1-351-1182
 - 비상 연락처 : +36-30-982-9463, +36-30-824-3106
 - 대표 이메일 : hungary@mofa.go.kr
 - 홈페이지 : <http://hun.mofa.go.kr>
- 여권분실 처리 담당기관
 - 담당기관 : 헝가리 이민국
 - 전화 : +36-1-463-9165, +36-1-463-9181 (24시간 근무)

□ 공항 수화물 분실 시

- 러시아, 핀란드 등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짧은 경유시간으로 인해 종종 짐이 다음날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항 수화물을 찾는 곳 인근에 위치한 Lost & Found 센터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수령지(호텔) 등을 작성하며 익일 혹은 2~3일내 배송이 되고 있다.



□ 공항정보

○ 부다페스트 프란츠 리스트(Ferenc Liszt) 공항

- 부다페스트 중심에서 남동쪽으로 16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 헝가리내 5개 국제공항 중 가장 큰 규모이다.
- 2011년 헝가리가 사랑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가인 프란츠 리스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2A, 2B의 작은 터미널로 구성되었으나 유럽 전역은 물론, 아시아·중동·북미 노선을 운항 중이다.

○ 이동수단

-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차량 기준으로 약 30분이 소요되며 택시비는 약 2만 5천원~3만 5천원 정도 소요된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공항에서 100E번 버스를 탑승한다. 버스비용은 900포린트(약 4,000원)이며 현금으로 버스 안에서 구입가능하다. 시내까지 약 40~50분 소요된다.

2. 생활정보

□ 현지 체류시 참고사항

구 분	내 용
현지 화폐 및 환율 (환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화폐는 헝가리 포린트화 (Forint) * 환율 : 1 포린트 = 약 4.2 원 ○ 신용카드 대부분 상점에서 쓸 수 있음
시차 및 현지 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차 : 한국시간 기준 -8시간 (하절기 -7시간) ○ 기후 : 한국과 유사 (단, 일교차가 심함)



구 분	내 용
신용카드 및 여행자수표 사용 가능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음식점, 상점에서 신용카드 사용가능 (일부 불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현금 필수 보유) ○ 여행자수표는 통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은행에서 현금 교환 후 사용
대중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 메트로(지하철), 버스, 트롤리버스, 트램 - 1회권 : 350 포린트, 1일권 1650 포린트로 매표소에서 구입 가능, 버스는 탑승 시 구매 가능 ○ 택시 : 콜택시 이용 권장(www.citytaxi.hu) - 전화 : +36-1-211-1111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에 공중전화는 거의 없으며, 해외 전화시에는 '00' 버튼을 누르고 국가번호를 입력함 (예. 한국으로 전화 시 00-82-)
비자취득방법 및 출입국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일 이내 상호무비자 체류가능 ○ 한국-헝가리 간 직항이 없으므로 독일 등 인근지를 경유해 입국 및 출국 가능
현지 치안상태 및 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상태 양호, 강력범죄는 없으나 대중교통 내 소매치기 등 유의 ○ 복장에 큰 제제사항 없음 ○ 한국과 유사한 복장 착용 권장
전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0V, 50Hz 규격을 사용 ○ 한국에서 가져온 일반 전자제품 사용가능하나,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은 주파수 문제로 사용불능
현지 업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 : 8 : 0 ~ 16 : 00 - 금요일에는 1~2시면 업무를 종료 ○ 상점 : 평일 및 대부분 8시~10시까지 영업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 월~목 : 8 : 30 ~ 17 : 30 / 금요일 : 8 : 30 ~ 17 : 00
체류 시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치기, 자전거도난, 차량부품도난이 증가추세이므로 주의 ○ 외국인을 상대로 한 극우파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날 영웅광장, 데악역, 국회의사당 주변을 피하는 것이 권장 ○ 2015년부터 난민문제가 헝가리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지에서 느끼는 불안도는 미미



□ 택시이용 방법

택 시	연 락 처	요 금
CITY TAXI	+36-1-211-1111	미터제, 시간 병산제
Fo TAXI	+36-30-222-2222	미터제, 시간 병산제

* 거리 택시를 이용시 가끔 외국인을 상대로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로 부르는 City Taxi 이용

□ 환전

- 호텔비 등은 카드결제가 가능하므로 많은 환전이 필요치 않음
 - * 단, 유로·달러 등의 외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소액의 현지화(포린트) 필요
- 공항, 기차역에서의 환전 시 환율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시내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권장되나 접근성이 까다로움
 - ⇒ 국내 외환은행에서 소액의 현지화만 환전하는 것을 적극 권장(1포린트 ≙ 4.2원)

3. 현지 비상연락처

□ 부다페스트 무역관

- 주소 : H-1123, Budapest, Alkotas u.50 Alkotas Point Building, 3층
 - * 유사한 지명으로 간혹 구글맵에서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주소로 검색
- 전화 : +36 1 201 8474
- 직원 연락처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이 금 하	관 장	+36-30-202-4905
전 상 모	과 장	+36-30-683-2988
이 세 연	과 장	+36-30-202-4906



□ 주 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H-1062, Budapest, Andrassy ut. 109.
- 전화 : +36 1 462 3080
- 긴급시 연락망 : +36 30 982 9463, +36 30 824 3106

□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 주소 : H-1124 Budapest, Csörsz utca. 49-51
- 전화 : +36 1 550 0241

□ 기타 주요 연락처

- 긴급의료지원(영어) : +36 1 2000 100
- 관광객 전용 경찰(영어) : +36 1 438 8080
- 응급구조대 : 104 / 경찰(범죄신고) : 107 / 화재 : 10



붙임 3

헝가리 투자진출 가이드

□ 헝가리 성장 잠재력 및 투자환경

○ 정치 현황

- 의원내각제, 현 오르반 총리 중심의 의원 내각제

- (오르반 총리) 현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피데즈(Fidez)당은 '98년 이후, '02년을 제외하고 4선을 이어오며 헝가리 정치, 경제 정책에 대한 높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함

* '18.4 총선 피데즈당 2/3 이상 의석확보(199석 중 134석), 연임성공

- (친기업적 정책) 수출과 생산에서 헝가리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신규·증액 투자 유치를 위해 중요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친 기업적 정책 도입에 적극 노력 중

* 법인세를 기존 19%에서 9%로 인하, 유럽국가 중 최저 법인세를 제공('17.1 도입)

○ 향후 성장잠재력

- 헝가리 경제전망 : 긍정적

- (GDP) IMF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금융기구, 헝 경제성장률 '18년 3.8%, '19년 3.2% 전망

- (신용등급)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지난 5년간 3~7단계 점진적 상향 조정

* S&P : BB(안정적) → BBB-(긍정적), Moody's : Ba1(부정적) → Baa3(안정적) Fitch : BB+(안정적) → BBB-(안정적)

- (수출여건) 유로존 경기회복 및 사상 최저금리 정책에 힘입어 대외 수출 여건 개선

* 2013-2016년 헝가리 수출 14.4%, 수입 11.2%, 무역수지 51.5% 증가

- (외국인투자) 헝가리는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제조업 수출형 경제,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3년간 24.6% 증가, 증액·신규 투자수요 계속 발생



- (소비활성화) '18년 민간소비 3.3% 증가 전망, 헝가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민간소비 꾸준히 회복 기대 * 건축·교통·에너지·의료·사회 인프라 등에 정책적 지원 계속

□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 對헝가리 외국인 투자 규모

- 서유럽을 중심으로 對헝가리 외국인 투자 지속 증가세

- (유치실적) 헝가리 전체 외국인 투자는 지난 5년간 22.5% 증가, 그 중 유럽 권역 내 투자는 전체의 89.0% 수준이며, 지난 5년간 33.5% 증가세 기록
- (EU-28) 헝가리에 대한 유럽 투자를 이끌고 있는 건 독일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23.1% 차지. 이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비EU권 투자) 전체의 약 11.0%로,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주요 투자국

<국별 대 헝가리 투자액 누계>

(단위 : 백만 유로)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럽	53,907	64,531	63,643	64,677	68,002	72,012
독일	19,371	19,500	19,071	18,720	17,157	18,719
네덜란드	12,056	9,728	8,981	12,104	21,455	23,397
룩셈부르크	4,240	10,725	10,159	9,882	-1,723	-2,078
오스트리아	7,861	9,118	8,631	8,445	12,775	13,640
영국	1,685	2,904	3,109	3,129	3,958	3,495
프랑스	2,997	3,283	2,518	2,358	9,10	2,484
벨기에	2,021	2,011	1,925	1,788	1,232	1,536
스위스	1,846	2,940	2,185	1491	207	25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주	6,631	8,446	2,046	2069	-565	-705
미국	2,164	2,180	1,654	1563	1,111	1,021
캐나다	422	459	391	506	545	529
아시아	2,008	2,193	2,385	3,048	3,484	3,763
일본	869	773	815	1,159	762	842
한국	863	1,047	1,116	1,156	1,263	1,406
홍콩	330	292	322	409	410	412
싱가포르	333	406	357	410	398	417
중국	-25	65	80	184	210	235
인도	-13	-13	-9.2	138	89	28
아프리카	67	254	120	786	1066	1067
합 계	66,009	78,892	78869	81,400	76,671	80,897

* 자료원 : 헝가리 국립중앙은행(MNB)

○ 對헝가리 외국인 투자 최근 트렌드

- (자동차) 최근 헝가리 외국인 투자의 중심은 단연, 자동차 산업
 - 주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전후방 연계성이 강한 자동차 산업에 집중. 특히, 벤츠, 아우디 등 완성차 메이커의 증액투자 결정이 주요 1·2차 벤더들의 연계 투자로 이어짐
- (SSC) 급부상하는 외국인투자 유형, 서비스공유센터
 - 최근 헝가리는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침을 개정,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서비스공유센터(SSC)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British Tobacco, Nuskin 등 다양한 외국기업들의 유럽 서비스공유센터를 헝가리 설치



<헝가리 투자진출을 위한 경쟁력 비교자료>

지표(순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한국	발표기관	발표년도
Ease of Doing Business Rank	48	27	30	39	45	4	World Bank	2017
Starting a Business	79	120	81	83	64	9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90	41	127	91	150	28		
Getting Electricity	110	54	15	57	147	2		
Registering Property	29	38	32	7	45	39		
Getting Credit	29	29	42	55	20	55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108	51	62	89	57	20		
Paying Taxes	93	51	53	49	42	24		
Trading across Borders	1	1	1	1	1	33		
Enforcing Contracts	13	55	91	84	17	1		
Resolving Insolvency	62	22	25	42	51	5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60	39	31	59	68	26	WEF	2017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57	29	47	54	57	52	TI	2016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52	38	28	51	50	29	IMD	2017
Time spent dealing with the requirements of government regulations (% of senior Management time)	11.3	19.7	13.9	8.2	15.8	None	World Bank	2013
Total tax rate (% of commercial profits)	46.5	40.4	50	51.6	38.4	33.1	World Bank	2016
Time required to start a business (days)	7	37	9	12	12	4	World Bank	2016

* 자료원 : World Bank, World Economic Forum(WEF),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17.1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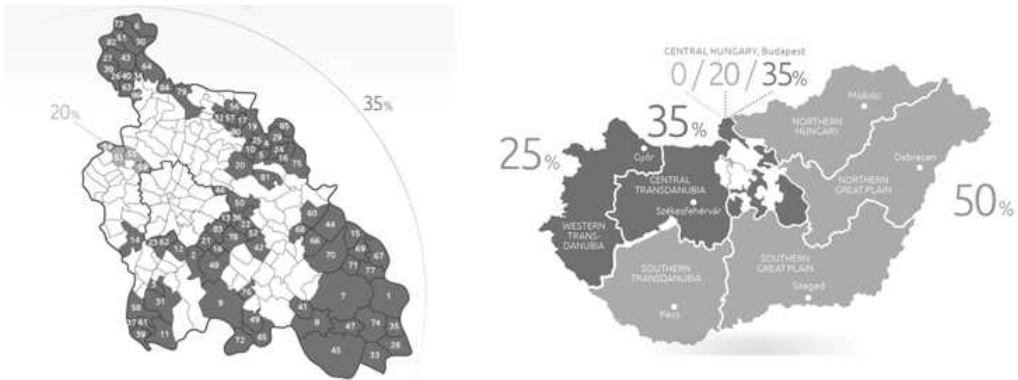
□ 투자 관련 주요 법규 및 제도

○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규

- 법령 : Government Decree 210_2014(VIII.27.) Commission Regulation(EU) No. 651/2014

- 주요내용 : 외국인의 대 헝가리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 (국내기업과 무차별)
- 주관기관 : 헝가리 투자청 (HIPA)
- 인센티브 적용지역 : 지역별 상이
 - (50% 적용지역) 상대적으로 낙후된 헝가리 동남부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최대 지급률인 50%를 적용 중
 - (0~35% 적용지역) 수도 부다페스트 및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으로 향하는 교통요지에 위치한 서북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률 0~35%를 차등 적용 중

<헝가리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최대 지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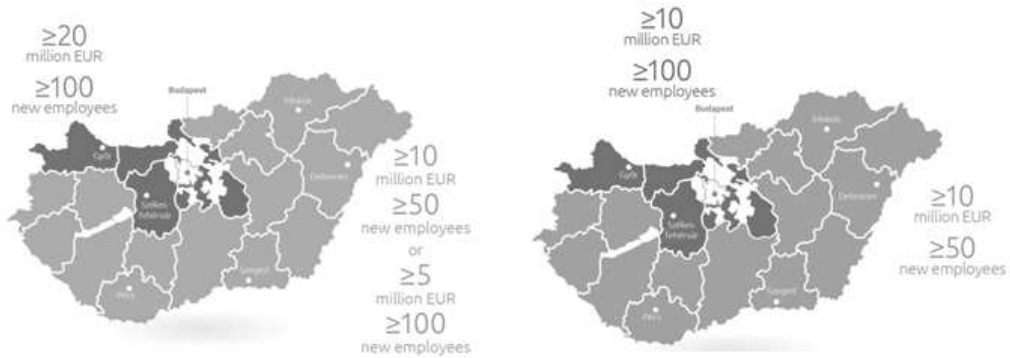


* 자료원 : 헝가리투자청(HIPA)

- 수혜기준 : 투자액, 고용인원, 헝가리 정부 진흥 산업 등을 기준으로 선정
 - '17년 헝가리 정부는 R&D 센터 및 SSC(서비스 공유센터)를 집중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으로 선정,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법안 개정
 -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헝가리투자청(HIPA)에서도 이를 적극 홍보하고 R&D센터 및 SSC 등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



<헝가리 고용인원 및 투자액 대비 인센티브 기준티브 최대 지급률>



* 자료원 : 헝가리투자청(HIPA)

○ 노무관리

- 노무환경 : 최근 헝가리 실업률 3.8%로 급격히 하락, 노동력 문제가 화두
- EU 경기호조에 따른 對 헝가리 외국인 투자 증가 및 '04년 이후 누적된 EU 역내 노동력 이동 심화로 최근 헝가리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기업 활동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 '18년 실업률 3.5%까지 하락 전망
- 서유럽 등으로의 노동력 이동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헝가리 정부는 지난 2년간 법인세 인하(19% → 9%), 고용주세 인하(27% → 22% → 19.5%)를 추진

<최근 헝가리 실업률 변화>

구 분	단 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실질성장률	%	1.5	3.6	3.1	2.0	3.6
실업률	%	10.2	7.7	6.8	5.1	4.1

* 자료원 : 헝가리통계청(KSH)

○ 노동법 핵심정리

- 노동법 : Act_I_of_2012_on_the_Labor_Code

- (채용) 고용계약은 서면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피고용자만이 무효화시킬 수 있음. 기본급여, 직책, 고용기간 등은 필수 명시 필요. 고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무기간 고용으로 간주
- (수습) 고용주는 계약을 통해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쌍방은 수습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로 지정 가능. 한편, 수습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수습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총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함. 수습기간 중에는 사전통지 및 사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음.
- (법정수당) 시간외 근무의 경우, 통상적으로 120~200%의 수당 지급

<헝가리 초과수당 정리>

초과 근로의 내용	지급될 최소 금액
야간근로 (18시~06시)	기본급의 130%
야간 근로시 시간외 근로	기본급의 130%
개별적 휴일근로	기본급의 200%
시간외 근로	기본급의 150%
일요일 근로	기본급의 150%
휴일근로	기본급의 200%
대기의무	기본급의 120~140%

- (휴가) 피고용자에게는 기본 연차휴가와 가산 휴가가 부여되는데, 기본 연차 휴가는 기본 20일에서 시작되며 연령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부여됨

<헝가리 기본연차휴가>

연 령 별	휴가일수
피고용자가 25세 미만인 경우	20 일
피고용자가 25세 이상인 경우	21 일
피고용자가 28세 이상인 경우	22 일
피고용자가 31세 이상인 경우	23 일



연 령 별	휴가일수
피고용자가 33세 이상인 경우	24 일
피고용자가 35세 이상인 경우	25 일
피고용자가 37세 이상인 경우	26 일
피고용자가 39세 이상인 경우	27 일
피고용자가 41세 이상인 경우	28 일
피고용자가 43세 이상인 경우	29 일
피고용자가 45세 이상인 경우	30 일

<헝가리 가산휴가>

미만의 자녀가 있는 피고용자	16세 미만인 자녀가 1명	2일
	16세 미만인 자녀가 2명	4일
	16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7일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른 휴가 가산)	2일/명
이하의 피고용자	-	5일
출산휴가 (출산일로부터 2개월까지 사용가능, 사산도 포함)	1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5일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7일
지하작업 관련 근로하는 근로자 3시간이상 방사선과 관련하여 근로하는 자 50% 이상이 장애라고 판정된 경우	-	5일

- (병가)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어려울 경우, 그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피고용자는 연간 최대 15일에 한하여 병가 사용 가능. 단, 의사의 소견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병가 시에는 임금의 70%가 지급됨.
-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근무의 연속으로 인정되며, 여성은 임신 중이나 산후에 24주의 휴가권리 보유. 출산휴가 만료 후 자녀 나이 3살까지는 고용주가 무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은 최대 5년이며, 이후에는 무기 고용계약 체결 필요
- (해고) 해고의 경우 경영상 이유 혹은 피고용자의 실적 또는 행태 등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필요하며, 종료 전 피고용인에 대한 항변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또한 법적 통보기간은 최소 30일 이전에 해야 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고지기간은 차등 적용됨. 피고용자의 행위에 따라 해고를 할 경우, 수당지급 불요

<해고 사전 통보기간>

근속 년수	통보시기
3년 이하	30일 전
3년 이상	35일 전
5년 이상	45일 전
8년 이상	50일 전
10년 이상	55일 전
15년 이상	60일 전
18년 이상	70일 전
20년 이상	90일 전

- (퇴직금) 피고용자의 이직 등 원에 의한 퇴직일 경우, 퇴직금 지불에 대한 의무는 없음. 단, 고용주의 청산에 의해 종료될 경우 피고용자는 퇴직금 수령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근속년수에 따라 월 보수로 지급됨

<헝가리 근속년수 비례 퇴직금 지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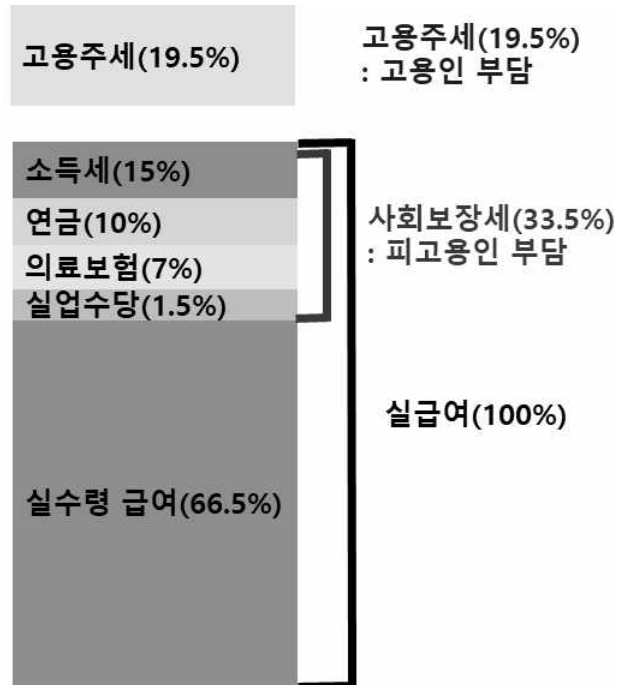
근속 년수	퇴직금
최소 3년 근로	1개월 임금
최소 5년 근로	2개월 임금
최소 10년 근로	3개월 임금
최소 15년 근로	4개월 임금
최소 20년 근로	5개월 임금
최소 25년 근로	6개월 임금



○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장세

- 사회보장세는 소득세, 연금, 의료보험, 실업수당 등으로 구성, 세금 공제 전 급여의 33.5% 수준
 - 세금비율은 각각 소득세 15%, 연금 10%, 의료보험 7%, 실업수당 1.5%이며, 최근 소득세는 16%에서 15%로 인하됐음.
- 고용주 측은 노동자 고용에 따른 사회기여세(Social Contribution Tax), 일명 고용주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노동자 급여의 19.5% 수준임.
 - 고용주세는 '17.1.1일 부로 종전 27%에서 22%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18년 19.5%로 추가 인하됨. '19년에도 약 2% 추가 인하 검토 중
 - 헝가리 정부의 고용주세 인하 조치는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주세 인하의 대한 여력을 급여인상으로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 방안인 것으로 알려짐.

<헝가리 사회보장세 구성>



*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

□ 기타 참고사항

○ 법인설립 절차

- (법인등록 신청) 헝가리 법인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등록청(Court of Registration)에 법인등록이 필요함. 필수 구비서류는 반드시 현지에서 공인된 변호사에 의해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필수 구비서류 등은 30일내 제출해야 등록이 완료됨
 - 필요정보는 회사명, 본사주소, 회사대표자 성명(어머니 성함 포함), 회사대표자 주소, 주요 비즈니스 활동, 자산내역, 투자방식 및 형태, 이사회 명단 및 주소, 감사 성명 및 개인 정보, 영업기간(특정기간에 한해 활동할 경우) 등
 - 헝가리에서는 공인 변호사 없이 법인설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부터 시작해야 함. 비용은 양자간 협의에 따라 상이하며, 회사 규모나 변호사 역할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됨.
- (정관 공증)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에 발기인들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설립의향서(Deed of Foundation)의 경우에도 작성 후 공증이 필요함. 설립의향서는 공증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등록청에 제출해야 함.
- (법원등기) 헝가리 등기법에 따르면, 정관에 서명 후 30일 이내 법인등록청에 등록해야 하며, '08년 이후 법인등록 절차는 전면 자동화됨. 이에 따라 전자로 간소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선임 변호사에 의해 이뤄져야 함. 법인등기에는 1일 정도 소요되며, 이후 헝가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됨. 일반적으로 헝가리 기업들은 회사공보로 검색이 가능하며, 세부 정보를 확인가능함. 전자로 법인등록을 추진 시 인지구입비로 약 5만~60만 포린트와 홍보비 5천 포린트가 필요함.



<법인등록시 서류제출 방법>

구 분	간소화전자서류제출	표준전자서류제출
등록비	HUF 50,000	법인형태에 따라 상이, HUF 50,000 - 100,000
홍보비	없음	HUF 5000
소요시간	1시간	근무일기준 15일

○ 부동산 취득 및 공장건물 건축절차

- (취득방법) 헝가리는 부동산 구입 시 보통 중개인을 사이에 두고 거래가 이뤄지며, 중개인에 대한 성공 수수료는 통상 판매자 측에서 지불함. 한편, 거래 시에 발생하는 각종 요구조건들에 대해서는 중개인이 조율을 하며, 해당조건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을 실시하게 됨.
- (부동산가격) 헝가리는 우리나라의 94%의 면적인 반면 인구는 980만으로, 토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임. 일례로 한국기업이 상당수 위치한 부다페스트 서쪽에 위치한 터타바냐(Tatabanya) 공업단지의 경우에도 토지 가격이 sqm당 35~50 유로 선으로 높지 않음. 다만 최근 헝가리에 대한 외국인 투자 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추세임.
- (입지선정) 입지선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로 등 인프라시설 이지만, 최근 실업률이 3.8%까지 감소하면서 해당지역에 대한 인력 확보의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음. 한편, 헝가리에 진출한 기업들은 입지 선정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로 전력 공급을 꼽고 있음. 계약부터 설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생각보다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
- (건축절차) 신규 건물 건축 시에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사기일이 늘어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 및 계약 시에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또한 환경영향 평가 등 당국의 인허가에도 상당 시일이 소요됨으로 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이미 내려진 매물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향후 사업장 증축을 고려한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건평이나 확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함.

○ 주요 산업별 임금수준

- 헝가리 GDP는 1인당 약 1.5만 달러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며, 급여 수준 역시 한국보다 상당히 저렴한 편임. 이에 따라 ‘유럽 생산의 전진기지’로서 많은 다국적 기업의 제조 법인이 진출해 있음.
- 전통적으로 ICT·엔지니어와 같은 직종은 급여수준도 높고 구인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 외 헝가리가 강점을 보이는 생명과학 분야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헝가리 직종별 급여수준>

직 종	최저(EUR)	최고(EUR)
재무·회계	800	1,200
은행	850	1,600
엔지니어	1,000	1,500
건축, 부동산	1,200	1,900
ICT	1,200	2,400
생명과학(연구)	2,300	3,400
영업	900	1,200
마케팅	800	1,150
도소매, 판매	850	1,150
인력관리	900	1,150
물류	850	1,200

* 자료원 : The 2017 Hays Salary Guide, 유로화 기준, 2년차 이하 세전임금

- 통상적으로 웹사이트, 전문 에이전시 등을 통해 구인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구인 활동이 증가 추세임.



<헝가리 채용 관련 주요 웹사이트>

채용사이트	영어가능여부	유료/무료
profession.hu	영어지원	유료
workania.hu	영어지원	유료
cvonline.hu	영어지원	유료
monster.hu	영어지원	유료
facebook 페이지 expats in hungary	영어지원	무료

*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

<헝가리 20대 인력 전문 에이전시 리스트>

연번	회사명	매출액 (백만 HUF, 15)	연락처	이메일
1	Randstad Hungary	1934	(1)411-2090	info@randstad.hu
2	Hays Hungary	618	(1)501-2400	hungary@hays.hu
3	Trenkwalder	393	(1)354-0933	infohungary@trenkwalder.com
4	Jobas Gardem	384	(1)439-2940	office@jgit.hu
5	Karrier Hungaria	342	(1)354-2060	info@karrierhungaria.hu
6	CPL Jobs	331	(1)501-5460	budapest@cpljobs.hu
7	Adecco	282	(1)323-3500	adecco@adecco.hu
8	Reed Magyarorszag	239	(1)883-3500	info.hungary@reedglobal.com
9	ISEEQ	213	-	hello@iseeq.hu
10	Grafton Recruitment	208	(1)235-2600	info@grafton.hu
11	Enloyd	204	(1)783-0000	enloyd@enloyd.hu
12	Karrier Rent	188	(1)354-2060	info@karrierrent.hu
13	Exact Solutions	184	(1)200-2823	hr@exactolutions.hu
14	Manpower	182	(1)411-1590	manpower@manpower.hu
15	Pannon Job	148	(2)255-4193	info@pannojjob.hu
16	Kelly	133	(1)301-7859	info@kellyservices.hu
17	TESK Tanacsado	130	(1)279-0707	info@tesk.hu
18	Tredis Consulting	96	(1)391-0228	office@tredis.hu
19	Human Centrum	82	(1)877-0900	info@humancentrum.hu
20	WHC	73	(9)255-0050	whc@whc.hu

*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

붙임 4

한·헝가리 조세조약

[1990.04.01]

1989. 03. 29 부다페스트에서 서명

1990. 04. 01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과 그들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 내지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인적범위】 [1990.04.01]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대상조세】 [1990.04.01]

1.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또는 봉급의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간주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 (1) 소득세,
 - (2) 법인세 및



-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나. 헝가리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 (1) 소득세,
(2) 이윤세 및
(3) 특별법인세
(이하 “헝가리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가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 개정사항을 상호 통고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990.04.01]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 가. “대한민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자 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
- 나. “헝가리인민공화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헝가리 인민공화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헝가리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
-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및 단체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 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대한민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 (2) 헝가리인민공화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제 4 조 【거주자】 [1990.04.01]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居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동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 5 조 【고정사업장】 [1990.04.01]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 점
 - 다. 사무소
 - 라. 공 장
 - 마. 작업장 및
 -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는 12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 조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유지
 -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 바. 세항 가내지 마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단, 이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동 인의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그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 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 6 조 【부동산소득】 [1990.04.01]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채약국의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채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인 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7 조 【사업이윤】 [1990.04.01]

1. 일방채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채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채약국의 기업이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채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채약국에서 동 고정 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물품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기 제 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국제운수】 [1990.04.01]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9 조 【특수관계기업】 [1990.04.01]

-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 그리고 상기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0조 【배당】 [1990.04.0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본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채약국이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990.04.01]

1. 일방채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채, 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990.04.01]

1. 일방채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데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이 지급금을 의미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990.04.01]

1. 제6조에서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에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990.04.0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 의사 및 회계상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990.04.01]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그리고
 -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그리고
 -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 조의 상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 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1990.04.0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기타 조직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990.04.01]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타인이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고 있으면,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당해 활동 수행지국 또는 타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상당한

부분이 지원되거나 또는 동 활동이 체약국간의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 본 조에 언급된 소득은 동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면세된다.

제18조 【연금】 [1990.04.01]

제 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990.04.01]

1.
 -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1)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
 - (2) 단지 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4.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그리고 헝가리인민공화국의 경우 헝가리 국립은행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0조 【학생】 [1990.04.0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또한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교직자】 [1990.04.0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또한 대학교, 대학, 고등교육기관 또는 유사한 기관에서 학술연구 또는 강의의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이 교육 또는 학술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한 기관이 비영리 법인에 속하면,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22조 【기타소득】 [1990.04.01]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 [1990.04.01]

1. 대한민국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게 헝가리인민공화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액의 적절한 금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토록 허용한다. 이러한 적절한 금액은 헝가리인민공화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액을 기초로 하되 헝가리인민공화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헝가리인민공화국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헝가리인민공화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헝가리인민공화국은 세항 나 및 다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소득을 면제한다.

나. 헝가리인민공화국의 거주자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항목을 취득하는 경우에, 헝가리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상당하는 액수를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토록 허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발생된 그러한 소득항목에 귀속되는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헝가리인민공화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이 동 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인민공화국은 그러한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면제소득을 고려한다.



제24조 【무차별】 [1990.04.01]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4항 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990.04.01]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제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990.04.01]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에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면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입수된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체약국의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아래에서나 행정의 토양적인 과정에서 압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0.04.0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효】 [1990.04.01]

1.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서 언급한 나중 통고일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동 협약의 제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제29조 【종료】 [1990.04.01]

이 협약은 체약국의 일방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체약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 경과 후 연도말 최소 6월 이전에 종료의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9년 3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헝가리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의정서(1990.04.01) 【】 [1990.04.01]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 다음의 제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약 제2조 제3항 세항 가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5조에 관하여, “사업장소”라 함은 생산장소도 포함한다.
3. 제8조에 관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 운영은 당해 활동이 국제 운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한 국제운수기업의 대리점의 활동과 이러한 기업의 기타 보조적 활동 즉 도시와 공항간의 버스운송을 포함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9년 3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헝가리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헝가리)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 : 044 - 204 - 2814

팩스 : 044 - 216 - 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국세조사관 장주열

국세조사관 마준호

국세조사관 최동진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4-2814)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2018